



인가와 입양인가단체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지침 제2호

본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2012년에 출판한 *Accreditation and Adoption Accredited Bodies : Guide to Good Practice 2*의 한글 번역본입니다.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12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번역물의 품질과 신뢰성을 책임지도록 중앙입양원에 번역권과 출판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영문판 원본이 구속력 있는 진본입니다.

©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12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as *Accreditation and Adoption Accredited Bodies : Guide to Good Practice 2*

by Family Law, A publishing imprint of Jordan Publishing Limited, Bristol, England

All rights reserved.

“This translation has kindly been produced by Korea Adoption Services. It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authentic text, which is available in French and English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its website < www.hcch.net >. This translation has not been reviewed by the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and may contain non-standardised terminology.”

인가와 입양인가단체 :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제2호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18

<표지 그림> Jianzhi (9세, 중국 허난성 뤼양시)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지침

제 2 권

서문

제1장 : 인가 체계의 필요

제2장 : 인가의 일반 원칙

제3장 : 일반정책 고려사항

제4장 : 인가와 허가의 관계

제5장 : 인가단체의 역할

제6장 : 인가단체의 구조와 인력

제7장 : 인가단체의 승인 및 감독 절차

제8장 : 국제입양의 비용

제9장 : 성금과 기부금

제10장 : 출신국 인가단체 관련 절차와 과제

제11장 : 수령국 인가단체 관련 절차와 과제

제12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 간 협력

제13장 : 협약 제22조 (2)항에 따라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과 기관

부속서

부속서 1 : 수령국 기관 인가를 위한 기준 모델

부속서 2 : 출신국 관점

부속서 3 : 수령국 관점

협약 조항 색인

17 서 문

23 제1장 : 인가 체계의 필요

24 1.1 배경

26 1.2 협약 보호 장치로서의 인가

29 제2장 : 인가의 일반 원칙

30 2.1 일반 원칙

31 2.1.1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의 원칙

31 2.2 인가단체의 기준

32 2.3 인가 원칙

33 2.3.1 원칙 1 : 전문성과 윤리성의 원칙

35 2.3.2 원칙 2 : 비영리 목적의 원칙

36 2.3.3 원칙 3 :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방지의 원칙

39 2.3.4 원칙 4 : 인가 및 허가 기준에 맞춘 역량의 입증과 평가의 원칙

39 2.3.4.1 인가의 기준

40 2.3.4.2 허가의 기준

41 2.3.5 원칙 5 : 인가단체의 책임 원칙

42 2.3.6 원칙 6 : 대리인의 윤리성 원칙

43 2.3.7 원칙 7 : 당국의 적절한 권한과 자원의 원칙

45 제3장 : 일반정책 고려사항

46 3.1 인가단체란 무엇인가?

46 3.2 반드시 인가단체를 통해 입양해야 하는가?

47 3.2.1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통지의 의무

47 3.3 인가증서를 발행하는 권한당국의 선택

49 3.4 인가단체 수의 통제

49 3.4.1 수령국에서

49	3.4.2 출신국에서
50	3.5 입양협정 파트너국가 선택
51	3.6 정보보호
51	3.7 인가단체에 대한 보조금
52	3.8 인터넷 광고

55 제4장 : 인가와 허가의 관계

56	4.1 인가란 무엇인가?
56	4.1.1 왜 인가가 필요한가?
57	4.2 허가란 무엇인가?
58	4.2.1 협약 제12조의 “활동(to act)”의 의미
59	4.2.2 허가는 왜 필요한가?
59	4.2.3 출신국과 수령국 간의 허가에 관한 협력은 왜 필요한가?
60	4.2.4 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61	4.3 수령국에서의 인가단체 수 제한
61	4.4 출신국에서 활동하는 허가된 인가단체 수의 제한
62	4.5 인가와 허가의 관계

65 제5장 : 인가단체의 역할

66	5.1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
66	5.1.1 중앙당국의 특별한 의무
67	5.1.2 인가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중앙당국의 기능
69	5.2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70	5.2.1 출신국
71	5.2.2 수령국
73	5.2.3 출신국에서의 외국 인가단체의 역할

75 제6장 : 인가단체의 구조와 인력

76	6.1 인가단체의 비전, 미션, 목적
----	----------------------

77	6.2 인가단체의 구조
77	6.3 인가단체의 인력
78	6.3.1 분야별 전문인력
79	6.3.2 전문기술 인력
80	6.3.3 자원봉사자
80	6.4 출신국에서 외국 인가단체의 대리인
82	6.4.1 대리인의 모범이행
83	6.4.2 출신국 내 외국 인가단체의 기타 협력자
84	6.5 인가단체의 인력에 관한 다른 문제들
84	6.5.1 수령국 내 인가단체의 국가 전문가
84	6.5.2 인력의 비율
84	6.5.3 직원 교육
85	6.5.4 공식 요건(서면고용계약)
85	6.6 재정 문제

87 제7장 : 인가단체의 승인 및 감독 절차

88	7.1 인가단체의 책임성
88	7.2 인가 절차
88	7.2.1 인가 신청
89	7.2.2 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90	7.2.3 인가의 효력 기간
90	7.2.4 양도 불가
90	7.2.5 인가의 거부 또는 거절
91	7.3 출신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령국의 허가를 구하는 인가단체의 신청 서류
92	7.4 인가단체의 모니터링 및 감독
93	7.4.1 인가단체는 누가 감독하는가?
94	7.4.2 인가단체의 운영 감독
98	7.4.3 인가단체의 재정상황
99	7.4.4 인가단체에 부과될 수 있는 제한
99	7.4.5 조건 위반의 제재
101	7.4.6 인가단체의 변동사항 보고
101	7.5 인가의 갱신
102	7.5.1 인가의 갱신 조건

102	7.5.2 허가의 갱신 조건
103	7.5.3 인가 갱신의 기간
103	7.5.4 갱신의 거절
103	7.6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중단될 때 서류 처리를 위한 절차

105 제8장 : 국제입양의 비용

106	8.1 비용에 관한 문제
107	8.1.1 수수료와 비용의 제한
108	8.2 협약의무
109	8.3 인가단체와 관련된 비용의 종류
110	8.3.1 인가단체의 기본 운영비
111	8.3.2 출신국 인가단체의 대리인과 협력자의 보수
112	8.3.3 기타 서비스 비용 (인가단체에 고용되지 않은 협력자 및 전문가 비용)과 출장비
113	8.4 비용의 투명성
114	8.5 비용의 지불
115	8.6 합리적인 비용
117	8.7 기관의 책임과 비용의 통제
118	부속서 8A : 국제입양 비용의 분류 제안
121	부속서 8B : 입양 실제 비용의 표본 산출과 예비입양부모에게 부과되는 비용 설정

125 제9장 : 성금과 기부금

126	9.1 국제입양 목적의 상기
126	9.2 특별위원회의 권고
127	9.3 성금과 기부금
129	9.4 성금이나 기부금은 입양의 “비용”이 아니다.
130	9.5 성금 허용의 위험
130	9.6 인가단체와 부모의 성금으로 지원되는 협력 사업
131	9.6.1 협력 사업과 국제입양 간 연결 고리 단절
132	9.7 성금, 기부금, 협력 사업에 대한 상이한 견해
132	9.7.1 활동의 분리(관점 No.1)
133	9.7.2 출신국의 필요 충족(관점 No.2)

134 9.7.3 인가단체의 성공적 프로젝트(관점 No.3)

134 9.8 성금과 기부금의 미래

137 제10장 : 출신국 인가단체 관련 절차와 과제

138 10.1 취약 아동의 보호

139 10.2 아동보호에 관한 출신국의 구조적인 과제

139 10.3 국내외 입양 전 과제

140 10.3.1 1단계 : 아동의 보호체계 편입

141 10.3.2 2단계 : 가족 보존

142 10.3.2.1 가족보존이 가능하지 않을 때 : 양도와 동의

143 10.3.3 3단계 : 일시보호와 시설보호

144 10.4. 입양적합성의 과제

144 10.4.1 4단계 : 국내입양 또는 영구적 양육

147 제11장 : 수령국 인가단체 관련 절차와 과제

148 11.1 입양 전 단계

148 11.1.1 예비입양부모의 준비와 기대 관리

149 11.1.2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eligibility)과 적합성(suitability)

151 11.1.3 인가단체와 예비입양부모 간의 계약

152 11.2 입양절차 진행 동안

152 11.2.1 전문적인 준비

152 11.2.1.1 특수 욕구 아동

152 11.2.1.2 특정 출신국에서의 준비

153 11.2.2 신청서 준비와 출신국으로의 발송

154 11.2.3 예비입양부모와 결연된 아동의 세부사항 확인과 전달

154 11.2.4 결연 제안의 수용

155 11.2.5 예비입양부모의 출신국 방문 준비

155 11.2.6 예비입양부모가 모든 단계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

156 11.3 입양사후 단계

156 11.3.1 배치 및 입양 사후 서비스

156 11.3.2 입양사후 보고서

159 제12장 :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 간 협력

- 160 12.1 출신국과 수령국 간의 협력
- 160 12.1.1 협력의 의무
- 160 12.1.2 협력과 상호 책임 : 공동 책임 증진
- 163 12.1.3 정보 교환의 증진
- 163 12.1.4 개인적인 방문(출장)의 가치
- 164 12.2 수령국 간 업무 협정
- 164 12.2.1 협력 : 중앙당국
- 166 12.2.2 협력 : 인가단체
- 167 12.2.3 수령국 내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
- 167 12.3 모범 이행을 위한 협력
- 167 12.3.1 출신국에 대한 수령국의 압력 피하기
- 169 12.4 출신국 간 협력 또는 “수평적 협력”
- 170 12.5 다른 형태의 협력
- 170 12.6 심각한 결함 또는 폐단 사례를 다루기 위한 협력
- 171 12.6.1 국제입양에서의 불법 관행을 고심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앙당국 간 협력

175 제13장 : 협약 제22조 (2)항에 따라 승인된 (인가받지 않은) 개인과 기관

- 176 13.1 용어
- 177 13.2 협약 제22조의 의미와 의도
- 177 13.2.1 중앙당국 역할의 위임 : 협약 제22조 (1)항
- 178 13.2.2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역할을 위임하기 위한 조건 : 협약 제22조 (2)항
- 179 13.2.2.1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위임된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제한사항
- 179 13.2.2.2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위한 기준 : 협약 제22조 (2)a)항과 b)항
- 180 13.2.2.3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의 감독 : 협약 제22조 (2)항과 (5)항
- 181 13.2.2.4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 선언이 필요하다 : 협약 제22조 (2)항
- 182 13.2.2.5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에 공지 : 협약 제22조 (3)항
- 183 13.2.3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개입 금지 : 협약 제22조 (4)항

185

부속서

187	부속서 1 : 수령국 기관 인가를 위한 기준 모델	A1-1
197	부속서 2 : 출신국 관점	A2-1
198	1. 출신국 : 콜롬비아	A2-2
198	1.1 <u>전후(then and now)</u> : 콜롬비아가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인가단체에 대한 상황을 요약	A2-2
198	1.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A2-2
199	1.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A2-3
200	1.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A2-4
200	1.5 국내기관 인가	A2-4
201	1.6 외국 인가단체의 허가 (제12조)	A2-4
201	1.7 출신국 내의 특별한 도전	A2-5
202	1.8 수령국의 특정과제	A2-5
203	2. 출신국 : 리투아니아	A2-6
203	2.1 <u>전후(then and now)</u> : 리투아니아가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현재의 인가단체 관련 상황 요약	
204	2.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204	2.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206	2.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	
206	2.5 국내기관의 인가	
206	2.6 외국 인가단체의 허가	
207	2.7 출신국의 특정과제	
207	2.8 수령국의 특정 과제	
207	3. 출신국 : 필리핀	A2-10
207	3.1 <u>전후(then and now)</u> : 필리핀이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현재 인가단체의 상황에 관한 요약	
208	3.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209	3.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210	3.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과 소통	
210	3.5 국내기관의 인가	
211	3.6 외국 인가단체의 허가	

211	3.7 출신국의 특정 과제 : 현지 중재자 또는 연계 기관	
212	3.8 수령국의 특정과제	
213	부속서 2A : 외국 입양기관 인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필리핀)	A2-15
223	부속서 2B : 국제입양 연락서비스에 대한 지침(필리핀)	A2-22
231	부속서 3 : 수령국 관점	A3-1
232	1. 수령국 : 벨기에	A3-2
232	1.1 <u>전후(then and now)</u> : 벨기에가 1993년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현재 인가단체 상황에 관한 요약	A3-2
232	1.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A3-2
232	1.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A3-2
233	1.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과 소통	A3-3
234	1.5 인가단체와 인가 절차	A3-4
235	1.6 출신국의 입양 준비	A3-4
235	1.7 수령국의 특정 과제	A3-5
235	2. 수령국 : 네덜란드	A3-5
235	2.1 <u>전후(then and now)</u> : 네덜란드가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현재의 인가단체 상황에 대한 요약	
236	2.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237	2.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237	2.3.1 중앙당국의 역할	
238	2.3.2 인가단체의 역할	
238	2.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과 소통	
239	2.5 인가단체와 인가 절차	
240	2.6 출신국과의 입양합의	
240	2.7 수령국에서의 특정 과제	
241	2.8 출신국의 특정 과제	
241	3. 수령국 : 스웨덴	A3-10
241	3.1 <u>전후(then and now)</u> : 스웨덴이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지금의 인가단체 상황에 관한 요약	
242	3.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242	3.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243	3.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과 소통
244	3.5 인가단체와 승인 절차
244	3.6 출신국과의 입양 협정(합의)
245	3.7 수령국에서의 특별한 과제
245	3.8 출신국에서의 특별한 과제

247 협약 조항 색인

001.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1993년 헤이그협약” 또는 “협약”)이 새로운 조약으로 제안되었을 때,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제입양을 위한 모든 신청이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건을 정한 목적은 국제입양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적입양(private adoptions)과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s)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¹⁾

002. 협약의 주요 장점은 체약국이 협약의 조항 이행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각 국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자국의 법률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에서 인가 조항이 이행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 특히 체약국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국가의 여러 기관 간에, 해당 기관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려는 출신국이 입양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을 인가하는 수령국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고,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인가단체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003. 국제입양은 심리, 사회복지, 법, 경영, 공공행정, 개인정보 보호 등의 다양한 부문과 여러 물리적·문화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관련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004. 국제입양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입양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 예비입양부모, 상기 명시된 다양한 관계자, 수령국과 출신국의 여러 당국, 입양 대상 아동 간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005. 이러한 중요하고도 때로는 복잡한 기관의 역할은 전문성과 민감성을 요구한다. 또한 국제입양에 윤리적으로 접근하여 모범적 이행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입양의 공통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당국과 권한당국뿐 아니라 인가단체 모두 국제입양의 공통 목적은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복지이다.²⁾

006. 공통 목적을 기반으로 국제입양 체계 내의 각 기관은 국제입양의 법적, 전략적, 윤리적 체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여야 한다.

1) 본 지침의 1장에 나와 있는 사적 및 독립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논의를 참조한다.

2) 협약의 서문을 참조한다.

007. 따라서 국제입양의 모범 이행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 입양대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 수용
- 중앙당국, 권한당국, 인가단체의 역할에 대한 공통의 이해
- 각 기관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
- 관련자 간의 권한과 역할 및 실행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008. 예비입양부모들이 국제입양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당국, 권한당국, 인가단체는 진술과 행동을 통하여 국제입양의 진정한 이유는 가족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예비입양부모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입양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은 관련 모든 당국과 기관의 주요한 역할이자 도전 과제이다.

인가 지침(Accreditation Guide)의 목적과 범위

009. 인가 관행은 매우 다양하다. 협약 의무와 용어에 대한 이해 및 그 이행 실태도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때문에, 인가단체 운영의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협약 의무 및 용어 그리고 그 이행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010. 이에 따라 본 지침은 체약국, 인가단체, 부모와 국제입양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명료한 언어로 된 접근이 용이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지침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협약의 원칙과 의무가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의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
- 협약 의무와 인가단체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리
- 협약의 최소 기준보다 높은 기준의 적용을 장려
- 이러한 의무와 기준의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체약국의 인가단체들이 전문적인 기준 및 이행 면에서 일관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인가 기준 모델 제안.

011. 본 지침은 체약국의 인가 및 감독 당국이 국가 수준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무 이행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관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012. 또한 지침은 인가단체(또는 인가를 받고자 하는 단체)가 협약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모범적 이행에 대한 제언은 이러한 책임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013. 예비입양부모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절한 인가단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내 받을 수 있다.

014. 본 지침의 어떠한 부분도 특정 국가, 중앙당국, 또는 인가단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거나 협약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입양과 관련된 모든 국가와 기관은 자체 이행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 협약의 이행은 지속적 또는 점진적인 개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권한

015. 1993년 5월 29일에 개최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2005년 9월의 특별위원회(이하 “2005년 특별위원회”)에 앞서 이뤄진 설문(Questionnaire)³⁾을 통해 인가 문제가 체약국들의 우려 사안임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특별위원회 첫 날 “인가에 대한 논의서”를 바탕으로 인가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⁴⁾. 이 논의의 목적은 인가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위해 국가의 의무 및 협약의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며, 인가에 관한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의 유용성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여 핵심 인가 기준 마련 및 이를 위한 실무단(Working Group) 설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016. 본 회의 마지막 부분에 권고안이 작성되었으며, 이 권고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두 번째 지침에 권한을 부여하였다.

3)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2005년 9월 특별 위원회에 대한 2005년 3월 국제평화국이 작성한 예비 문서 제1호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자 헤이그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설문 조사서’, 2005년 설문조사지 및 국가별 응답 내용은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www.hcch.net> 내 ‘국제 입양 질’에 나와 있다.

4) J. Degeling,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www.hcch.net> 내 ‘국제 입양 질’에 나와 있는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자 헤이그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2005년 9월 특별 위원회에 대한 1993년 8월 예비 문서 No. 3 ‘인가 문제에 관한 논의서’를 참조한다.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의 일부 개발을 위해 인가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 분야에서 비정부 기관의 경험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제정적인 사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인가 기준 모델 개발 시 이러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⁵⁾

자료(Sources)

017.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헤이그협약의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할 때 시작점은 항상 협약의 본문이었으며, 필요한 경우 주석서(설명서)의 설명 또는 참고 자료로 보충 또는 명백히 하였다. 지침은 협약의 본문을 대체하지 않으나, 입양절차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 이후 개발 및 채택된 이행을 통해 협약의 목적과 의무가 어떻게 모범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를 지침에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018. 본 지침은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인가와 관련된 지난 특별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이 본 지침에 언급될 것이다. 체약국들이 참가한 국제회의에서 동 권고 사항이 합의되었으므로, 그러한 권고 사항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으로 간주한다.

019. 2009년 인가단체에 대한 설문과 실제 경험 및 연구를 통해 기타 모범적 이행이 도출되기도 한다.⁶⁾ 나쁜 관행이 있다면 이를 지양하기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경우, 본 지침은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에 대한 국가별 구체적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감사의 말

020. 본 지침의 초안은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캐나다 퀘벡의 중앙당국과 스웨덴 인가단체인 아도션센트럼(Adoptionscentrum)의 공동 작업이다. 벨기에,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필리핀, 스웨덴 중앙당국이 도움을 주었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이러한 파트너들이 시간과 전문 지식을 아낌없이 지원한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 특히 퀘벡의 중앙당국은 여러 장의 초안 작성을 위해 수개월 간 지원을 제공하였다.

5)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 입양 절’에 나와 있는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2005년 10월 헤이그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특별 위원회 2차 회의의 결론 및 권고 사항’ (이하 2005 특별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권고사항 제4호.

6)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2010년 6월 특별위원회에 대해 2009년 8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작성한 예비 문서 제1호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자 헤이그협약 체계의 인가단체에 관한 설문 조사서’ (이하 ‘2009 설문조사서’).

021. 전문가 실무단에 참여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지원을 제공해주신 분들께 특히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 여러분들을 실무단에 참여하게 해주신 각국 정부와 기관에도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실무단은 다음에 명시된 각 중앙당국의 담당자 들로 구성되었다: 벨기에 프랑스 공동체의 Anne-Marie Crine, 캐나다 퀘벡의 Luce de Bellefeuille와 Isabelle Sourdif, 콜롬비아의 Ilvia Ruth Cardenas, 프랑스의 Edith Nowak, 이탈리아의 Daniella Bachetta, 리투아니아의 Odeta Tarvydienė, 네덜란드의 Jan Vroomans, 필리핀의 Bernadette Abejo, 스페인의 María Jesús Montané Merinero와 Laura Muñoz Pedreño, 미국의 William Bistransky와 Judith Osborn. 참여하신 독립 전문가분들은 다음과 같다: Birgitta Löwstedt(Adoptionscentrum, 스웨덴), Marlène Hofstetter(Fondation Terre des hommes, 스위스), Hervé Boéchat(International Social Service).

022.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서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집필 및 편집 작업은 총무 Jennifer Degeling과 지원, 입양 기술지원프로그램 코디네이터 Laura Martínez-Mora에 의해 이루어졌다. 입양 기술지원프로그램 컨설턴트 Trinidad Crespo Ruiz, 지원 및 법무담당자 Sandrine Pépit, Emmanuelle Harang, Carine Rosalia, 인턴 Alexander Kunzelmann 또한 귀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신 사무처장 William Duncan, 지침의 출판 포맷과 준비과정을 지원해준 Stuart Hawkins(행정 보조), Hélène Guerin(교정/편집자)께도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인가 체계의 필요

1.1 배경

023. 협약 이행과 운영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국제입양의 기준과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현 상황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의 기준을 지키고 협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024. 아동의 유괴, 매매를 방지하는 협약의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는 헤이그협약에 따라 국제입양을 수행하는 입양절차 수행 기관의 필수 인가 및 허가절차의 수립 및 유지 그리고 중앙당국에 의한 상기 기관의 감독이다.

025. 협약에서 인가 관련 조항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⁷⁾과 동 협약의 제21조 a)항의 영향을 받아 다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의 입양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고, 입양이 부모·친척 및 법적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것임을 결정하는 권한당국에 의해서만 승인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입양에 대한 주지된 동의를 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026. 이러한 일반 원칙은 오로지 “권한당국”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고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입양절차 수행 기관을 포함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인가단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항은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1990년⁸⁾ 반룬(Hans van Loon)에 의해 수행된 국제입양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027. 반룬의 보고서는 그 당시 행행하던 국제입양의 남용 사례를 규명하였고, 이러한 남용은 전문 인가기관의 개입 부족 뿐 아니라 사적입양 및 독립입양의 만연, 그리고 공공당국의 감독 부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 비록 일부 국가에서 그 위험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독립 입양을 기피하고 기관을 통한 입양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비용, 대기 시간, 입양프로그램 내의 제한(아동 연령 등) 등 기관을 통한 입양의 단점을 피하고자하는 일부 예비입양부모들은 여전히 독립 입양을 선호하고 있다.⁹⁾ 안타깝게도 규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7) <www.ohchr.org>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 결의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

8) J.H.A. van Loon, 국제 사법, 17차 회의 (1993) 문서: 입양-협력 11-119 페이지 (이하 ‘van Loon 보고서’)에 관한 1990년 4월 헤이그 컨퍼런스 예비 문서 No.1 ‘국제 입양에 관한 보고서’를 참조한다.

9) Ibid, 단락 62.

예비입양부모는 (아동과 아동의 친부모와 마찬가지로) 이용당하기 쉽고, 아동의 입양적합성에 대한 보장이란 없으며, 적절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보장할 수 없다.

028. 반론의 보고서는 1960년대 이후 높아져가는 국제입양에 대한 관심을 기록하였다. 1990년 “선진국의 아동에 대한 수요와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고아들은 국제 입양 또는 입양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주로 불법적인) 목적의 국제적 아동매매 관행을 야기하였다.”¹⁰⁾

029. 반론의 보고서에서는 입양의 맥락에서 아동매매의 일반적인 특성¹¹⁾과 아동 매매(주로 가난한 부모에 의한 매매), 사기 또는 협박 및 강압(주로 아동을 매매하는 여성 업자가 임신한 여성 또는 젊은 엄마를 설득하여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를 포기하게 하고 돈을 주어 납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함), 납치(길이나 놀이터에서 아동을 납치), 불법 서류, 뇌물, 문서 은폐로 “합법적” 입양을 돕는 것(“가짜”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받고, “가짜” 엄마가 입양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등) 등 아동을 획득하는데 사용된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¹²⁾

030. 또한 보고서에는 일부 국가가 아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입양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국제적인 규모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입양의 남용 감소에 상당히 일조할 것이다.¹³⁾ 더 많은 국가(수령국과 출신국)들이 국제입양의 남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입양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국제입양에 대한 감독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⁴⁾ 출신국에서 최근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 정부에 의해 인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혹은 적어도 출신국의 입양기관이 이들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¹⁵⁾

031. 수령국에 관하여 반론은 1990년에 이렇게 기술하였다. “수령국에서 국제입양절차를 정부기관이 감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이러한 경향이 모든 수령국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감독의 정도나 통제 형태 등에 있어 각국의 이행은 매우 다양하다.”¹⁶⁾

10) Ibid., 단락 78.

11) 여기서 “매매”(Trafficking)라 함은 불법적 또는 반윤리적 수단을 통한 입양 아동의 “조달(procurement)”을 의미한다. “착취를 위한 아동 매매”로서의 의미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procurement)”이라는 용어는 Nigel Cantwell(UNICEF 국제 아동보호 컨설턴트)이 처음 제시했다.

12) 반론(Van Loon)의 보고서, ibid., 단락 79 참조

13) Ibid., 단락 83.

14) Ibid., 단락 132.

15) Ibid., 단락 136.

16) Ibid., 단락 137.

1.2 협약 보호 장치로서의 인가

032. 반론의 보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협약의 발전을 권고했다. 사적 입양과 독립입양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에서는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을 위하여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입양절차 수행기관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입양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중앙당국을 거치도록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⁷⁾

033.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중앙당국이 의무 및 권한을 제한하든지 또는 확대하든지에 관계없이 협약이 효과를 발휘하고 남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인가하고 중앙당국이 감독하는 기관만 중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약은 이러한 기관이 “배치”와 “조사” 기관으로 인가를 받기 위한, 특히 비영리적 특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인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¹⁸⁾

034. 이 결론에서 입양절차 수행 기관이 국제입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나, 이들은 적절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향후 더욱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이 명백해졌다. 입양절차 수행 기관의 최소 인가 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035. 그러나 이는 일부 입양절차 수행기관 및 개인의 비윤리적 입양 관행에 대한 우려였고, 그래서 협약 협상에 참석한 대표단들은 입양절차에서 이러한 기관 및 개인을 배제하기를 원하였다. 설명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협약에 의해 중앙당국에 부여된 책임을 개인이나 민간기관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경험에 의하면, 국제입양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용의 대부분은 이 같은 “중재자”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위원회의 일부 참가자는 중앙당국이 자신의 책임을 인가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승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협약 의무의 수행방법을 각 체약국의 결정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초안(11조)에 수용된 해결책은 적어도 협약에 의해 설립된 최소한의 조건을 준수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만 위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러한 타협은 외교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더 제한되었다. 왜냐하면 협약의 8조는 인가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범위 안에서, 각 체약국은 중앙당국에 부여된 의무가 어떻게

17) Ibid., 단락 178.

18) Ibid., 단락 177.

수행되고 허용되는지 또는 위임을 가능하게 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¹⁹⁾

036. 현재 국제입양에 있어 인가단체의 개입은 일반적인 일이며, 입양절차 수행 기관에 대한 인가는 헤이그협약에 의해 도입된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가는 현재 그리고 향후에 국제입양의 질과 안전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체약국에서 국제입양을 수행하고자하는 민간기관은 감독 또는 인가 당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037. 협약 교섭 동안 사적 입양과 독립 입양에 개입하는 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이 협약에 따라 입양을 주선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²⁰⁾ 그러나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했고, 이는 협약 2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문제는 제1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038. 현재 인가에 관한 기본 규칙은 명확하지만 실제 이행에 적용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본 지침에 명시된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권고는 인가 규칙의 적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간 더욱 협력하고 일관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19) G. Parra-Aranguren, 문서, 입양 - 협력 페이지 539-651, 단락 242-243, 17차 회의록,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협약 내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자 협약 설명서 참조.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 (이하 '설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 Ibid, 단락 373.

제2장

인가의 일반 원칙

039. 인가에 대한 모범 이행지침 개발을 통해 인가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서, 특별위원회의 권고안 등의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도출되지만, 특히 협약 조항 그 자체에서 도출된다. 기타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Euradopt(유럽의 입양기관 연합)/북유럽 입양이사회²¹⁾ 인가 기준, 국제사회봉사회(ISS)와 다른 비영리 기관의 보고서, 중앙당국과 인가단체가 참여한 국제회의 등이다.

040. 출신국은 전문 기관의 승인에 있어 수령국에 의존한다. 인가 원칙이 준수되는 경우 인가 단체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출신국과 부모의 인가단체에 대한 주요 불만, 즉 인가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041. 인가 원칙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입양의 일반 원칙을 생각해야 하고, 인가단체의 기준을 제시한 협약의 관련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인가 원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2.1 일반 원칙

042. 헤이그협약의 일반 원칙은, 계약국, 중앙당국, 공공당국,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및 기관 또는 기타 중재자 등, 협약에 따라 주선된 국제입양의 모든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043. 협약 당사국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또한 국제입양의 중요한 요소이다. 협약은 알아야 할 권리 및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할 권리 등 아동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제7조).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는 제21조에 명시하였다. 헤이그협약은 서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고려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044. 헤이그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은 지침 제1호의²²⁾ 2장(1993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이하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에서

21) 국제 입양과 관련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제2차 특별 위원회에서 EurAdopt 및 북유럽 입양 위원회가 제안한 (2005년 9월 17-23일) 2005년 9월 정보 문서 No 1, E&F, 헤이그 국제 입양에 의거한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하기로 한 국가들의 인가단체 기준 제안'을 참조한다. 이 자료는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 (이하 'EurAdopt-NAC' 모델 인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제1호 (오르단 출판사) 2008년. 이 문서는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침은 2005년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국가들에 의해 승인되었고 공식 발표 전에 다시 한번 검토되었다.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해당 원칙들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간략한 요약은 독자들이 하여금 아동의 국제입양에 관한 모든 조치와 결정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상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1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의 원칙

045. 헤이그협약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a. 최선의 이익 원칙(best interests principle):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협약 입양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b.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국제입양의 보충성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c. 안전성 확보의 원칙(safeguards principle): 안전장치의 개발은 아동의 납치, 매매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 d. 협력의 원칙(co-operation principle): 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유지되어 안전장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 권한당국의 원칙(competent authorities principle): 각 국가에 의해 지명되거나 임명된 권한당국만이 국제입양의 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

046. 이러한 원칙은 단독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모든 원칙은 연결되어 있고,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보호 및 협력이라는 협약의 제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들이 함께 적용될 때 헤이그협약의 목적 달성을 도울 수 있다. 인가 원칙은 일반 원칙과 함께 읽혀져야 한다.

2.2 인가단체의 기준

047. 인가에 대한 기본 요건과 기준은 협약 제3장, 특히 제 10, 11, 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입양 절차 수행기관이 협약에 따라 인가될 때, 이는 협약 제3장과 4장에서 명시한 중앙당국이나 권한당국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인가단체가 동 기능의 본질과 범위 뿐 아니라 자국의 협약 의무 수행의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협약 제4장의 절차 부분은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의 7장(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절차)에서 논의하였다.

048. 각국의 권한당국에 의해 수립된 인가기준 뿐 아니라 협약 제10조에서부터 13조에 명시된 의무를 충족하는 기관은 자국 내에서 협약에 따른 중앙 당국의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가 받을 수 있다.²³⁾

049. 협약은 인가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임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²⁴⁾
-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해야 한다.²⁵⁾
- 윤리적 기준에 의해 적격이며 국제입양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교육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이들에 의해 업무가 지시되고 인력 충원이 되어야 한다.²⁶⁾
- 구성, 운영, 재무 상황에 대하여 권한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²⁷⁾
- 감독자, 행정담당자와 직원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²⁸⁾

2.3 인가 원칙

050. 일부 인가 원칙은 인가단체의 모범적 이행을 권고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제안되었다. 이 원칙들은 특정 의무 및 중요한 모범적 이행과 인가단체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이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051. 인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원칙 1 : 입양에 있어 전문성과 윤리성의 원칙
- 원칙 2 : 비영리목적의 원칙

23)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ibid.*, 단락 203 참조

24) 조항: 10.

25) 조항: 11 a).

26) 조항: 11 b).

27) 조항: 11 c).

28) 조항: 32(3);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부속서 노트 22, 단락 204.

- 원칙 3 :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방지의 원칙
- 원칙 4 : 인가 및 허가 기준에 맞춘 역량의 입증과 평가의 원칙
- 원칙 5 : 인가단체의 책임성 원칙
- 원칙 6 : 대리인의 윤리성 원칙
- 원칙 7 : 당국의 적절한 권한과 자원의 원칙

052. 이러한 원칙들은 수령국과 출신국의 인가단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인가단체는 자국의 모든 업무에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 원칙들은 당국이 기관을 선택하고 허가하며 감독할 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인가단체의 대부분은 수령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은 특히 수령국의 인가단체에 적용된다.

2.3.1 원칙 1 : 전문성과 윤리성의 원칙

053. 인가단체는 국제입양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윤리적으로 임할 의무를 지고 있다.²⁹⁾ 전문성이란 무엇보다 국제입양 영역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의미한다. 전문성과 윤리성의 원칙은 협약 제10조와 11조 b)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지되며 제1조(목적), 4조(보충성, 입양적합성, 동의), 제5조(입양부모의 선택)에서 간접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054.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가는 맡겨진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부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055. 11조 b)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가단체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입양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교육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이들에 의해 업무가
지시되고 인력 충원이 되어야 한다.”

29) 예를 들면 EurAdopt는 < www.euradopt.org >의 '윤리 규정' (이하 2012년 2월 14일 최종 논의된 'EurAdopt 윤리 규정' 하에서 합의된 기존 법 규정을 보완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하나의 북유럽 입양 인가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을 대표하는 북유럽 입양이사회는 2009년 '북유럽 국제입양 방침'에 동의했다. 이 방침은 < www.nordicadoption.org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윤리 및 책임에 기반한 국제 입양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입장을 보여 주는 목록이다. (2012년 2월 15일 최종 검토됨. 이하 '북유럽 입양 방침').

056. 제11조 b)항과 관련하여 협약 기준에 따른 인가단체 직원의 범위는 설명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b)항은 윤리적 기준에 의한 자격이 있는 개인에 의해 지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가단체의 최소한의 직원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인가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개인과 감독자 뿐 아니라 기관의 기타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국제입양 영역에서 직접 일하는 감독자나 직원, 기타 구성원들이 반드시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국제입양 영역에서 직접 일하지 않는 감독자나 직원은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자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윤리적 기준은 적용되어야 한다.”³⁰⁾

057. 윤리성과 전문성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인가단체는 아동이 자신의 친가족 내에서 양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일 아동이 출신국에서 적합한 가족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대안으로 국제입양이 고려되어야 함을 밝힌 협약 서문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인가단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적 기반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 a) 국제입양은 무엇보다 아동보호 조치이며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예비입양부모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인가단체는 반드시 아동 최선의 이익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³¹⁾
- b) 인가단체는 아동 이익 보호라는 주된 의무와 예비입양부모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가단체는 각 사례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가적인 해결책이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권한을 통해 자격을 갖춘 예비입양부모 선별하고, 예비입양부모가 입양부모가 되는 것과 국제입양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 c) 인가단체는 국제입양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이 특수 아동인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인가된 입양기관은 입양 대상 아동의 숫자와 프로필의 변화를 인식하고 많은 출신국의 건강한 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인가단체가 특수 아동의 입양에 있어 전문지식을 개발해야 하며, 예비입양부모에게 연장아동, 형제자매, 정신적/신체적/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 d) 또한 인가단체는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비입양부모를 지원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입양 후 통합 기간에는 예비입양부모에게 다른 당국 및 서비스를 소개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입양사후 보고를 위한 입양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30) 설명서, 부속서 노트 19, 단락 259-260 참조

31) 인가단체들은 협약 제1조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협약을 채택한 모든 주체들에게 적용된다.

e) 입양 업무는 아동에 대한 경쟁 그리고 현지 대리인들에 대한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³²⁾

058. 체약국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운영될 입양절차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입양절차 수행기관들은 협약의 조항을 지지하고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관행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³³⁾

059. 10조에서 규정한 ‘전문적인 능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가단체는 사회복지, 심리학, 법학 분야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의 기관에서 전문가를 정규직원으로 고용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 확보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분야 전문가 확보 여부는 특히 아동의 건강에 대한 출신국의 보고서 검토 시 등, 입양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060. 인가단체가 입양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는 입양 대상 아동의 필요 충족에 적합한 경험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061. 전문적 역량과 윤리적 이행의 원칙은 국제입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 기준으로서, 수령국과 출신국의 상호 책임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2.1.2 참조

2.3.2 원칙 2 : 비영리 목적의 원칙

062. 제11조 a)항은 인가단체가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a)항은 다음과 같다.

“인가단체는,

a) 인가국의 권한당국이 정한 조건과 제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063. 설명서는 각 체약국이 인가단체의 운영 방향을 규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2) EurAdopt 윤리 규정, 부속서, 노트 29, 조항 25 참조

33)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No 1, 부속서, 노트 22, 단락 195 참조

“a)항에 따른 ‘비영리 목적’ 요건은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으나, 인가국의 권한당국이 정한 조건과 제한 사항의 범위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체약국은 협약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상이한 범위의 제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³⁴⁾

064. 인가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영리 목적이란 이윤추구가 의사결정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단체는,

- a) 예비입양부모에게 전문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b) 전문가, 직원 등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합당한 합리적인 임금이나 보수를 제공할 수 있다.
- c) 적어도 승인받은 기간 동안 기관(임금, 설비, 사무실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065. 기관이나 예비입양부모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는 수행한 업무와 해당 국가 내의 비슷한 업무에 지급되는 금액에 상응해야 한다.³⁵⁾ 32조 (3)항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수수료”란 법조인, 심리학자와 의료인을 포함한 (인가된 입양기관의 직원이 아닌) 입양 과정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³⁶⁾

2.3.3 원칙 3 :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방지의 원칙

066. 체약국과 중앙당국은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과 그와 유사한 유인책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입양 비용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 일부 조치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의 4.2.1에 언급되어 있다. 인가단체 또한 그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다. 국제입양의 재정적인 면은 본 지침 8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067. 실제로 중개기관 뿐 아니라 변호사, 공증인, 공무원, 심지어 판사, 대학교수가 예비입양 부모에게 지나친 액수의 금전, 사치스런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금지의 중요성은 협약의 교섭단계에서 강하게 강조되었다.³⁷⁾

34) 설명서, 부속서, 노트 19, 단락 256 참조

35) EurAdopt 윤리 규정, 부속서 노트 29, 조항 21 참조

36) 설명서, 부속서 노트 19, 단락 532 참조

37) Ibid., 단락 527.

068. 인가단체가 협약에 의해 승인되었다면, 정부당국, 중앙당국 또는 권한당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을 동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협약의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국제입양에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금지하는 것이다.

069.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의 금지는 제32조 (1)항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협약에 의해 입양에 연관되는 모든 사람, 기관, 당국에 적용되며 예외는 없다. 또한, 출신국과 수령국의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070. 제32조는 다음과 같다.

- (1) 누구든지 국제입양에 관한 활동으로부터 부적절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 (2) 입양에 관여한 자의 직업상의 합리적인 보수 등의 비용과 소요경비에 대해서만 청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 (3) 입양에 관여한 단체의 이사, 관리자 및 직원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071. 제32조 (1)항은 독립적인 조항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d)항에 따라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일반적인 용어로 확인하고 있다. 제21조 (d)항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입양 배치로 인해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다. 동일한 원칙이 1993 헤이그협약 제4조 c)(3)항과 d)(4)항에 명시되어 있다.³⁸⁾

072. 제32조 (3)항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의 이사, 관리자 및 직원에게 동일한 금지를 적용한다.³⁹⁾

073. 보수가 비합리적으로 높은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체약국이 하게 되며, 따라서 유사한 경우에도 결정이 상이할 수 있다.⁴⁰⁾

074.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출신국 인가단체 대표의 임금이 동일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평균임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은 경우

38) Ibid., 단락 526.

39) Ibid., 단락 533.

40) Ibid., 단락 534.

- 수령국이나 출신국의 특정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서비스가 입양 영역 외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싼 경우
- 인가단체의 행정비용이 제공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너무 높은 경우
- 예비입양부모에게 요구된 기부금(donation)과 성금(contribution)이 수령자 개인의 축재에 사용되는 경우

075. 국제입양 수행자로서 인가단체는 해당 국가 또는 중앙당국에 의해 실시되는 예방조치를 지원 및 준수할 책임이 있다.⁴¹⁾ 제32조는 위반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각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인가 철회는 그 중 한 가지 방법이다.⁴²⁾

076. 제32조 (2)항과 (3)항은 인가단체가 수수료, 임금과 요금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와 제32조를 함께 살펴볼 경우, 중앙당국, 공공당국 또는 권한당국이 인가단체의 비용과 수수료를 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제11조 c)항에서 확인된다. 인가단체에 대한 감독의 문제는 본 지침 7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077. 제32조는 인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뿐 아니라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등 입양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들은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거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a) 국제입양 비용과 출신국에서의 관련 비용을 공지해야 한다.
- b) 아동매매,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과 기타 남용에 관한 정보를 출신국과 수령국의 권한당국에 제공해야 한다.⁴³⁾
- c) 대리인 및 동업/협업자의 업무방식에 대해 책임을 진다. 수많은 아동의 입양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인 및 동업/협업자에 대해서는 건별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기관에서 대리인과 동업/협업자에게 제공하는 임금은 업무의 범위와 기간, 거주국에서의 생활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⁴⁴⁾

078. 일부국가에서는 인가단체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방지라는 협약의 의무와 모순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협약은 분명히 부적절한 재정적

41)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No 1, 부속서 노트 22, 10.1장 참조

42) 또한 아동 매매에 관한 UNCRC 선택적 규약은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 제재에 처해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00년 5월 25일 UN 총회 결의안 A/RES/54/263에서 채택된 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에 관한 선택적 규약 참조).

43) EurAdopt 윤리 규정, 부속서 노트 29, 조항. 23 참조

44) Ibid., 조항. 20.

이득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 64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재정적 이득은 허용된다. 설명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 제32조 1항은 단지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적절한 이익’은 허용되며, 이에 따라 2항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변제 뿐 아니라 변호사를 포함하는 입양에 관련된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전문 비용의 지불 역시 허용하고 있다.”⁴⁵⁾

079. 무엇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이냐에 대한 논쟁 때문에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핵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2.3.4 원칙 4 : 인가 및 허가 기준에 맞춘 역량의 입증과 평가의 원칙

080. 협약에 의하면 인가와 허가는 다른 절차이다. 자세한 설명은 4장(인가와 허가의 관계)에서 할 것이다.

2.3.4.1 인가의 기준

081. 제10조와 제11조에서, 협약은 입양기관 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모범적 이행과 효과적인 인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 각국은 제10조, 제11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 마련에 있어서 협약은 인가를 신청하는 입양기관에 추가적 의무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⁴⁶⁾ 협약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와 추가적 의무 및 요건을 합하여 “인가기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082. 비록 “인가 기준”이라는 용어가 협약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제9조에 따라 기관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기관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각 체약국이 인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협약에 암시되어있다.

083. 이러한 기준은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의 맥락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진정한 필요에 부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가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가의 기준은

45) 설명서, 부속서 노트 19, 단락 528 참조

46)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부속서 노트 22, 단락 205 참조

명백하여야 하며, 국제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의 결과이어야 한다.⁴⁷⁾ 이러한 기준은 법령이나 기타 유사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하고, 명확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표되어야 한다.⁴⁸⁾

084. 또한 인가단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주로 인가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인가 기준이 필요하다.

085. 인가 획득 및 유지에 있어 일관성, 공정성, 통일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인가기준 모델을 합의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지침에서는 인가 기준의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지침 부속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4.2 허가의 기준

086. 80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는 인가와 별개의 절차이다. 허가는 출신국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087. 그러므로 제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국가는 인가단체가 다른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이는 특히 출신국에 있어 중요하다. 출신국은 외국의 인가단체로부터 출신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출신국은 가장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그리고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⁴⁹⁾ 이러한 기준은 입양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지원을 제공 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해외 인가단체를 선호할 수도 있다. 허가 기준에 따라 출신국은 자국에⁵⁰⁾ 필요한 외국 인가단체의 숫자와 그들의 프로필을 검토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3.4.2 와 4.4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088. 허가의 부담이 출신국에만 있지는 않다. 수령국은 협력의 의무에 따라 출신국에 있는 외국 인가단체의 실질적 필요를 파악함으로써 출신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령국은 출신국이 해당

47)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의 19차 (2001/2002) 회의록 1권 기타 사안 481-525 페이지에서 국제사법회의사무국이 작성한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특별 위원회의 보고서 및 결론 (2000년 11월 28일 - 12월 1일)' 참조. 또한 이 문서는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 (이하 '2000년 특별 위원회' 권고 사안 No 4c)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 예를 들어 부속서 노트 6에 나와 있는 2009년 설문지 질문 18-19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을 보면 인가단체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잘 갖추어진 구조를 말하고 있다.

49)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의 예를 들자면 2003년 설문지의 No 23 질문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응답 및 리투아니아 관할 당국 웹사이트 < www.vaikoteises.lt/en > 내 '입양' 및 '허가 기관'에 기준이 나와 있다 (2012년 2월 14일 최종 검토). 또한 본 지침의 부속서 2A에 나와 있는 필리핀의 관점을 참조한다.

50) 인가단체 수의 제한 규정과 관련한 2009년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8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시점에 인가단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표명한다면 허가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089. 허가기준에는 출신국에 있는 외국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출신국 내(직접 진출한 경우 또는 중재자를 통한 대리 진출의 경우) 특정 아동집단을 위한 입양서비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신국 내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수와 비교하여 너무 많은 외국 인가단체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출신국에는 특수 입양 대상 아동(건강 문제, 물리적 또는 심리적 장애 등)이 많은데도 적절한 경험을 갖춘 인가단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⁵¹⁾

2.3.5 원칙 5 : 인가단체의 책임 원칙

090. 인가단체의 책임 원칙은 협약의 목적과 역사 뿐 아니라 협약의 약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국제입양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고 사적입양이 일반적이었으며 인가 기관이 거의 없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어나 여러 사건에서 협약에 대한 필요성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왜 비윤리적인 입양이 그토록 성행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입양절차 수행기관에 대한 인가 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제 규범의 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091. 인가단체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가 요구된다.

- a) 인가 또는 감독 당국의 적절한 기관 감독
- b) 출신국 내 외국의 인가단체나 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
- c) 인가단체가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 제출
- d) 다른 국가(주로 출신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 그 국가 당국에 기관의 활동을 보고
- e) 예비입양부모, 아동, 감독자와 기타 관계자를 위한 인가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투명성

092. 인가단체의 책임성은 의무적인 동시에 자발적인 측면이 있다. 의무적인 책임성은 인가하는 국가의 권한당국이 의무적으로 인가단체를 감독함으로써 달성된다(11조 c항). 그러므로 체약국은 이행을 위한 입법이나 절차에 당국은 인가단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무엇을 감독해야 하는 지에 대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협약은 인가단체의 구성, 업무수행과 재정 상태의 감독이 최소한의 기준임을 11조 c)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093. 자발적인 책임성은 활동의 투명성을 통해 달성된다. 투명성은 신뢰와 존중으로 고취된다.

51) 인가단체에 관한 논의 문서, 노트 4, 페이지 10을 참조한다.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단체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의 구성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확한 최근 정보를 자국과 인가단체가 활동하는 국가의 감독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승인당국뿐 아니라 입양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094. 감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지침 7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2.3.6 원칙 6 : 대리인의 윤리성 원칙

095. 이 원칙은 수령국, 출신국, 인가단체 간의 협력과 상호 책임을⁵²⁾ 위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 수령국의 인가단체가 아동의 출신국에서 접촉하는 협력기관은 항상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제입양 중재자로서의 허가를 받은 당국이나 기관이어야 한다.⁵³⁾

096. 인가단체를 통하였는지 중앙당국을 통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수령국은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신국에서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할 때, 그 대리인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적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은 자신이 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구속되며 출신국의 법을 인지하고 국제입양에서 윤리적 접근을 해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

097. 출신국은 국제입양 대리인을 허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⁵⁴⁾ 허가 시스템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출신국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출신국은 대리인의 보수를 규제하는 방법을 포함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⁵⁵⁾ 시스템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전문성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감독과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리인에게 허가를 주는 이 시스템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령국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098. 대리인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출신국에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 수령국의 인가단체는 출신국의 당국과 훈련을 제공하는 협력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다. 일부 수령국은 전문적인 훈련을 위해 대리인을 초청하기도 한다.⁵⁶⁾

099. 대리인에 대한 문제는 본 지침 6.4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52) 협력 및 상호 책임 증진을 위한 제안은 12.1.2 장에 논의되어 있다.

53) EurAdopt 윤리 규정, 노트 29, 조항 18을 참조한다.

54) 대리인에 대한 허가 시스템이 있는 출신국에는 리투아니아가 포함된다.

55) 출신국 내 아동 보호 시스템에 관한 설문지는 국제사회봉사회(ISS)에 의해 개발되었고 출신국의 상황에 관한 수령국의 이해 및 대리인의 전문성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002년 출신국 가정에서 빼앗긴 아동들의 국가 상황 및 출신국 내 입양과 관련한 설문지를 참조한다. < www.iss-ssi.org >에 요청 시 국제사회봉사회(ISS)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56) 예를 들면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포함된다.

2.3.7 원칙 7 : 당국의 적절한 권한과 자원의 원칙

100. 인가를 하거나, 인가단체를 감독 또는 허가하는 권한을 가진 당국은 명확한 법적 권한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인적, 물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⁵⁷⁾

101. 이러한 당국의 법적인 권한에는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의 경우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철회, 또는 철회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⁵⁸⁾

102.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이행전략의 일환으로 체약국이나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입양절차 및 관련 행위자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결국, 협약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을 갖춘 책임감 있는 당국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57) 2000년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47, 권고 사항 No 4a를 참조한다.

58) Ibid, 권고 사항 No 4b.

제3장

일반정책

고려사항

103. 이번 장에서는 한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려 하거나 인가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일부 정책의 문제점과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누가 인가를 할 것인가, 인가된 입양기관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모든 체약국에서 입양할 필요가 있는가.

104. 협약은 인가의 최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이지는 않다. 각 체약국은 인가에 필요한 조건을 협약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규정하고 추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책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수도 있다.

3.1 인가단체란 무엇인가?

105. 인가단체는 보통 협약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의 과정을 거친 사적 입양기관이다. 이들은 인가를 하는 국가에서 부여한 추가적인 인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중앙당국을 대신하여 또는 중앙당국과 함께 협약의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106. 반대로, 일부 국가는 공공기관을 인가단체로 지정하기도 한다.⁵⁹⁾ 이러한 기관은 국가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며 입양실적에 의해 경제적인 자립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공공의 인가단체에는 다른 사설 인가단체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과 의무가 적용된다.

3.2 반드시 인가단체를 통해 입양해야 하는가?

107. 협약은 체약국이 인가단체에게 중앙당국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국가가 반드시 인가단체를 지정하여야 하거나 이들을 이용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⁶⁰⁾ 그러나 일부 수령국과 출신국은 국제입양 중재를 위하여 인가단체를 이용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⁶¹⁾

108. 인가단체의 이용은 절차의 남용, 아동 매매와 독립입양을 근절할 뿐 아니라 입양과정과 그

59) 프랑스는 프랑스 입양청(AFA)을 설치했고, 이탈리아는 국제입양기구(ARAI)를 설립했다.

60) 2006년 8월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이 작성한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2차 특별 위원회의 보고서 및 결론(2005년 9월 17-23일)' 참조. 또한 이 문서는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www.hcch.net> 내 '국제입양'란(이하 '2005년 특별 위원회' 보고서, 단락 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 캐나다법(퀘벡주)(아동보호법, R.S.Q. c. P-34.1, 조항 VII, §2), 이탈리아 (1983년 5월 4일 입양법 No 184, 조항: 31(1)), 노르웨이 (1986년 2월 28일 입양법 16(f)절), 및 스웨덴 (해외입양 중재법 (No. 1997:192), 4절)

이후에 국가가 예비입양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모범 이행으로 간주된다.⁶²⁾

109. 일부 출신국은 인가단체를 이용하지 않고 중앙당국 간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문제점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에 오는 경우 그 부모는 지원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출신국의 (일반적으로 자원이 부족한)중앙당국에 의지하게 된다. 때때로 입양부모 국가의 대사관 소속 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110.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해결책은 출신국이 특정한 수령국과 입양을 위한 “이행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는 입양부모가 출신국을 방문하는 동안 그들을 지원할 인가단체나 출신국의 대리인이 수령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다. 다른 해결책은 여행허가가 있기 전까지 입양부모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모델은 독립입양과 사적입양을 금지하는 네덜란드 모델이다. 예비입양부모가 자국의 인가단체가 활동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부모는 우선 자신들을 도와줄 출신국의 평판 좋은 중재자를 찾아야 한다. 네덜란드의 인가단체는 출신국 중재자와 협력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을 허가받기 전에 해당 중재자에 대한 평판이 긍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

3.2.1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통지의 의무

111. 국가가 인가단체를 이용하는 경우, 협약 제13조는 각 체약국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사무국에 인가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³⁾ 또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승인의 철회나 중지, 허가의 부여 등과 같은 인가단체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⁶⁴⁾ 협약 제22조 (2)항에 따라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협약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경우, 해당 개인의 연락 정보를 제22조 (3)항에 따라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3.3 인가증서를 발행하는 권한당국의 선택

62) ISS의 2007년 7월 보고서 No 38 “수령국의 인가단체” - AABs (I): 이들 기관의 성격 및 이점” 참조. 이 보고서는 웹사이트 < www.iss-ssi.org > (2012년 4월 14일 최종 검토, hereinafter, “ISS 보고서 No 38”, 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 (단독) 입양에 관한 논의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No 1, 노트 22, 단락 191 및 I. Lammerant & M. Hofstetter, 입양 그 비용은? 을 참조한다. 국제 입양에 있어서 수령국의 윤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2007년 Lausanne, Terre des hommes를 참조한다. 본 문서는 웹사이트 < www.terredeshommes.org > 내 ‘자원 및 연결’ 및 ‘간행물’ (2012년 4월 14일 최종 검토, 이하 ‘입양 그 비용은?’ 11 및 29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3) 2009년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3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64)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No 2g를 참조한다. 또한 인가 문제에 관한 논의 보고서의 노트 4, 7페이지 (4.1절) 및 19페이지 (9a절)를 참조한다.

112. 협약은 적법하게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 입양절차에 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인가를 부여 또는 철회할 당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설명서는 반드시 중앙당국이 해당 업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가는 중앙당국의 책무가 아니므로 제7조, 제8조, 제9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⁶⁵⁾

113. 2000년 특별위원회는 인가를 부여하는 권한당국의 지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 권고는 ‘인가 원칙 7: 당국의 적절한 권한과 자원의 원칙’에 언급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인가를 부여하거나 인가단체를 감독 또는 인가를 부여하는 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이행 법령에⁶⁶⁾ 이를 명시해야한다. 많은 국가에서, 하나의 당국(주로 중앙당국)이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하나 이상의 당국이 지정될 수도 있다.⁶⁷⁾

114. 인가를 부여하는 권한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경쟁과 이익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⁶⁸⁾ 중앙당국이 입양배치에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협약에서 분명히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당국은 통상적으로 인가단체가 담당하는 부분에 개입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가단체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 중앙당국은 그 서류를 인수받아 해당 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당국이 인가단체에 위임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인가단체 뿐 아니라 인가 및 감독 당국(공공당국)이 입양배치에 일상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예,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 또는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5. 일반적으로 인가를 부여하는 당국이 인가 거부, 연장, 중지, 철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2.3.7의 인가 원칙 7호를 참조한다.

116. 협약 제36조는 국가가 입양에 관하여 다른 지역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체계가 2개 이상인 경우, 권한당국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⁶⁹⁾ 이러한 국가의 경우, 협약에서 말하는 국가의 중앙당국, 권한당국 또는 인가단체란, 해당 국가 지역단위에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65) 설명서 단락 245를 참조한다.

66) 2005 특별위원회 보고서, 노트 60, 단락 55: 수령국들은 동일한 이행을 공유한다. 즉, “권한당국은 공표된 기준에 따라서 인가단체를 지정하며 중앙 또는 기타 정부 당국이 감독한다”를 참조한다.

67) 예를 들면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18에 대한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68) 인가 문제에 관한 논의 문서 노트 4, 7페이지를 참조한다.

69) 설명서 노트 19, 단락 246을 참조한다.

3.4 인가단체 수의 통제

117. 일반적으로, 인가하는 국가는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기 원하는 기관의 수를 항상 검토해야 한다. 최근 국제입양 수의 감소로 수령국들은 자국의 필요뿐 아니라 출신국의 필요도 고려해볼게 되었다. 국제입양은 아동권리 보호시스템의 구축과 일부 출신국에서의 국내입양 발전 등과 같은 요소가 누적되면서 진화를 거듭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으로 고려되는 건강한 아기들의 수는 줄고 있고, 많은 출신국에서 국제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프로필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런 변수들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신국의 국제입양에 대한 실수요뿐 아니라 법적 요구사항을 알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받은 인가단체의 수와 프로필을 조정하여야 한다.⁷⁰⁾

3.4.1 수령국에서

118. 수령국은 자국에서 인가받은 단체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4.3에 제시되어 있다. 수령국의 법적 기반에 따라 인가단체의 수와 특정 출신국에서의 업무수행을 허가받은 기관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 수령국은 인가단체의 수와 특정 출신국에서 업무수행을 허가받은 기관의 수가 동 출신국에서 가능한 입양의 수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⁷¹⁾

3.4.2 출신국에서

119. 2009년 설문지 응답과 협약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는 몇몇 국가에서 활동하는 인가단체의 수가 입양 대상 아동의 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⁷²⁾ 사실상 인가단체의 수는 출신국에 아동 공급의 압력을 가하는 예비입양부모의 수와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⁷³⁾

120. 원칙 4에 따라 2.3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가단체의 인가 또는 허가 기준 중 하나는 출신국에서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필요한 인가단체의 수는 국제입양을 통해 가족을 찾고자 하는 아동의 수 및 프로필과 연결되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인가단체의 수와 출신국에서 허가된 입양신청의 수를 맞추는 것이다.

70) 2005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60, 단락 65를 참조한다.

71)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7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72) 2009 설문지의 질문 7 및 9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73) 인가 문제에 관한 논의 보고서 노트 4, 9페이지를 참조한다.

121. 체약국(그리고 인가단체)이 입양계약에서 파트너가 되기로 합의한 경우 출신국이 파트너 수령국의 예비입양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입양신청의 수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출신국이 인가단체의 수와 입양신청을 통제하도록 하고 당국에 대한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122. 출신국은 수령국이 인가단체의 수를 통제할 수 없을 경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출신국은 더 이상의 인가단체가 필요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국제입양에 필요한 수만큼의 인가단체만 허가해야 한다.

3.5 입양협정 파트너국가 선택

123. 협약은 출신국이 모든 수령국과 입양협정을 맺을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작은 국가는 몇몇의 수령국가와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모범적 이행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입양 대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길이라 보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출신국은 자국의 중앙당국이 수많은 수령국과 인가단체의 압력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특정국가와 그동안 이루어진 윤리적인 입양의 경험과 좋은 관계의 경험과 같은 요인들을 근거로 특정 국가를 파트너로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⁷⁴⁾ 또한, 이미 출신국의 승인을 받은 다른 수령국의 기관의 수와 그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수령국, 그리고 그들의 인가단체와의 입양 협정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4. 마찬가지로, 수령국은 협약의 당사자인 출신국 모두와 입양 업무를 진행할 의무는 없다.⁷⁵⁾ 수령국은 국제입양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를 가진 출신국과의 입양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⁷⁶⁾ 출신국의 입양절차가 명확하고 투명하며 아동 보호에 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또한 협약과 일치하는 원칙들을 지원하는 경우 수령국들이 선호하는 파트너가 된다.⁷⁷⁾

125. 협약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약국간 협력의 의무는 국가 간 정기적인 입양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아닌 국가가 정보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가족 내 입양과 같은 일회성 사례의 경우 입양 협정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은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74)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8.2.2장을 참조한다.

75) 8.2.2 및 8.2.3장

76) 2005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60, 단락 42 (c) 및 본 지침의 12장을 참조한다.

77) 스웨덴 해외입양 중재법 (1997:192)의 조항 6 (a)를 참조한다.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28에 대한 벨기에 (네덜란드어 공동체), 이탈리아, 뉴질랜드 및 스페인의 응답도 참조한다.

3.6 정보보호

126. 협약에는 입양정보의 보호와 기록 접근에 관한 특정 조항이 있다.⁷⁸⁾ 각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인가단체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기록의 지속적인 보존은 그 국가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⁷⁹⁾

127. 인가단체는 기록에 대한 무단 접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손해나 손실로부터 기록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한당국은 이 같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28. 인가단체를 감독하도록 지정된 권한당국은 입양절차 수행기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이행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입양 관련 권한당국은 현재 또는 과거의 인가단체 정보와 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129. 입양과 관련된 서류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동 기록에 대한 접근에 적용되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무기한으로 보관되어 입양인이 신청이 있을 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록이 중앙집중식으로 보관된다면(인가단체가 봉인된 사례관련 파일을 권한당국(중앙당국이 될 수 있음)에 전달하여 이러한 파일을 보관), 향후 자신의 출생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정보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⁸⁰⁾

3.7 인가단체에 대한 보조금

130. 특정 수령국은 보조금을 통해 인가단체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⁸¹⁾ 이러한 보조금은 인가단체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제공될 수 있다.⁸²⁾

131. 인가단체에 충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건전한 정책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인가단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입양 신청자(인가단체의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

78) 협약 제9조, 제30조.

79) 협약 하에서의 기록 관리 의무에 관한 논의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제1호 22, 2.1.3.2 및 9.1장을 참조한다.

80) 예를 들면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7에 대한 캐나다(브리티시 콜롬비아 및 퀘벡),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및 스페인의 응답을 참조한다.

81) 예를 들면 2009 설문지의 질문 No 47에 대한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또한 동일한 질문에 대해 독일 재정법(Abgabenordnung)의 51~68 mm 규정에 따라서 입양기관들이 세제 혜택을 보는 독일의 응답도 참조한다. 영국의 경우 지방 정부들은 지역 보조금 체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서 Voluntary Adoption Agencies 자발적 입양기관들에게 기금을 분배하고 있다.

82) 예를 들면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5에 대한 프랑스의 응답을 참조한다. "중앙 정부는 AAB의 회원들 교육을 개선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한 교육은 보조금 형식으로 매년 중앙 정부가 재원을 지원한다."

수수료를 내는 예비입양부모)를 찾아야 하는 필요를 제거하여 신청자 유치를 위한 인가단체끼리의 경쟁을 피하고 잠재적 입양부모들이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수많은 요구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보조금의 또 다른 이점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이 국가에 대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국가가 더 면밀히 감독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견지에서 입양은 아동보호 조치이므로 인가단체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32. 중앙당국이 인가단체에 기능을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조금 제공을 정당화한다. 실제로, 인가단체가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 당국이 수행하여야만 하는 기능을 인가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이 더 폭넓게 이용된다면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인가단체의 기본적인 운영비용에 관한 8.3.1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133. 그러나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올바르지 못한 관행은 입양될 아동의 수나 신청한 부모의 수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인가단체 사이의 경쟁을 조장하며 앞에서 언급된 모범적 이행을 저하시킨다.

3.8 인터넷 광고

134. 국제입양에서 인터넷 광고의 이용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다.⁸³⁾ 특정 상황에서 아동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지만, 절대 아동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아동의 사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관점은, 가족에서 분리된 아동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근이 우려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아동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 특히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다.⁸⁵⁾ 또 다른 관점은 사진의 이용은 아동(특히 연장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입양 가족의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이다.⁸⁶⁾

135. 모범 이행의 범위 내에서 인터넷 이용은 가능하다. 사진의 윤리적인 이용을 위한 한 가지 방식은 (장애 때문에) 입양배치가 어려운 입양 대상 아동의 자세한 정보를 제한된 웹사이트에

83) 예를 들면 2009 설문지의 질문 No 42에 대한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84)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42에 대한 노르웨이의 응답을 참조한다.

85) 일례로 브라질, 에라도르, 노르웨이 및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다.

86) 캐나다, 러시아 및 미국에서 운영 중인 사진 목록 시스템의 비교 분석과 아동의 배치에 있어 사진 사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를 위해 영국입양(위탁)협회에서 발행한 *Adoption & Fostering Journal* 2007년 여름호 31, No 2, M. Freundlich, S. Gernstand & M. Holtan의 「입양을 기다리는 웹사이트 공개 아동: 국가별 검토」의 5-6페이지를 참조한다.

올리는 것이다. 출신국 중앙당국에⁸⁷⁾ 의해 통제되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출신국 내 파트너 중 하나가 수령국에 있는 인가단체에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정 조건을 갖춘 가족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가단체가 그러한 자격을 갖춘 가족을 찾지 못했다면, 다른 인가단체를 대상으로 제한된 웹사이트에 아동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간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적합한 가족을 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 이는 가족을 찾는 데 소요되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므로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다. 물론 이는 출신국 내의 파트너가 이러한 절차를 수용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136. 그러나 웹사이트 규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신원이 허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공개되고 특정 아동에 대한 과도한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며, 적격심사를 받지 않은 부모가 인가단체에 접촉하여 아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도 한다. 일부 사례에서 인가단체는 웹사이트에서 아동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모에게 광고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 아동에 관한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인가단체가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또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 제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출신국은 그러한 인가단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령국 또한 해당 기관의 인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37. 인터넷과 관련된 또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은 매우 어린 아동의 입양을 광고하거나 출신국 내 인가단체의 신속한 절차를 광고하는 것,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이 있다.

138. 또한, 출신국은 잘못된 정보 때로는 비윤리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 예비입양부모들의 인터넷 포럼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다.

87) 중국은 이러한 유형의 특수 장애아를 위한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42에 대한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제4장

인가와 허가의

관계

139. 입양기관의 인가 과정은 아동보호를 위한 협약의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인가단체가 출신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양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추가적인 안전장치이다.⁸⁸⁾ 일부 국가는 모범적 이행을 하고 있으나,⁸⁹⁾ 이러한 이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듯하다.

140. 인가의 국내적 특성과 허가의 국제적 특성은 차이가 있다.

4.1 인가란 무엇인가?

141. 인가는 입양절차 수행기관이 협약에 관련된 입양의 특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자국 내 관련 당국의 허가를 구하는 공식적인 과정이다. 협약의 관련 조항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절차 수행기관은 인가를 받기 위해 승인국가가 부과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가가 부여되면, 인가단체는 중앙당국과 함께 혹은 중앙당국을 대신하여 협약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42. 출신국과 수령국 모두 입양절차 수행기관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가단체는 수령국이 인가를 부여한다.

4.1.1 왜 인가가 필요한가?

143. 인가 체계의 필요성은 본 지침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⁹⁰⁾

144. 간단히 설명하면 인가는 입양절차 수행기관에 조직, 책임성, 윤리성, 전문성과 같은 최소한의 국제적인 기준을 부과하는 협약의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인가 행위 자체가 그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인가단체는 이전 장에서 명시한 원칙 뿐 아니라 협약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45. 둘째, 인가당국은 인가단체에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인가 절차는 각국의 당국이 협약 요건에 기반을 둔 보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인가단체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준을 유지하며, 인가 조건을 위반 또는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의

88)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213을 참조한다.

89) 예를 들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5에 대한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필리핀의 응답과 질문 No 23에 대한 칠레와 코스타리카의 응답을 참조한다.

90) 이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4.3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인가를 철회 또는 취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4.2 허가란 무엇인가?

146. 허가는 한 체약국의 인가단체가 다른 체약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허가를 구하는 협약 제12조에 의한 과정이다. 인가단체는 반드시 자국의 권한당국과 업무를 수행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단체가 자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거절하는 권한을 출신국에 부여함으로써 “허가”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된다.

147. 협약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어느 체약국에서 인가된 단체가 다른 체약국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국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그 단체에게 그러한 활동을 할 자격을 인정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148. 협약은 제12조를 통해 허가는 인가와 다르며 별도의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12조에 따르면, 허가는 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면이 적은 과정 또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허가는 입양기관이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양국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2가지 조건만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허가의 조건은 각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⁹¹⁾ 일부 출신국은 인가와 유사한 공식적인 허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허가절차의 적용을 위한 권고는 2.3.4(인가 및 허가 기준을 사용한 역량의 입증과 평가의 원칙)에서 언급하였다.

149. 협약의 언어는 중립적이지만 허가는 보통 출신국에서 입양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구하는 수령국의 인가단체에 적용된다.

150. 이러한 맥락에서 수령국이 부여하는 허가는 다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1) 특정국가에서 특정 기관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허용하는 단독 허가, (2) 특정된 일부 국가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것을 허용하는 제한된 허가, (3) 어느 국가에서나 기관의 활동을 허용하는 개방 허가.⁹²⁾

91) 엘살바도르 및 필리핀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인가’라 일컫는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에 대한 각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필리핀의 허가(‘인가’) 기준은 부속서 2A에 나와 있다. 또한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23에 대한 칠레의 응답도 참조한다.

92)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0(i)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151. 출신국의 상황을 존중하고 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령국은 특정 출신국을 위한 특별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⁹³⁾ 출신국의 영토가 광범위하거나 출신국의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152. 지역적인 제한과 더불어, 기간, 지속요건, 비양도성 등 허가의 제한을 규정하는 체계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153. 12조에 따라 한 체약국 내의 인가단체가 다른 체약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양국의 권한 당국은 허가를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⁹⁴⁾

4.2.1 협약 제12조의 “활동(to act)”의 의미

154. 협약 제12조의 “활동(to act)”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이해가 부족하다. “활동”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인가단체의 역할(기능)의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⁹⁵⁾ 일부 국가에서는 “활동”이란 인가단체가 반드시 출신국 내에 물리적인 존재(사무실과 대리인이 아닌 정식 직원)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55.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동”이라는 의미는 인가단체가 출신국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대리인이나 사무실) 관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56. 설명서에 따르면, 협약이 의도하는 해석은 후자이다.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일반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허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활동을 위해 양 국가로부터 획득되어야 한다.”⁹⁶⁾

157. 이러한 해석에 따라, 협약 제12조는 수령국의 인가단체가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역시 적용될 것이다.

93)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23 및 24에 대한 덴마크, 뉴질랜드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0(i)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또한 상기 문서의 노트 62, 43페이지의 입양 비용도 참조한다.

94)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의 노트 47, 권고 사안 No 2e를 참조한다. 2000 권고 사안은 권고 사안 No.3와 관련해서 2005 특별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 사안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212도 참조한다.

95)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32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96) 상기 설명서의 노트 19, 단락 269

4.2.2 허가는 왜 필요한가?

158. 허가는 출신국의 국제입양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되고 싶어 하는 외국의 인가단체의 활동과 수에 대한 통제권을 출신국에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설명서는 단락 268에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인가단체의 개입을 허용하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입양에 있어 그들의 역할은 많은 국가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 제12조는 인가단체가 다른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이 그들의 영토 내에서 동 인가단체의 활동을 허용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체약국에서 이미 승인된 기관이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그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거절될 수 있다.”⁹⁷⁾

159. 다시 말해 출신국은 자국의 영토에 특정 인가단체를 수용해야 하거나 또는 허가를 신청한 모든 인가단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출신국은 (민간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협약 실행의 절차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4.2.3 출신국과 수령국 간의 허가에 관한 협력은 왜 필요한가?

160. 국제입양에서 출신국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가단체의 수와 프로필을 확인하기 위해 양국 당국 간의 대화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⁹⁸⁾ 허가의 부여, 지속, 종료를 위해 사실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특정 출신국에서 활동하도록 인가 또는 허가된 기관의 수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당국이 있는 수령국일 경우 특히 용이하다.

161. 모범적 이행에 있어서 수령국이 출신국과 협의한 후, 출신국에서 인가단체가 더 필요하지 않다거나 특정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수령국은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162. 인가단체는 허가를 요청하기 전 출신국과 입양 대상 아동의 프로필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고, 출신국의 특정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민간/공공 기관 그리고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출신국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⁹⁹⁾

97) Ibid., 단락 268.

98) 상기 문서 3.4 제 3장 (일반 정책 고려사항) 참조

99) 상기 문서의 노트 55를 참조한다.

163. 출신국이 허가를 신청한 수령국 인가단체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수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신국은 허가를 신청한 각 인가단체에 대한 인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가 결정과 그 근거, 그리고 관련 서류의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164. 출신국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인가단체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수준과 기록을 비교할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수가 이미 많다면 출신국은 신규 기관의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출신국이 더 이상 허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다른 체약국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출신국에서 더 이상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으로 인해 허가가 갱신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설명해야 한다.

165. 본 지침은¹⁰⁰⁾ 외국의 인가단체나 그들의 대리인은 출신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령국은 인가단체의 인가 또는 허가를 갱신할 때, 출신국에서 활동하는 동 인가단체의 활동 보고서를 출신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할 수 있다. 허가된 인가단체의 감독에 대해서는 수령국과 출신국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권장한다.

166. 인가단체가 출신국과 수령국 중 한 국가의 법이나 승인/허가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양국 중 어떤 국가라도 외국의 인가단체에 주어진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¹⁰¹⁾

4.2.4 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67. 허가의 기준을 통해 출신국은 인가단체에 바라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출신국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인가단체의 신청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부적격 인가단체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자제시킬 수 있다.¹⁰²⁾

168. 출신국은 외국 인가단체의 허가 요청을 조사하고 적절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2장에서 논의된 인가의 원칙을 수용하고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00) 7.4.1 및 7.4.2장을 참조한다.

101)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34에 대한 이탈리아 및 스웨덴의 응답 그리고 No 36에 대한 덴마크, 이탈리아 및 노르웨이의 응답을 참조한다. 상기 모 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211을 참조한다.

102) 이 질문은 원칙 4(인증 및 허가 기준을 사용한 역량 입증 및 평가 원칙) 하에서 인증 원칙과 관련한 2.3.4 장에서 검토되었다. 7.3장에는 허가 요청을 뒷받침하는 문서 목록이 나와 있다.

4.3 수령국에서의 인가단체 수 제한¹⁰³⁾

169.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램과 일관되게 많은 수령국은 출신국의 입양 가능 수에 따라 인가단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⁰⁴⁾ 이를 위해 국가들은 엄격한 인가 기준을 부과하거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또는 특정 국가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수를 제한하는 등 직·간접적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수령국은 출신국과 협력하여 출신국의 선호 및 특정 문제에 대한 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입양 대상 아동 수가 제한됨에 따른 인가단체들 간의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해 출신국이 직면하게 되는 압력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함이다.

4.4 출신국에서 활동하는 허가된 인가단체 수의 제한

170. 일부 출신국은 입양 대상 아동의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이 허가된 인가단체의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또 어떤 출신국의 경우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으나, 입양 적격성 평가 역량 부족으로 자국의 역량에 맞게 자국에서 활동이 허가된 인가단체의 수를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많은 출신국에서의 국내입양이 증가하는 등 현재 국제입양의 추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입양 숫자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출신국과 수령국은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관과 허가나 인가를 신청한 기관의 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71. 2장의 원칙 4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가단체의 허가 기준 중 하나는 출신국에서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는 이미 국제입양을 통해 가족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아동의 수와 필요한 인가단체의 수를 맞추었다.¹⁰⁵⁾ 이와 관련하여 체코와 에콰도르의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에 주목해야 한다. 체코의 중앙당국은 자국의 입양 대상 아동의 숫자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국가 당 하나의 인가단체만을 허가하고 있다.¹⁰⁶⁾

103) 본 지침의 3.4장을 참조한다.

104)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10 (ii)에 대한 벨기에 (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방) 및 캐나다 (퀘벡주)의 응답 및 동일 설문지의 질문 8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도 참조한다.

105)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1에 대한 부르키나파소, 체코 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헝가리 및 리투아니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7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도 참조한다.

106)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1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1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또한 결의안 No 010-CNNA-2008 및 No 26-CNNA-2008도 참조한다. 이 결의안은 웹사이트 < www.cnna.gob.ec > 내 'Autoridad Central' 및 'Adopciones Internacionales' (2012년 2월 14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2. 출신국은 신규 인가단체 수용을 완전히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¹⁰⁷⁾ 이 경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결정을 알릴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과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알려야 한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모든 중앙당국과 국가기관에 이를 알리게 된다. 만약 인가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감독 중앙당국(the supervising central authority)에 이를 알릴 수 있다.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이러한 행동이 해당 기관의 인가 취소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자국에서 활동하는 인가단체에 허가를 부여할지 그리고 언제 허가할지를 결정할 권한은 출신국에 있다.

173. 출신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인가단체는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출신국과 수령국의 실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따른다.¹⁰⁸⁾

174. 수령국과 출신국 간의 힘과 자원의 불균형 때문에 출신국은 수령국 인가단체의 허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때때로 정치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175. 일부는 외국의 인가단체 수를 제한하는 것은 입양 대상 아동의 필요를 최고로 충족시켜줄 예비입양부모를 폭 넓은 범위에서 찾고자하는 출신국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출신국은 출신국의 제한된 자원을 이유로 인가단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기관 간 경쟁을 부추겨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4.5 인가와 허가의 관계

176. 대부분의 수령국은 특정 국가에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협약 제12조의 허가과 제10조에 따른 인가 과정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수령국의 허가는 출신국에서 더 많은 인가단체가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특정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신국과의 상의가 이루어진 후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관점에서 수령국은 출신국과 협력하여 인가단체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출신국의 필요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는 출신국이 외국 인가단체의 수많은 허가 신청을

107)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의 질문 No 5 e)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다른 국가들은 국제 입양아 수가 적은 것이 아이들을 제도적으로 관리 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입양 대상 아동 수의 부족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에스토니아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들로부터 소외 되고 있고 이를 수령국에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7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응답 및 리투아니아 중앙 정부 웹사이트< www.vaikoteises.lt/en > 내 ‘입양’ 및 ‘공인 입양기관’ 내 정부 발표문 (2012년 2월 14일 최종 확인)을 참조한다.

108)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33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177. 한편, 일부 수령국은 허가와 인가 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대신 허가는 인가를 받은 다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⁰⁹⁾ 이로 인해 수령국이 특정한 출신국에서 활동하려는 인가단체의 적합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출신국에 중요한 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수령국은 의심스러운 인가단체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가 결정에서 출신국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외국 인가단체가 자국에서 활동하도록 허가하는 주요 권리와 책임(제한되지 않아야 하는 권리와 책임)이 출신국에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178. 이러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수령국은 얼마나 많은 기관과 어떠한 종류의 기관에 허가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출신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인가나 허가를 통한 제한이든 아니든, 수령국에 의한 것이든 출신국에 의한 것이든, 목적은 출신국의 아동의 필요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 인가단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179. 외국 인가단체에 대한 출신국의 허가 결정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서는 안 되며, 외국 인가단체의 전문성 및 윤리성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외국 인가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자국의 필요를 적절하게 평가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¹¹⁰⁾

180. 협약 제12조의 전문은 협약의 실제 이행 과정에서 빠지거나 이행의 일관성이 결여되기도 한다. 일부 출신국가에서 “인가”는 자국에서 이미 인가를 받은 외국 인가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허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허가”는 국내법 내에서 협약의 “인가”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다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본질과 목적이다.¹¹¹⁾

109) 이러한 방식은 '개방형 허가'라고 불린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 및 23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110) 이는 과테말라 정부의 국가 입양위원회 (CNA: Consejo Nacional de Adopciones)가 제한적 조건 하에서 국제 입양을 시도하는 CNA를 지원하기 위한 소수의 국제 입양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시범 사업에서 취한 방식이다. CAN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국제사법회의의 사무국의 지원을 받았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리투아니아, 페루, 필리핀 등을 포함해서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23 및 24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필리핀의 경우 본 지침의 부속서 2A를 참조한다.

111) 2009 설문지 서문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할 것을 국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가단체의 역할

181. 본 장은 인가단체의 역할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기술하고 각 사례와 관련된 실제적인 역할을 검토한다. 협약은 중앙당국(또는 권한당국)이 인가단체에 위임 가능한 일부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 반드시 중앙당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역할과 위임받은 기관이나 기타 당국에 위임될 수 있는 역할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5.1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

182. 협약은 각 국가가 협약의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국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앙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은 각 체약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중앙당국이 실제적인 입양절차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협약 제4장의 기능은 인가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에 위임될 수 있다.

183. 중앙당국의 모든 역할이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 것은 중요하다. 협약 제9조, 제14조~제21조의 역할은 중앙당국, 다른 공공당국,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지만, 제7조, 제8조, 제33조의 역할은 인가단체에 위임할 수 없다.

5.1.1 중앙당국의 특별한 의무

184. 협약 제7조 (1)항은 중앙당국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 권한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¹¹²⁾

185. 협약 제7조 (2)항은 협약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입양에 관련된 정보전달에 관한 중앙당국의 활동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¹¹³⁾ 협약 제7조 (2) b)항은 중앙당국이 가능한 한 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6. 협약 제7조 (2) b)항은 “중앙당국은 협약 조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 제33조와 함께 읽혀져야 한다.”¹¹⁴⁾ 이에 따라, 모든 당국이나 기관은 협약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을 중앙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112)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4.2.3장을 참조한다.

113) Ibid., 4.2.2장.

114) 설명서 노트 19, 단락 212 참조

187. 협약 제8조는 중앙당국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혹은 공공당국들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당국은 “입양과 관련한 부적절한 재정적/기타 이득을 금지하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당국이 스스로 이러한 조치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당국이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예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음이 협약 제8조에 언급되어 있다.¹¹⁵⁾

188.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중앙당국에 협약 위반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혹은 법적 조치를 위해 검찰에 해당 건을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출신국에서 이러한 권한은 협약이나 출신국의 법을 위반한 외국의 인가단체나 그 대리인에 대한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

189.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호에 따르면 중앙당국이 입양 과정과 관련된 역할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중앙당국은 입양 과정을 위한 정책, 절차, 기준, 지침의 개발 또는 이에 대한 자문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¹¹⁶⁾ 또한, 중앙당국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인가단체, 출신국에서의 활동을 허가받은 인가단체에 대한 인가, 통제, 검토와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¹¹⁷⁾

190. 중앙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각 국가의 내부 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다양하다. 특히, 결정과 통제 능력, (법적 행정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사회사업의 역량, 국제적 관계의 가능성 차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¹¹⁸⁾ 인가단체가 입양절차 수행의 일부를 지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당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당국은 반드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아야 한다.¹¹⁹⁾

5.1.2 인가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중앙당국의 기능

191. 협약 제9조에는 정보의 수집과 보존, 사후입양서비스 촉진 등과 같은 중앙당국, 공공기관 또는 인가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192. 국제입양의 절차에 관한 협약 제14조~제21조는 중앙당국이 공공당국이나 인가단체에게 위임하거나 스스로 수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언급하였다. 협약 제15조~제21조만 협약

115) 이러한 문제는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 제32조 내 체약국에 관한 직접적 의무로 포함되어 있다.

116)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173

117) Ibid., 단락 174.

118) 상기 입양 비용, 노트 62, 36 페이지 참조

119)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노트 22, 3.2 및 4.1.2 장을 참조한다. 2.3.7 장의 인증 원칙 No 7 (당국의 권한 및 자원에 관한 원칙)도 참조한다.

제22조 (2)항에 언급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위임될 수 있다.¹²⁰⁾

193. 협약의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입양절차 수행기관은 먼저 반드시 공식적인 인가를 받고 지정되어야 한다. 협약 제13조에 따른 인가단체의 지정과 이들의 연락 정보는 인가 시점에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¹²¹⁾ 전달되어야 한다.¹²²⁾

194. 각국 인가단체의 역할의 범위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어야 한다.¹²³⁾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기능이나 책임의 분배는 다른 체약국을 위하여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에 있는 국가 프로파일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¹²⁴⁾

195. 설명서는 개인은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 제10조는 ‘단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협약 제3장에 따라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협약이 중앙당국에 부여한 의무를 개인보다 더 잘 준수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협약 제10조는 ‘단체’만을 언급하여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체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은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¹²⁵⁾

196. 협약에 관한 설명서는 중앙당국의 역할 위임에 관하여 일부 제한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협약 제9조에 명시된 기능의 위임은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임은 기타 공공당국 또는 인가단체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¹²⁶⁾ 그러므로 협약 제9조의 의무 특히, 입양준비, 지원, 후속 조치에 관한 의무는 중앙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행되거나 또는 인가단체 및 공공당국의 지원을 받아 이행된다. 책임의 위임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¹²⁷⁾

197. 인가단체에 특정 기능을 위임하는 것은 예비입양부모, 아동, 친부모의 입양 준비, 지원, 후속 조치의 완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재정적 자원을 중앙당국이 갖추지 못한

120) 본 지침에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자에 관한 논의는 13장에 나와 있다.

121)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3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122)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47, 권고 사안 No 2d를 참조한다. 2000 권고 사안 No 2는 권고 사안 No 3 내 2005 특별 위원회 노트 5의 결론 및 권고 사안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123)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의 노트 47, 권고 사안 No 2f를 참조한다.

124)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지1, 노트 22, 단락 202. 모델 양식은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5)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249-250을 참조한다.

126) Ibid., 단락 221.

127) Ibid., 단락 222.

많은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 특정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중앙당국은 자신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¹²⁸⁾ 협약에 의해 중앙당국에 위임된 업무가 다른 당국, 개인, 기관에 의해 수행될 때, 업무의 “위임”이 어떠한 당국, 기관, 사람에게 위임되든지에 관계없이 위임당국은 여전히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5.2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198. 협약은 인가단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2.2에서 논의되어있다. 중앙당국의 기능을 인가단체가 수행할 때 해당 인가단체는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99. 인가단체의 주된 역할은 입양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수령국과 출신국 내의 입양부모, 중앙당국 그리고 다른 당국들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¹²⁹⁾

200.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인가단체는 반드시 국제입양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목적-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인가단체는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을 인식하여야 한다.¹³⁰⁾

201. 모든 입양기관은 윤리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진다. 이들은 출신국과 수령국의 정책과 규정,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SS(국제사회봉사회)는 인가단체가 국제입양 과정의 윤리성, 전문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특성을 보장하는 기관인지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규제 기반을 구축하고, 인가단체의 지원, 훈련, 감독을 보장한다면 인가단체의 참여는 아동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드시 기여할 것이다.”¹³¹⁾

202. 협약 제22조 (1)항은 “각국의 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협약의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인가단체의 책임 범위는 협약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 법의 허용된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각국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인가단체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¹³²⁾

128) 상기 ISS 보고서 No 38, 노트 62를 참조한다.

129) Ibid.

130) UNCRC의 조항 20 및 21을 참조한다. 또한 ISS 보고서 No 38을 참조한다.

131) Ibid.

132) Ibid.

203. 협약 제9조는 주요한 역할의 일부로 인가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책임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 인가단체는

- 입양 과정 동안 예비입양부모와 동행, 구체적으로는 이들에게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 중앙당국의 입양 상담과 입양사후서비스 개발 촉진 노력을 증진 및 지원한다.
- 국제입양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한다.
-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청에 응해야 한다.

204. 이러한 일반적인 책임 및 협약 제14조~제21조에 명시된 의무와 관련된 역할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아래 목록은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인가단체는 수령국과 출신국 모두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5.2.1 출신국¹³³⁾

205. 출신국은 협약의 역할에 관한 국제입양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현지 NGO나 입양기관에 인가를 부여할 수 있다(그러나 의무는 아님). 일부 출신국은 수령국의 인가단체와 함께 일할 자국의 인가단체를 지정하기도 한다. 일부 출신국은 현지 기관에 인가를 부여하지 않으나, NGO들이 국제입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 다른 출신국은 외국의 인가단체가 일부 협약과 관련된 기능을 출신국에서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에는 중앙당국에 발송하기 전 외국인 예비입양부모의 신청서 검토, 결연 결정 참여 및 첫 만남부터 적응기간까지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206. 국제입양 이전의 여러 절차(가족보존 프로그램, 조기개입 프로그램, 아동보호체계로의 유입, 아동 상황에 대한 공적 평가, 아동을 위한 영구적 계획의 개발과 실행, 국내입양 등의 고려)들은 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인 조치이며, 보통 공공당국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가 많으며, NGO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때 협약의 본질적인 의무인 보충성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행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호, 6장에 자세하게 논의되어있다.

133)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7에 대한 출신국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207. 출신국에서는 아동보호당국이 포괄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내입양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기관이 아동을 시스템에 올리는 일이나 친부모의 결정(아동포기여부 결정), 결연 과정 모두를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전문 사회복지사를 두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08. 국내입양 서비스는 국제입양에 앞서 출신국 정부기관이나 NGO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209. 출신국은 국제입양의 역할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가단체가 협약의 기능을 수행해야하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인가단체에 의한 협약의 기능 수행이 필요한 경우, 출신국은 자국의 입양절차 수행기관에 인가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협약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협약의 기능이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중앙당국이나 공공당국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10. 출신국이 자국의 인가단체를 지정한 경우, 동 단체는 5.2.3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출신국 내의 외국 인가단체나 그들의 대리인에 의해 수행된다. 출신국 내에서 인가단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은 10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5.2.2 수령국¹³⁴⁾

211. 수령국에서 인가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입양 전

- a) 입양에 관심 있는 개인에게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국가의 국제입양 현황을 알려준다.¹³⁵⁾
- b) 국제입양을 위한 입양부모 준비 과정을 구성한다.
- c) 예비입양부모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제공되는 서비스, 입양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¹³⁶⁾
- d) 특정 출신국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예비입양부모에게 절차, 요청 서류, 입양 대상 아동의 프로필과 건강,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34)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7에 대한 수령국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135) 예를 들면 2011 제네바 ISS의 책자 국제 입양의 위험성: 예비 입양자들을 위한 지침 (이하 'ISS 책자')를 참조한다. 이 책자는 웹사이트 <www.iss-ss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6)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4에 대한 벨기에(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역),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페인의 응답을 참조한다.

- e)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이 요구한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 f) 해당 출신국에 완성된 서류 일체를 발송한다.
- g) 각 입양건의 올바른 이행을 위하여 수령국의 모든 당사자 및 당국과 친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h)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 신청 진행 과정을 알려준다.

▶ 결연 이후

- i) 아동의 자세한 정보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전달하고 결정을 위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 정보 및 서비스는 예비입양부모의 양육능력에 관한 조사서의 권고사항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 j) 국내법에 따라, 제안된 결연을 중앙당국에 공지한다.
- k) 각 입양 건에 대해 감독의 책임이 있는 수령국과 출신국 당국의 추가적인 요청에 응한다.
- l) 협약 제17조 c)항에 따라 권한당국으로부터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고 이 합의와 예비입양부모의 결연수용 결정을 출신국에 전달한다.
- m) 아동의 국가 방문 준비를 포함한 제안된 입양에 관한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한다.

▶ 입양 후

- n) 협약 제23조의 확인서 발급을 위해 관련 당국과 연락을 유지한다.
- o) 아동의 도착을 수령국의 당국에 통지한다.
- p) 예비양부모가 수령국 국적 획득을 포함한 아동의 법적 지위의 확보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취득한 경우 이를 출신국에 공지한다.
- q) 입양 후속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신국에 전달한다.
- r) 출생에 관한 정보 요청에 협력한다.¹³⁷⁾
- s) 국제입양의 모범 이행 개발 노력에 참여한다.¹³⁸⁾
- t) 아동이 가족으로 통합되는 시기 동안 입양부모와 아동을 지원한다.

137)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8에 대한 벨기에,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138)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8에 대한 덴마크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212. 인가단체의 전문 직원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6.3.1(전문적인 직원)에 나와 있다.

5.2.3 출신국에서의 외국 인가단체의 역할

213. 출신국 내의 외국의 인가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a) 이민절차 등의 입양 업무와 관련하여 당국과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요청에 응한다.
- b) 출신국 당국에 수령국 내 각 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한다. 예) 예비입양부모가 제안된 아동을 수용하였는지, 중앙당국이 협약 제17조 c)항에 따른 합의를 하였는지 등
- c) 출신국 내의 당국이 장애 아동을 위한 가정을 찾는 것을 지원한다.¹³⁹⁾
- d) 출신국에서 기관의 대표 또는 대리인을 지도하고 훈련시킨다.
- e) 출신국에 관한 부적절한 압력을 방지한다.
- f) 출신국 당국과 상의하여 입양 대상 아동의 가족에 대한 필요를 평가한다.

▶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에 머무르는 동안

- g)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에 머무르는 동안 안내하며, 기관의 책임 하에 관계자를 통해 적합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안내, 통역, 교통, 숙박 등)를 제공한다.
- h) 출신국과 협력하여 결연이 이루어진 후에 아동과 예비입양부모 간의 연락이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의 영구적인 배치는 협약 제17조와 국내법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i)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 내의 아동입양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j) 예상하지 못한 문제 상황이 아동에게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양부모를 지원해야 한다.

214. 출신국 내의 대리인은 상기 역할 중 일부 또는 기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 대리인의 역할은 6.4에 명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출신국 인가단체(만일 이러한 단체가 지정되는 경우) 역시 이러한 역할 중 일부를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상기 210항 참조)

139)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5에 대한 에콰도르 및 질문 No 57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제6장

인가단체의 구조와 인력

215. 인가단체의 구조와 조직은 국가 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같은 국가라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규칙은 존재한다. 이번 장에서는 수령국의 인가단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6. 입양과 국제입양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공적 아동보호 조치이다. 아동의 필요는 전문가와 아동 및 입양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경력자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길이다. 입양이 예비입양부모의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6.1 인가단체의 비전, 미션, 목적

217. 인가단체의 비전, 미션과 목적은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가단체의 주요한 역할 또는 목적은 예비입양부모와 다양한 국가의 여러 당국, 입양 대상 아동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철학은 반드시 아동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출신국이 아동의 원가족 보존과 원가족 결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아동을 찾기 위해 압력을¹⁴⁰⁾ 가해서는 안 된다.

218. 인가단체는 전문성 및 내부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¹⁴¹⁾

219. 인가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인적, 전문적 측면의 윤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각국은 모든 인가단체에 적용되는 윤리 강령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 강령은 인가단체의 비전, 미션, 목표와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단체의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한다.¹⁴²⁾

220. 요약하면, 인가단체는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입양절차를 준수하고, 알고, 이해하고,

140) 출신국에 대한 압력의 예는 12.3.1 장에 나와 있다.

141) 이러한 이행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들자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6에 대한 캐나다 (퀘벡),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SAR)),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포르투갈 및 슬로바키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내부 지침은 관할 당국에 의해 인증 절차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1에 대한 벨기에 (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역), 브라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및 퀘벡), 중국 (홍콩 SAR), 덴마크,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142)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인가단체들은 인증 조건으로서 표준 윤리 강령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2000 국제 입양법 (IAA), 22 CFR 부 96 (연방법) 하에서 인가단체의 면적 96.29 - 96.56mm 및 담당관의 승인이 명시된 '인증 및 승인 표준'을 매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중국 (홍콩 SAR)의 경우 '국제 입양과 관련한 인가단체의 행동 규약'이 적용되고 있다. 홍콩 SAR의 국제 입양과 관련한 인증 시스템을 참조한다. 이는 < www.swd.gov.hk > 내 '다운로드'란 및 '문서' 부속서 4 (2012년 2월 12-13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2009 설문지 노트의 질문 No 16에 대한 벨기에 (프랑스 지역) 및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퀘벡)의 응답을 참조한다. 다수의 국가들은 입양절차 수행기관들로 하여금 전문적 활동에 대한 윤리강령과 규정의 준수와 관련된 증명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1 및 16에 대한 벨기에 (프랑스 지역), 브라질, 캐나다 (마니토바 및 온타리오), 엘살바도르,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및 필리핀의 응답을 참조한다.

감독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및 지역별 전문가 또는 전문 팀, 필요한 경우 파트너 기관 및 대리인을 활용한다. 또한 중앙당국 및 기타 당국과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다.

6.2 인가단체의 구조

221. 협약은 인가단체의 책임자와 직원의 전문적/인성적 자격을 언급하고 있다.¹⁴³⁾ 그러나 협약은 인가단체의 규모나 구조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유일한 규정은 기관이 한 명의 개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¹⁴⁴⁾ 그러므로 인가단체의 기본적인 구조는 각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

222. 중간 규모 그리고 큰 규모의 기관은 좀 더 전문적인 결정을¹⁴⁵⁾ 위하여 적당한 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둘 것을 권장 받고 있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과정에 참여하는 예비입양부모는 입양절차 기간 동안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3. 부부의 입양 경험만으로 입양절차 수행 기관을 설립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단지 입양부모의 신분, 공공 기관 또는 당국이 조직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양 현장에서의 충분한 경험으로 인정될 수 없다.

224. 인가된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중앙당국, 공공당국, 권한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업무 분배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¹⁴⁶⁾

6.3 인가단체의 인력

225. 협약 제11조 b)항은 인가단체의 전문적인 직원의 요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가단체는 윤리적인 기준 및 국제입양 분야에서의 훈련이나 경험으로 보아 적격인 개인에 의해 지시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143) 협약 제11조 b).

144)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249를 참조한다.

145) 이탈리아의 경우 인가단체들은 적합한 조직 구조를 갖춰야만 한다. 설문지 2009의 질문 No 9에 대한 응답 및 1983 5월 4일 이탈리아법 No 184의 조항을 참조한다. 또한 캐나다 (퀘벡)의 RQ c. P-34.1, r.0.02, 조항 1, 국제 입양의 인가와 관련한 명령을 참조한다.

146) 상기 설명서, 노트 6, 이탈리아 중앙당국의 입양기관 인가를 위한 기준을 참조한다.

226. 협약 제22조 (2)항에서 청렴성, 전문적 역량, 경험과 책임과 같은 구체적인 자질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협약의 원칙과 인가단체를 위한 기준의 동일한 자질이 인가단체의 직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다.¹⁴⁷⁾

227. 인가단체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 능력 있고 전문적인 직원,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¹⁴⁸⁾

228. 인가단체의 직원은 실질적이고 인지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가단체의 유급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은 해당 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없어야 하며, 이들 모두 범죄 경력이 없는 자라야 한다.¹⁴⁹⁾

229. 국제입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직원 역시 협약 제11조 b)에 명시된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¹⁵⁰⁾ 다른 조건은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 역시 개인정보 기밀유지 및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금지 등, 법률, 기관의 조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협약의 규칙에 구속된다.

6.3.1 분야별 전문인력

230. 인가단체는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변호사,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고 있거나 그러한 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¹⁵¹⁾

231. 이러한 전문가들은 모두 적합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입양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된 훈련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¹⁵²⁾

232. 인가단체의 기능은 5.2(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다음은 전문가의 책임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기능이다.

147) 협약 제11조 b).

148) 일부 국가들은 직원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의 경우 인가를 원하는 단체는 직원 관리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1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 및 1996 입양기관 규정 2(3) 절을 참조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인가단체는 자신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내에서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보유해야 한다(1983년 5월 4일 법률 No 184의 조항 39). 본 지침의 부속서 2A 및 2B에 나와 있는 필리핀의 인가 기준을 참조한다.

149) 예를 들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는 1996 입양기관 규정 5(1)절: 인가 기간 중 계약을 체결한 행정관, 직원 또는 개인과 관련해서 인가단체가 범죄 기록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150)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260을 참조한다.

151) 일부 국가들은 다분야 직원을 유지할 것을 인가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2에 대한 벨기에 (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역), 캐나다 (퀘벡),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응답을 참조한다. 기타 국가들은 소수의 다분야 직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2에 대한 캐나다 (온타리오)의 응답을 참조한다.

152) 일부 국가들의 경우 특정한 자격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2에 대한 덴마크,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응답을 참조한다.

- 입양신청자로 하여금 그들이 입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양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별적인 면접을 통한 입양 오리엔테이션, 그룹 오리엔테이션이나 입양포럼을 제공한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입양 대상 아동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입양부모로서의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입양 신청자가 출신국에 제출할 보고자료(국가 자료, 이민 절차 등) 준비를 지원한다.
- 입양아동의 기본적인 그리고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및 적합성이 있는지 입양 신청자와 가족구성원을 평가한다.
- 가족이 승인받는 순간부터 아동과 결연이 맺어지기까지의 대기 기간 동안 지원을 제공한다.
- 입양아동의 배치를 준비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이 출신국에 있는 동안 서로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입양가족과 아동이 수령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의료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소개한다.
- 출생에 관한 정보 요청 시 협력한다.
- 출신국 또는 수령국에서의 입양 마무리 작업을 지원한다.
- 입양부모, 입양인에게 입양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입양사후상담을 제공 또는 추천한다(아동과 가족 간 원활한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 등).

6.3.2 전문기술 인력

233. “전문기술 인력(technical staff)”이라는 용어는 국제입양, 아동보호와 아동권리 외의 기타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갖춘 직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기술인력은 그들의 지식과 경력에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무관리역량은 인가단체의 재정적 투명성 증진과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의 금지 원칙 준수를 위해 우선순위가 높게 배정되는 전문성이다.

234. 사례 파일 관리, 기록의 보존과¹⁵³⁾ 정보의 접근은 전문기술 인력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러한 역할에 적용되는 협약상의 의무가 존재한다.

153)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7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6.3.3 자원봉사자

235. 입양부모와 회원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것은 인가단체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자원봉사자는 인가단체에서 봉사할 때 기밀유지 동의서와 윤리법규에¹⁵⁴⁾ 서명해야 한다.

236. 때로는 입양 관련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서비스를 기관에 기부하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수 있다.¹⁵⁵⁾

237. 전문 자격이 없고 아동을 국제 입양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는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일부 인가된 입양기관 특히 소규모 기관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직원처럼 업무를 다루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¹⁵⁶⁾ 이러한 기관이 예비입양부모가 입양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인가단체를 필요로 하는 출신국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 만약 기관이 전문적인 경험과 훈련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나 봉사자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는 협약 제11조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238. 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봉사자들의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행정인력을 지원한다.
- 입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예비입양부모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 아동 및 입양관련 전문가라면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소속되어 지원할 수 있다.

6.4 출신국에서 외국 인가단체의 대리인

239. 출신국에 따라 인가단체가 규모가 있는 사무실을 갖추기도 하고, 또는 1명의 대리인만을 두기도 한다. 이것은 수령국, 출신국, 인가단체의 자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⁵⁷⁾

154)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3에 대한 캐나다(마니토바)의 응답을 참조한다.

155) 이탈리아의 경우 대부분의 인가단체들은 해당 교육 및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자원 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거나 자원봉사 직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3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156) 입양: 그 비용은? 노트 62, 45페이지(인력의 전문화)를 참조한다.

157) 예를 들면 러시아는 국가 내 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240. “대리인(representative)”이란 외국의 인가단체가 출신국에서 동 단체를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선택한 개인이다. 대리인의 자격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는 기관과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대리인의 보수 역시 다양하다.

241. 예를 들어, 일부 출신국은 (법이나 절차에 의해) 수령국의 인가단체가 출신국에 대리인 또는 연락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한다.¹⁵⁸⁾ 일부 출신국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둘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¹⁵⁹⁾ 이러한 대리인은 중앙당국과 다른 당국 간 또는 수령국의 인가단체와 출신국 기관 간의 공식적인 연결을 수행한다. 그들은 출신국에서 당국을 위한 특정 역할 및 의무 수행을 하여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즉, 특정 전문성과 업무 경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가단체는 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리인 선정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2. 한편, 일부 출신국은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출신국은 중앙당국이 예비입양부모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것 혹은 외국의 인가단체가 출신국의 인가단체와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다.¹⁶⁰⁾

243. 출신국 내 외국의 인가단체의 역할은 5.2.3에 명시되어 있다. 출신국에 있는 대리인은 이러한 역할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다.¹⁶¹⁾

- 출신국에서 외국의 인가단체를 대표한다.
- 외국의 인가단체에 출신국에서의 법적 요건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해 알린다.
- 외국의 인가단체에게 출신국이 일반입양만 하는지 여부, 만일 수령국에서 입양이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될 경우 친부모의 동의 획득을 위한 절차를 알려준다.
- 출신국 중앙당국에 서류를 전달하기 전에 모든 필수 서류가 예비입양부모의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한다.
- 출신국에서 예비입양부모를 대신한다.
-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에 있는 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입양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예비입양부모, 중앙당국 등)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입양절차 및 관련 변동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전달한다.

158)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32(b)에 대한 부르키나파소,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헝가리, 리투아니아, 멕시코 및 페루의 응답을 참조한다.

159) 이는 콜롬비아 (본 지침의 부속서 2, 1.2절 참조) 및 에콰도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2에 대한 응답 참조)의 경우에 해당한다.

160) 이는 필리핀 (본 지침의 부속서 2, 3절 필리핀의 관점), 체코 공화국 및 라트비아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2에 대한 응답)의 경우에 해당한다.

161) 예를 들면 본 지침의 부속서 2, 1절에 나와 있는 콜롬비아를 참조한다.

6.4.1 대리인의 모범이행

244. 대리인에 관하여 보고된 문제는 감독과 규제의 부족, 대리인의 역할, 특성 및 보수 금액에 대한 불명확성 등이다.

245. 출신국 내의 대리인은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적이며 입양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246. 모범적 이행을 위해 (중앙당국 또는 기타 공공당국을 통해) 대리인이 외국 인가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출신국은 대리인을 승인 또는 허가하기 위한 규정이나 기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¹⁶²⁾ 대리인의 승인 또는 허가는 외국 인가단체를 위한 출신국의 허가절차의 일부일 수 있다.

247. 수령국의 인가단체가 계약자의 신뢰성이나 평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동 단체는 출신국의 중앙당국 또는 다른 관련 당국의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니세프, 국제사회봉사회(International Social Service) 또는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같은 인권 또는 아동권리 대표 단체와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 일부 수령국의 경우 출신국의 외교 공관이 지원할 수 있다.

248. 외국의 인가단체는 그들의 대리인과 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출신국(중앙당국이나 다른 감독 및 규제 기관)은 이러한 합의서의 복사본을 보관해야 한다.¹⁶³⁾

249. 출신국과 수령국 양국에서 보수 수준과 방법은 투명하고 중앙당국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보수의 적정 수준은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수령국의 대사, 유니세프 또는 ISS(국제사회봉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50. 외국의 인가단체는 동 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한 개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162)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 및 필리핀을 참조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인가단체의 허가를 위한 절차 규정 명령의 목적은 국제 입양 분야와 관련한 교육, 직무 경험 및 윤리적 배경 측면에서 역량을 갖춘 자만이 국제 입양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명령은 웹사이트 < www.vaikoteises.lt/en > 내 '입양' 및 '공인 기관' (2012년 2월 14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필리핀의 경우 국제 입양절차는 현지 연락 기관의 인증을 통해 규제받고 있다(본 지침의 부속서 2A에 논의되어 있음). 또한 일부 수령국들은 인가 절차의 일환으로 인가단체들과의 계약 관계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출신국 내 대리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1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의 응답 및 질문 No 19에 대한 노르웨이의 응답을 참조한다. 스웨덴의 경우 인가단체에 대한 표준 인증 조건으로 출신국 내 중재인과의 서면 계약 체결에 앞서 중앙 정부와 협의해야만 한다.

16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수령국들은 국가의 인가단체와 출신국의 대리인간 계약 관계를 감독하고 있다. 출신국 내 이러한 관행의 예로 리투아니아를 들 수 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공인 국제 입양기관은 의무적으로 현지 대리인과 계약을 맺고 인가에 앞서 리투아니아 중앙 정부에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대리인은 감독과 모니터링을 받으며, 적합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¹⁶⁴⁾ 교육은 외국의 인가단체가 정기적으로 출신국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수령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251. 대리인은 윤리와 행동강령, 인가단체가 예비입양부모를 준비시키는 업무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령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는다. 대리인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1993 헤이그협약의 원칙을 교육받을 뿐 아니라, 인가단체에게 출신국의 입양법의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갱신된 수령국의 입양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52. 대리인에 관한 문제는 본 지침 2.3.6(윤리적 대리인의 원칙)에서도 논의되어 있다.

6.4.2 출신국 내 외국 인가단체의 기타 협력자

253. 출신국 내 외국 인가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타 협력자(통역사, 가이드, 연락담당자 등)들이 있다. 이들은 비록 외국 인가단체의 직원은 아니지만 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가단체가 그러한 협력자들의 계약과 고용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늘 분명하다. 통역사, 가이드, 변호사, 운전기사 등은 청렴성과 윤리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적합한 훈련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예비입양부모에게 출신국에서의 이들에 대한 경험을 보고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254. “연락담당자”는 공식적인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연락담당자는 입양가족이 출신국에 머무르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역을 담당하지만 출신국 내의 당국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며, 동 당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비록 이들 역할의 공식적인 성격이 낮기는 하지만, 인가단체는 이들과 계약하기 전 윤리적 기준을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255.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자와 인가단체 간고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면 합의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역할과 책임 그리고 당사자 간의 경제적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재정 거래에 대한 책임 방식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과 같이 협력자에 대한 승인 및 허가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164) 필리핀의 경우 중앙당국은 국제 입양의 최신 정책 및 요건을 알리기 위해 현지 입양기관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5에 대한 필리핀의 응답을 참조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앙당국은 출신국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가단체들이 출신국 관련자와 협력하고 교육 과정을 마련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상기 입양 비용, 노트 62, 38-39 페이지를 참조한다.

6.5 인가단체의 인력에 관한 다른 문제들

6.5.1 수령국 내 인가단체의 국가 전문가

256. 모범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인가단체가 특정 국가나 지역을 전담하는 전문가나 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가단체가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5장에서 언급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제입양에 관련 출신국과 수령국의 법령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출신국의 문화, 경제, 사회-정치적 상황과 아동의 필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출신국과 수령국의 관련 기관 및 당국과 신뢰감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 특정 국가에서의 아동 입양 요건 특히, 입양 가능한 아동의 프로필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프로필을 입양부모에게 알리고 교육시키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257. 출신국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는 최소 연 1회 정기 방문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좋다. 출신국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인력 또한 수령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는 서로의 체계와 국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많은 이유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 관계는 수령국과 출신국 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6.5.2 인력의 비율

258.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명의 직원이 처리하는 아동과 가족이나 사례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직원의 수는 기관이 처리하는 건수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20-30건 당 최소 1명의 전문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¹⁶⁵⁾

6.5.3 직원 교육

165) 이는 본 지침의 부속서 2A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제 입양 인증과 관련된 최소한의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

259. 협약과 관련 법률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인가단체의 직원은 전문적이어야 하며 잘 훈련받아야 한다.

260. 모든 직원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 책임, 의무 뿐 아니라 인가단체의 목적과 규칙, 국가의 입양법, 국제입양의 원칙을 포함하는 의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소개는 국제입양과 각 당사자(아동, 친부모, 입양부모)의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의뢰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관의 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

261.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이행되어야 한다. 각 직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입양아동 및 부모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중앙당국이 소규모 인가단체에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거나 그들이 이러한 훈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다.¹⁶⁶⁾

6.5.4 공식 요건(서면고용계약)

262. 인가단체의 모든 직원은 직무내용, 연봉, 금지되는 행동과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서면으로 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6.6 재정 문제

263. 협약 제11조에 따라, 인가단체는 반드시 비영리 기구여야 하며(11a조),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협약 제32조). 인가단체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감독이 이루어진다.

264. 이러한 조건에 따라 모든 영수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¹⁶⁷⁾ 회계장부는 공인회계사에게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¹⁶⁸⁾

166) 상기 입양 비용? 노트 62, 44-45 페이지를 참조한다. 또한 상기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5 및 19에 대한 응답도 참조한다.

167) 다수의 출신국 및 수령국에 있어서 재무 기록의 관리는 인증 조건이 되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168) 이러한 특정 요건과 관련해서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노르웨이의 응답 및 질문 No 51에 대한 독일과 이탈리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265. 인가단체의 재무 기록 사본을 연 1회 이상 중앙당국과 인가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¹⁶⁹⁾
입양 관련 재무 사안 및 비용에 관한 논의는 8장을 참조한다.

169) 이러한 이행은 대부분의 수령국 및 일부 출신국 (예: 브라질)에서 채택되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제7장

인가단체의

승인 및 감독 절차

7.1 인가단체의 책임성

266. 협약 안전장치로서 입양기관의 인가에 대한 중요성과 그들이 감독 당국 및 인가 당국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이미 논의하였다.¹⁷⁰⁾ 인가를 부여하는 권한당국 선택의 문제는 3.3장에서 논의하였다.

267. 협약은 인가단체의 각 체약국들이 적어도 인가에 대한 동일한 기본 기준을 가져야 함을 인정하였다. 국가는 인가 절차의 마련뿐만 아니라 인가단체의 감독과 인가 갱신에 관한 기준과 조건을 정해야 한다.¹⁷¹⁾ 인가 및 허가 기준을 사용한 역량의 입증과 평가의 원칙은 2.3.4장에서 설명하였다.

268. 인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인가의 부여 기준 및 기타 조건들을 사용하여 진행된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3가지 중요 원칙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부당한 이득의 방지 원칙이다.¹⁷²⁾

7.2 인가 절차

7.2.1 인가 신청

269. 인가 신청은 협약의 기준과 인가하는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은 보통 사설 기관이며,¹⁷³⁾ 관련 국가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은 인가 또는 획득이 불가능하다.¹⁷⁴⁾

270. 인가 신청은 기관이 사무실을 설립하고 주요 업무를 하는 국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 각 국가는 신청 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가를 위한 표준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¹⁷⁵⁾

170) 제 1장(인가 시스템의 필요성) 및 제 2.3.5장(인가단체의 책임성 원칙)을 참조한다.

171) 조항 11 c).

172)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2장에 논의되어 있는 UNCRC 및 1993 헤이그협약을 참조한다.

173) 공공 기관도 인가단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공 기관은 정부 부처로서 일반적으로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공공 기관은 지정될 수 있다. 해당 공공 기관은 인가단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자원 및 역량을 갖추 필요가 있다.

174) 상기 설명서, 노트 19, 249-250 단락을 참조한다.

175)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8에 대한 캐나다 (퀘벡),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271. 인가 부여의 권한이 있는 당국은 신청서 접수일 이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입양절차 수행기관은 인가를 받기 전에는 1993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7.2.2 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272. 입양절차 수행기관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한당국은 각 기관에 신청의 근거가 되는 특정 정보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윤리적 기준과 전문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며, 또한 입양절차 동안 아동 최선의 이익과 입양부모와 친가족의 이익 보호하는데 기여한다.¹⁷⁶⁾

273. 예를 들어, 입양절차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 a) (수령국의 공공등록소에 기록되어야 하는) 기관 법인¹⁷⁷⁾임을 증명
- b) 조례 그리고/혹은 기관의 규정¹⁷⁸⁾
- c) 다음의 이력과 업무 프로필을 포함하는 기관 구성원(이사회, 직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세부사항
 - i)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름과 자격, 가능한 경우 각 직위의 업무 기술서
 - ii) 가능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이름, 의무와 책임
 - iii) 각 직원이 범죄경력이나 이익의 충돌이 있지 않음을 증명
 - iv) 직원과 책임자가 전문적, 개인적인 윤리의 원칙에 따를 것을 작성한 서면 동의를 포함하는 그들의 개인적/업무적 프로필
- d) 입양에 관한 수령국과 출신국의 법에 대한 기관의 이해와 지식
- e) 특정 기간 추정 예산. 중앙당국이나 권한당국은 회계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¹⁷⁹⁾
- f) 예비입양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특히 준비 과정, 미팅(개인 또는 그룹), 서류, 웹사이트 정보와 입양 사후 서비스 내용
- g. 기록의 보호와 기밀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h. 대리인을 포함한 직원 훈련을 위한 체계 기술서

176) 네덜란드 중앙당국은 운영 규약에 있어서 국제 입양 중재에 관한 허가 부여 및 허가 연장과 관련해서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

177) 이는 여러 수령국들의 요건이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의 질문 No 11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178) Id.

179) Id.

7.2.3 인가의 효력 기간

274. 협약은 인가의 효력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범적 이행을 위해, 인가는 특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기간, 보통 2~5년 동안의 효력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¹⁸⁰⁾

275. 인가 갱신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줄이고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3년 이상 인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건의되었다.¹⁸¹⁾

276. 일부 국가는 입양의 적절한 수행 및 기관의 역량에 대한 평가 및 감독 개선을 위해 인가 효력 기간을 3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¹⁸²⁾ 예를 들어, 캐나다 일부 지역은 기관이 새로운 국가와 협력을 시작한 경우 2년의 인가와 허가를 부여한다. 태국에는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4개의 국내 인가단체가 있다.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인가는 매년 갱신된다.

7.2.4 양도 불가

277. 인가의 부여는 지명된 특정 기관에 이루어지며 동 인가가 얼마동안 유효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된 조건, 제한과 금지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관명을 변경하는 경우, 출신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인가 서류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발행 되어야 한다.

278. 인가는 양도할 수 없다. 기관이 업무를 중단했고 다른 기관이 동 기관의 서류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기관의 인가는 양도될 수 없다. 만약 인가단체의 법적 성격이 변경되었다면 - 예를 들어 두 개의 기관이 하나로 변경된 경우 - 새로운 기관은 다시 인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7.2.5 인가의 거부 또는 거절

279. 인가 당국이 해당 인가가 아동, 입양 가족과 친가족의 이익을 보장하고 해당 기관이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인정하여야만 인가가 부여될 수 있다. 인가의 거부 또는 거절은 더 이상

180)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21에 대한 벨기에(플랑드르 지역), 캐나다(퀘벡),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및 포르투갈의 인가 효력기간은 무기한이다. 즉,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21에 대한 각국의 응답에 나와 있듯이 만료일이 없다.

181) 상기 EurAdopt-NAC 노트 21의 모델 인증 기준을 참조한다.

182)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21에 대한 캐나다(퀘벡)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캐나다(퀘벡): “인가는 초기 인가 신청 후 최대 2년간 부여된다.” 스웨덴: “이따금 즉, 새로운 협회가 신청하거나 새로운 국가가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

인가단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주로 인가 국가의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280. 인가 또는 인가의 갱신이 거부되면 기관은 보통 거부 결정에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¹⁸³⁾ 그 이후의 항소 가능성은 관련 국가의 법에 따라 상이하다.

7.3 출신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령국의 허가를 구하는 인가단체의 신청 서류¹⁸⁴⁾

281. 협약은 인가(accreditation)와 허가(authorisation) 절차에는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양자를 반드시 별개로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관은 자국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으나 출신국이 동 기관의 서비스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협약 제12조에 따른 허가는 수령국과 출신국 간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주어질 수 있다.

282. 수령국의 인가단체가 출신국의 국제입양문제에 개입하기 위하여 자국의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허가를 위해 인가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출신국에서 인가단체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증빙¹⁸⁵⁾
- b) 출신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가단체의 증빙¹⁸⁶⁾
 - i) 건강, 연령, 성별과 장애 등을 포함하는 입양 대상 아동의 프로필
 - ii) 출신국의 아동보호체계
 - iii) 입양절차(법적, 행정적 절차)
 - iv) 입양 기준과 요건
 - v) 아동출생조사를 위한 출신국의 절차
 - vi) 시설에서 아동의 생활여건
 - vii) 출신국 각 기관(시설, 중앙당국, 권한당국)의 연락 정보

183)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8에 대한 노르웨이의 응답을 참조한다.

184) 허가 이슈는 본 지침 내 2장 (일반 인증 원칙), 3장 (일반 정책 고려사항) 및 4장 (인가와 허가 간 관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다.

185)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특정 출신국에서 활동을 승인 받은 다수의 기관들은 규정된 인가 기준: 결의안 No 13/2008/SG, 조항, 14(1)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목록은 웹사이트 < www.commissioneadozioni.it > 내 '법률' (2012년 2월 14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6) 이는 다수의 국가들에 있어서 요건이 되고 있다. 상기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1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viii) 당국과의 관계

ix) 후속 보고서에 관한 요건

x) 대기 기간

c) 출신국의 입양 비용 내역¹⁸⁷⁾

d) 출신국이 허락한 경우, 고아원이나 다른 기관과의 합의서 복사본¹⁸⁸⁾

e) 출신국에서 대리인/협력자와의 협력의 조건. 대리인이나 협력자의 자질, 업무, 보수를 규정해야 한다.¹⁸⁹⁾

f) 출신국의 입양에 관한 규정, 절차와 실제적 정보. 이러한 서류는 출신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복사본은 공증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수령국(인가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7.4 인가단체의 모니터링 및 감독

283. 인가 시스템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각 국가는 인가단체의 모니터링과 감독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284. 협약 제11조 c)항은 권한당국은 최소한의 인가단체 구성, 운영과 재정 상태에 대한 감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감독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85. 각 국가는 기관의 감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모범적 이행을 할 것을 권고 받는다.

a) 정확하고 투명하고 이행 가능한 인가, 승인, 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집행

b)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입양 커뮤니티, 다른 국가, 일반에 효과적으로 전달

c) 국가가 감독 기능을 통제 및 유지

187) Id.

188) 이는 일부 수령국들의 요건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1에 대한 벨기에 (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역), 캐나다 (마니토바, 온타리오 및 퀘벡),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189) 이는 일부 수령국들의 요건이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1에 대한 (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역), 캐나다 (마니토바, 온타리오 및 퀘벡),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9 설문지에 대한 응답 시 이것이 뉴질랜드의 미래 요건이 될 거라고 명시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1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d) 감독기능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의 공급

e) 학대 혹은 착취의 가능성이 큰 입양 과정을 통제 및 감독¹⁹⁰⁾

286. 감독 기능의 일환으로, 그리고 인가단체가 중앙당국을 대신하여 협약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권한당국 또한 필요할 경우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인가단체에 의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가단체에 지원, 트레이닝(1993 헤이그협약 적용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 등) 등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¹⁹¹⁾ 이러한 파트너십은 감독과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4.1 인가단체는 누가 감독하는가?

287. 실제로, 각 기관은 정기적으로 국가의 권한당국에 의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¹⁹²⁾ 따라서 이러한 감독 및 검토를 위해 각 체약국의 권한당국은 적합한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288. 대부분의 경우, 중앙당국이 권한당국으로 지명된다.¹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는 이러한 의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권한당국을 지명할 수 있다.¹⁹⁴⁾

289. 비록 중앙당국이 인가단체의 감독을 책임지는 권한당국으로 지명되지 않았을지라도, 중앙당국은 협약에서 말하는 인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국의 “권한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포괄적인 의무를 여전히 수행하게 된다.¹⁹⁵⁾ 이를 위해 중앙당국은 정기적으로 인가단체와의 실무회의를 주최할 수 있으며, 서로의 기관을 방문하고 인가를 담당하는 당국과 정기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290. 외국 인가단체의 감독에서 출신국 당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외국의 인가단체가 자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출신국은 각 기관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령국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상황적으로 필요하고 출신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허가를 중단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령국과 인가단체에 통지해야 한다.¹⁹⁶⁾

190)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노트 22, 단락 207을 참조한다.

191)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5의 캐나다(퀘벡) 및 이탈리아의 관행을 참조한다.

192)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263-264 및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47, 권고사안 No 4를 참조한다.

193)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8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194) 이는 미국의 이행으로서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8을 참조한다.

195) 협약 제7조

196) 2007 7월 보고서 No 39, ‘수령국 - AABs (II): 중재의 필수 조건 및 감독’을 참조한다. 이 보고서는 웹사이트 <www.iss-ssi.org>, p.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1. 입양부모는 인가단체의 활동과 서비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입양부모로부터 입양절차 동안 인가단체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¹⁹⁷⁾

7.4.2 인가단체의 운영 감독

292. 조직적 또는 행정적인 운영 등 인가단체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각 국가가 감독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권한당국은 인가단체가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93. 협약 제11조에 의하면, 감독 행위에는 인가단체와 감독기관 간의 정례회의,¹⁹⁸⁾ 인가단체 방문,¹⁹⁹⁾ 인가단체의 구성, 운영,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포함 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²⁰⁰⁾ 인가 또는 감독당국은 인가단체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타 요건을 정할 수 있다.²⁰¹⁾

294. 아래와 같은 감독 방법이 권고된다.

▶ A. 보고서

295.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인가단체의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는 2000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되었다.

“권한당국은 인가단체에 승인받은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²⁰²⁾

197) 스위스의 경우 입양부모는 입양 후 인가단체에 대한 평가 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만 한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36에 대한 스위스의 응답을 참조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입양부모는 입양이 완료된 해에 익명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다.

198) 이는 일부 수령국 및 출신국의 이행이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및 스웨덴의 응답 및 질문 No 35에 대한 부르키나 파소의 응답을 참조한다.

199) 이는 일부 수령국들의 이행이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응답 및 질문 No 37에 대한 캐나다 (온타리오 및 퀘벡),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및 스페인의 응답을 참조한다.

200) 이는 일부 수령국의 이행이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201) 미국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인 인가단체의 감독을 실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대면 (발표 또는 미발표) 현장 방문, 연례 공식 보고 및 인증 규정, 협약 및 국가 시행령의 준수 증명에 포함된다. 또는 중앙 정부의 처리 절차 및 인가단체에 관해 가용한 기타 모든 정보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연방법 22 CFR 96부, I 및 J 항을 참조한다. 또한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34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도 참조한다. 여기서 이탈리아는 '입양기관의 업무 및 입양절차를 체계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정교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202)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47, 권고 No 4d를 참조한다.

296. 연례보고서의 작성은 각 국가의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기관의 활동과 재정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분석을 위해 권한당국에 즉각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국가는 보고서 내용과 양식의 기준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297. 좀 더 철저한 감독을 위해 임무 보고, 훈련보고서, 사건보고서, 회계감사와 같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가단체의 보고서는 출신국 당국 등의 다양한 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98.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수령국은 인가단체의 활동과 업무수행에 관한 설문지를 개발할 수 있다.²⁰³⁾ 수령국은 또한 출신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외교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당국은 예비입양부모가 자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동의 비자를 신청할 때 그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²⁰⁴⁾

299. 입양부모의 인가단체 경험에 관한 조사는 수령국과 출신국 모두에게 유익하다. 관련된 두 국가가 협력하도록 한다.

300. 인가단체가 중앙당국이나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기록되어야 한다. 추가로, 감독당국은 그 분석 자료를 기록하고 요약해야 한다. 이 정보는 인가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의 갱신을 요청할 때에 기관의 평가에 필수적이다.

301. 감독당국이 수행한 모든 관찰은 기록되어야 한다. 나쁜 관행 뿐 아니라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도 기록되어야 하며, 또한 인가단체의 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도 포함되어야 한다.²⁰⁵⁾ 덧붙여,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보고서는 필요할 경우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각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선 권고나 변화 요구를 할 수 있다.

▶ B. 조사

302. 일부 국가는 인가단체 사무실의 조사 등 기타 방식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²⁰⁶⁾

203) 인가 문제에 관한 논의 문서, 노트 4, p. 14를 참조한다.

204) 노트 197을 참조한다.

205)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44에 대한 벨기에(플랑드르 지방),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및 스웨덴의 응답에 포함된 관행을 참조한다.

206)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 및 질문 No 37에 대한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303. 조사란 조사자가 인가단체의 사무실에 들어가 기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절차가 반드시 관련 국가의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인가단체의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 조사는 가끔씩만 이루어져야한다.²⁰⁷⁾

304. 조사는 불만접수나 보고서에 따른 조사, 사전예고와 함께 또는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²⁰⁸⁾

305. 조사의 목적은 해당 국가의 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 운영에 불법적인 면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는 반드시 권한당국에 의해 허가되고 임명된 조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조사자의 권한을 결정하는데, 적어도 기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권한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류의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어야한다.

306. 권한당국이 실시하는 조사의 또 다른 형태는 8.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무감사이다.²⁰⁹⁾

▶ C. 인가단체 웹사이트 모니터링

307. 중앙당국(그리고 감독당국-양자가 다를 경우)은 정기적으로 인가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의 질적 수준, 정확성, 전달성을 점검해야 한다.²¹⁰⁾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비용의 구체적인 정보와 인가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출신국에 관한 정보는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308. 외국의 인가단체가 활동하는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인가단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특성에 관한 정보와 입양절차 및 비용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3.8(인터넷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7) 예를 들면 벨기에(플랑드르 지역)의 경우 중앙 정부는 연례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208)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예를 들자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209) 캐나다(마니토바) 및 뉴질랜드의 경우 입양기관들은 재무 감사 보고서 요건과 더불어 중앙 정부가 실시하는 별도의 감사를 받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 (특히, 질문 No 48)에 대한 이들 국가의 응답을 참조한다.

210)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연례 감사의 일환으로 중앙 당국이 입양기관의 웹사이트를 검사하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46에 대한 뉴질랜드의 응답을 참조한다.

▶ D. 항의 할 수 있는 장치

309. 감독체계의 요소 중 하나는 인가단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예비입양부모는 잘못된 정보 제공, 비용 증가, 출신국에서의 지원 부족 등과 같은 인가단체와 관련된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출신국에서 개인이나 당국 또한 항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인가단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신국의 당국은 수령국의 중앙당국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310. 인가단체는 직원, 유급/무급 직원, 조직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²¹¹⁾ 예비입양부모에게 항의 접수 관련 정책과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당국이 인가단체의 운영에 관한 항의를 접수하고 진행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²¹²⁾

311. 예비입양부모가 인가단체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 한다. 이러한 항의는 심각한 체계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 E. 다른 형태의 모니터링 또는 감독

312. 조사와 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권한 당국은 모니터링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단체와의 정기회의를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²¹³⁾ 또한 중앙당국은 17조 c)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입양 서류를 검토할 때 기준을 모니터링 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313. 수령국은 출신국 내의 인가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국제입양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임무 또는 방문을 수행해야 한다.²¹⁴⁾

▶ F. 출신국에 보고

314. 출신국의 당국은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외국의 인가단체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211) 많은 국가에서, 입양절차 수행기관의 불만처리절차에 대한 검토가 인가 결정 과정의 일부로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8에 대한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응답 및 미국 연방규정법 22 CFR 96.24 (b)(3)을 참조한다. 이 법은 “입양기관 또는 개인의 인가 또는 승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가단체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불만신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12) 이러한 이행을 하고 있는 국가의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중앙당국은 인가 조건으로 부과된 불만 처리 절차의 지원을 받는 웹기반 불만접수 등록 부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의 질문 No 34에 대한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213) 상기 노트 198을 참조한다.

214)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5에 대한 덴마크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수행한다.²¹⁵⁾ 중앙당국이 예비입양부모 서류 검토에 개입, 그리고 결연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인가단체 대리인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외국의 인가단체가 출신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 감독은 수령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5. 출신국은 인가단체가 출신국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데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령국으로부터 활동을 허가받은 외국의 인가단체는 출신국에서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출신국이 인가단체의 입양 업무 수행에 대한 허가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나의 기준은 인가단체에 기관의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신국은 적어도 인가단체가 자국의 인가 당국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인가단체에 대한 상호 책임으로, 출신국 내의 당국은 인가단체의 활동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보고해야 한다.²¹⁶⁾ 이는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가의 유지 및 갱신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다. 수령국은 인가나 허가를 갱신해 주기 전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7.4.3 인가단체의 재정상황

316. 인가단체의 모니터링에서 단체의 재정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협약 제11조 a)항에 따라, 비영리 목적은 기관 인가의 기준이 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 감독 강화의 근거가 되며, 협약 제8조와 제32조에서 재정의 감독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부적절한 이득(재정적 이득 또는 물질적 이득)
- 합리적인 비용의 부과
-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가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317. 권한당국은 연례 재정정보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제출이 인가 취득 및 유지의 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8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 볼 것이다.

215)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4에 대한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칠레 및 리투아니아의 응답을 들 수 있다. 칠레의 경우 모든 외국 인가단체들은 국가 내 인가단체를 허가하는 관할 당국이기도 한 칠레 중앙 정부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 정부는 보고서를 분석한 뒤 허가받은 모든 외국 인가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활동 결과를 비교한다.

216)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질문 No 35에 나와 있는 덴마크 및 프랑스 중앙 정부의 관행을 참조한다.

7.4.4 인가단체에 부과될 수 있는 제한

318.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인가단체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a) 인가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수 제한

b) 예비입양부모의 등록 수 제한

i) 기관에 인가가 부여될 때, 출신국에 대한 압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시작 단계에서 예비입양부모 등록 수를 제한하고 입양의 필요와 질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다.²¹⁷⁾

ii) 인가단체는 입양 완료를 위한 합리적인 대기기간을 감내할 수 있는 입양부모들에게만 등록을 허용하여야 한다.²¹⁸⁾

c) 기관이 특정 아동에 대해 웹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²¹⁹⁾

d) 입양 대상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 금지²²⁰⁾

e) 인가단체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출신국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등록 중단

7.4.5 조건 위반의 제재

319. 일단 인가 및 허가를 받으면, 인가단체는 출신국과 수령국의 입양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국제입양이 이루어지기 전 대안적인 양육 등 국제입양절차 관련 법규뿐 아니라 헤이그협약의 원칙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인가 조건과 제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20. 인가 관련 규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각 국가 시행 법령 내에 제재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점진적인 제재 체계의 구축이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각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칙, 경고나 벌금,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관이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인가는

217) 캐나다(퀘벡)는 신설 인가단체와 새로운 국가와 업무를 하는 기존 인가단체를 5개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첫 번째 입양들은 예비입양부모, 기관 및 중앙 정부와의 협력 하에 평가되고 있다.

218) 예를 들면 퀘벡(캐나다)의 국제 입양 인증기관의 윤리 강령을 참조한다. 이는 웹사이트 < www.adoption.gouv.qc.ca > 내 '인가단체' 및 '윤리 강령' (2012년 2월 12일 최종 확인), 9-10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지침의 부속서 3, 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관행을 참조한다.

219)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42에 대한 벨기에(플랑드르 지방), 브라질, 노르웨이 및 스페인의 응답을 참조한다.

220)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41-42에 대한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덴마크의 응답을 참조한다.

중지 또는 철회될 수 있다. 출신국은 외국의 인가단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중지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A. 주의, 벌금 또는 처벌

321. 각 국가는 보고서 미작성(미제출), 업데이트된 정보 미제공, 필요한 변화 거부, 전문성 미흡, 회계감사 거부 등의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벼운 위반일지라도 주의,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공무상 책망(official reproach)”이 제재로 사용되며 인가단체가 공무상 책망을 여러 번 받으면 출신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허가가 철회된다.²²¹⁾ 미국의 경우, 인가단체가 미국의 인가기준을 “충실히 준수(substantial compliance)”하지 않는 경우, 인가당국은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를 취해야 한다. 불리한 조치는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 받지 못한) 개인이 특정 구체적인 교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인가 또는 허가의 중지나 취소, 인가 또는 허가 갱신 거부 등을 포함한다.²²²⁾

322. 출신국은 인가단체와의 관계를 재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령국에서 인가단체에 적용하는 제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B. 인가의 철회나 중지

323. 인가의 철회는 기관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한하여 고려한다.²²³⁾ 불법행위에 따라, 인가단체는 사전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철회는 기관이 출신국이나 수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나 기타 권한당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수령국과 출신국은 인가 또는 허가가 중지되거나 철회된 경우 해당 기관이 관리하던 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324. 권한당국이 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 철회 공지, 철회 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공지 등 엄격한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²²⁴⁾ 인가단체가 관리하던 건들을 처리할 기타기관이나 당국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인가의 철회나 중지 결정에 항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²²⁵⁾

221)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9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222)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9에 대한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223)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9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224) 예를 들면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9에 대한 스페인의 응답을 참조한다. 또한 뉴질랜드법(1997 해외입양법, 세부절 19(1)-(3)) 및 미국연방법 22 CFR 96.76을 참조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인가 감독기구는 인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불리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이행이 필리핀의 국제 입양 기구에 대한 허가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 입양에 관한 시행 규칙 및 규정(RA 8043), 조항 VII을 참조한다.

225) 예를 들면 스웨덴법(해외입양중재법 (No 1997:192), 14절)을 참조한다.

325. 중지는 인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는 기간을 정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²⁶⁾ 그러나 동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인가단체가 권한당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인가는 철회될 수 있다.

326. 인가가 철회되었거나 거절되었던 적이 있는 기관에 대한 신규 인가 신청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가가 부여된다면, 해당 인가단체의 이름은 기능의 위임을 통해 항상 중앙당국과 결부되므로, 중앙당국의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다. 물론 법적요건과 기준을 충족시킨 기관의 인가를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출신국에 더 많은 인가단체가 필요한지 여부는 인가 또는 허가 신청을 검토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²²⁷⁾

327. 출신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출신국은 해당 기관에 부과되었던 제재 등 인가단체의 이력을 살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4.6 인가단체의 변동사항 보고

328. 인가단체는 인가기간 동안 발생한 변화 특히, 인력 및 책임자의 변화를 권한당국에 보고해야 한다.²²⁸⁾

329. 이 같은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목적은 기관이 위임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윤리적 기준이 적합한 자에 의해 지시되고 직원으로 고용되며,” 국제입양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적합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²²⁹⁾

7.5 인가의 갱신

330. 국가는 적절한 검토 없이 인가를 자동 연장하는 관행을 피해야 한다.²³⁰⁾ 자동연장은 인가단체에 대한 감독 및 검토,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²³¹⁾

226)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39에 대한 캐나다(퀘벡) 및 스웨덴의 응답을 참조한다. 이와 유사한 이행은 필리핀의 국제 입양 허가 절차에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 입양에 관한 시행 규칙 및 규정 (RA 8043), 조항 VII을 참조한다.

227) 본 지침의 부속서 3, 3절에 나와 있는 스웨덴의 이행을 참조한다.

228) 이는 다수 수령국들의 요건이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1에 대한 응답들을 참조한다.

229) 조항 11

230)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최초 인가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은 동일하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22에 대한 벨기에(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역),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온타리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231) 상기 입양 비용? 노트 62, 43 페이지를 참조한다.

7.5.1 인가의 갱신 조건

331. 협약 제10조는 인가의 부여와 유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인가 만기 때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재인가 자격을 얻기 위해, 인가단체는 반드시 국제입양에 관한 지속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332. 협약은 권한당국이 인가단체의 검토나 재인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³²⁾

333. 인가 갱신 신청은 현 인가가 만료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한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권한당국은 특정 신청 양식을 정할 수 있다.

334. 인가 갱신을 위한 조건은 최초 인가 신청과 유사하다.²³³⁾ 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권한당국이 요구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335. 인가 갱신 전, 권한당국은 이전의 인가기간 동안 기관의 업무와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모범적 이행, 접수된 불만, 각국의 법과 행정규칙의 준수, 중앙당국과의 관계, 출신국 내 업무 보고와 같은 기관의 과거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²³⁴⁾

7.5.2 허가의 갱신 조건

336. 출신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의 갱신은 인가 갱신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337. 모범적인 이행의 측면에서 수령국은 기존 허가 기간 동안 인가단체 활동의 질적 측면 및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신국 당국과 상의하여야 한다. 이때는 허가 연장의 근거확인을 위해 국제입양 전반 그리고 인가단체 서비스에 대한 출신국의 필요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²³⁵⁾

232)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47, 권고사안 No 4e를 참조한다.

233)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22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234)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6에 대한 캐나다(온타리오) 및 뉴질랜드의 응답을 참조한다.

235) 콜롬비아의 경우 관할 당국(ICBF)은 인가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평가 기준과 관련해 외국 인가단체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35에 대한 콜롬비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7.5.3 인가 갱신의 기간

338. 최초 인가 후, 인가의 갱신은 특정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²³⁶⁾

339. 권한당국은 기관이 모든 갱신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인가 조건 미흡 또는 이전의 인가 기간 동안 채무 불이행 발생 등의 경우 인가기간을 보다 축소하여 갱신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이 인가 철회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기관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권한당국은 인가단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재평가를 할 수 있다.

7.5.4 갱신의 거절

340. 기관이 처음의 인가 요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의 운영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 또는 수령국, 출신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기관이 이미 수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실패한 경우, 인가 갱신 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²³⁷⁾

341. 인가 갱신이 거절된 경우, 권한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서류와 완료된 서류의 관리 및 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²³⁸⁾ 인가 갱신 거절 사유에 따라, 해당 기관은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7.6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중단될 때 서류 처리를 위한 절차

342. 중앙당국과 인가단체는 인가의 만료나 출신국에 의한 허가 철회 등으로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류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343. 진행 중인 서류의 경우, 중앙당국이나 다른 인가단체로 전달된다. 완료된 서류는 공공기록 보관소에 전달된다.

236) 이러한 이행은 다수의 수령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21에 대한 벨기에(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역),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237)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22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238) 이탈리아의 경우 중앙 정부가 이러한 서류의 관리를 맡고 있다.

344. 서비스의 중단과 관련된 문제로 입양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었고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인가단체는 입양부모에게 그 비용을 환불하거나 지불한 비용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345. 수령국이 인가를 취소하거나 인가단체가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중앙당국은 즉시 이를 출신국에 알려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은 두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제8장

국제입양의

비용

346. 국제입양 비용과 그 영향력에 관한 문제는 아동보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347. 본 장에서는 국제입양의 비용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관련 비용의 분류 및 선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²³⁹⁾

348. 본 장은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의 5장(국제입양의 비용 규제)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장에서 비용문제는 인가단체와 관련된 것이며 인가단체가 어떻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비영리목적의 원칙과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금지의 일반 원칙은 2.3.2와 2.3.3에서 논의하였다.

8.1 비용에 관한 문제

349. 때때로 아동할당에 대한 수령국의 압력,²⁴⁰⁾ 특정 인가단체의 영향력, 예비입양부모의 수 증가로 인해 일부 인가단체는 대기 중인 다른 예비입양부모보다 먼저 아동배치를 받거나 보다 선호하는 아동을 배치받기 위해 입양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새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제적인 유인책의 제공 등의 관행은 국가 간 그리고 인가단체 간 불건전 경쟁을 유발한다. 이러한 관행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실 상 아동은 이러한 경쟁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경쟁 문제는 1993년 유러덱트(EurAdopt)에서 국제입양을 위한 윤리 규정을 채택할 때 확인되었다. 규정 제25조는 “입양 업무는 아동에 대한 경쟁 또는 접촉 경쟁을 피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입양에 대한 북유럽식 접근(Nordic Approach to international adoption)”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입양에 대한 북유럽식 접근”은 북유럽 입양이사회가 채택한 윤리와 책임에 기반을 둔 국제입양절차 확립을 위해 합의된 이행 목록이다.²⁴¹⁾

350. 국제사회는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경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솔한 접근이 없는 이상 모든 이들이 이러한 흥정이 계속되게 하는 공모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²⁴²⁾

239) 이 장의 최초 아이디어는 HEC Montréal 졸업생이자 퀘벡 중앙 정부의 컨설턴트 겸 MBA 출신인 Claudel Tchokonté에 의해 작성되었다. 리투아니아는 출신국으로서 이 모델을 따르기 위해 자국 법을 개정할 의사를 밝혔다.

240) 압력의 예는 12.3.1 장에 나와 있다.

241) 상기 노트 29의 유러덱트(EurAdopt) 윤리 규정 및 북유럽의 접근법을 참조한다.

242)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의 질문 No 10(8)에 대한 캐나다의 응답을 참조한다.

8.1.1 수수료와 비용의 제한

351. 국가는 수수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 어떤 국가는 수수료 정책에 “개발원조 성금”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어떤 국가는 이러한 성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은 국가 간 그리고 인가단체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은 아동입양의 불법적 절차, 아동 경매와 같은 아동 확보를 위한 혐오스러운 시도를 야기 할 수 있다. 한 수령국은 “더 많은 돈이 연관될수록 입양적합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줄어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352. 많은 출신국들은 인가단체가 부과하는 비용에 대한 수령국의 통제가 미흡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출신국은 출신국 중앙당국이 무료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인가단체가 비용을 부과하였음을 보고하였다.²⁴³⁾

353. 출신국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은 서비스 실제 비용(고정비용 및 중앙당국 및 기타 공공기관의 비용)과 다른 기관의 예상 서비스 비용을 공개(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중앙당국 및 인가단체에 통지)하는 것이다.²⁴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이 표시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가단체는 각 출신국 별 비용을 포함하는 실제 비용과 수수료를 공개하여야 한다.²⁴⁵⁾

354. 출신국은 수령국의 정상적인 비용 청구 이행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모른다고 말한다. 수령국과 출신국은 허가를 부여하기 전, 실제 비용 정보 교환을 통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널리 공개해야 한다.

355. 수령국(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은 예비입양부모에게 비용에 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위해 웹사이트에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출신국을 도울 수 있다. 특히, 특정 국가로부터 입양하는데 드는 총 비용을 단순히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 비용 내역을 볼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356. 비용분석은 다음을 반영한다.

- ▶ 수령국에서의 의무적인 비용
 - 예비입양부모 준비과정

243) 한 경우에 있어서 인가단체는 실제로 중앙 정부가 수행한 입양 주선에 대해 미화 3,000달러를 부과했다. 또 다른 인가단체는 수행되지도 않은 협력 사업에 대해 미화 7,000달러를 부과했다. 출신국이 수령국 중앙 정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은 인가단체가 독립적이며 재량권을 갖고 비용을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44) 본 지침의 부속서 2, 1절에 나와 있는 이행을 참조한다.

245)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49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 법적 수수료 또는 서류
 - 의료비 또는 서류
 - 기타 서비스
 - 입양사후 기능
- ▶ 출신국에서의 의무적인 비용
 - 행정 비용
 - 법률 비용
 - 아동 양육 (결연 후 아동 보호)

357. 수령국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역할과 서비스는 5.2.2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용의 일부는 특정 국가에서의 비용 산출을 위해 본 장의 표 1에 정리하였다.

8.2 협약의무

358. 체약국과 중앙당국은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국제입양 비용을 규제할 책임과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²⁴⁶⁾ 국제입양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특히, 인가단체는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359. 협약 제32조는 국제입양과 관련된 전문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입양 관련 기관을 언급하고 있다.²⁴⁷⁾

360. 협약 제32조에 따르면, 국제입양에서 인가단체가 요구하는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높은 비용을 책정할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 비용은 입양 대상 아동의 출신국과 수령국에서 취해진 조치와 연관되어 있다.

361. 본 장에서는 국가 간 협력, 인가단체 간 협력, 국제입양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모범적 이행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은 출신국과 수령국에서 국제입양 비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를 선호한다. 또한 본 장은 여러 민감한 상황 및 남용 사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비용의 다양한 종류 및 비용 설정 방법을 보여주는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246) 협약 제8조

247)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 관한 2.3.3 장의 논의를 참조한다.

8.3 인가단체와 관련된 비용의 종류

362. 국제입양과 관련된 여러 비용과 예비입양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비용을 분류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예비입양부모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도 있고, 인가단체의 관점에서 분류해 볼 수도 있다.

363. 예비입양부모의 관점에서 비용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범주는 입양의 직접적인 비용이며 두 번째 범주는 입양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이다.

364. 첫 번째 범주는 입양서비스를 위해 인가단체나 공공당국에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한다. (1) 수령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2) 출신국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의 비용(아동의 의료기록 및 사회/가정 환경 보고서 비용 등) (3) 입양부모의 출신국 방문과 숙박 비용 (4) 입양 완료 후 비용.²⁴⁸⁾ 각 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부속서 A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입양절차 수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65. 두 번째 범주는 출신국에서의 아동복지 및 보호서비스 그리고 협력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입양부모에 의한 성금과 기부금에 관련되어 있다.²⁴⁹⁾ 예비입양부모가 지급하는 이러한 범주의 비용은 입양비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성금이며, 이는 9장(성금과 기부금)에서 논의할 것이다.

366. 인가단체의 관점에서 위에 언급된 범주의 비용은 반드시 인가단체와 예비입양부모가 지불한 수수료로 충당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1) 입양기관의 기본 운영비 (2) 출신국 입양절차 수행기관의 대리인과 협력자에 대한 수수료 (3) 기타 서비스 비용 (입양절차 수행기관의 직원이 아닌 전문가 및 협력자에 대한 수수료) (4) 업무를 위해 수령국과 출신국을 방문하는 인가단체 직원의 출장비용, 출신국의 대리인 및 기타 파트너의 수령국 방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본 장의 부속서 B, 표1을 참고한다.

367. 본 장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때,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각 인가단체를 위해 특정국가에서의 총 입양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은 특정 국가에서 인가단체가 국제입양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입양 건이 완료되기 위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합계이다. 인가단체는 다음의 내용을 명확히 중앙당국에 알려야 한다.

248) 이러한 구분은 퀘벡(캐나다) 중앙 정부의 모델에 기반을 둔 것이다.

249)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제 6장(국가 아동 관리 상황 및 국가 입양)을 참조한다.

a) 고정비용(간접비)-진행하는 건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임금, 임대료, 보험비 등

b) 변동비용-번역비용 등 건수에 직결되는 비용

368. 총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권한당국은 인가단체가 부과한 비용이 특정 국가에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장 부속서 B에 비용에 대한 실례가 나와 있다.

8.3.1 인가단체의 기본 운영비

369. 운영비는 인가단체의 운영상의 간접비나 고정비이다. 다시 말해 관리자, 전문직원과 행정직원의 임금, 임대료, 보험료, 사무실 장비와 같은 활동의 규모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인가단체가 출신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신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370. 인가단체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기반을 둔 건전한 관리이행을 따라야 한다. 인가단체가 활동하는 국가의 수나 규모에 따라 운영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371. 중앙당국 또는 감독당국은 해당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인가단체가 재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372. 인가단체는 자체 자금조달을 위해 4가지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이탈리아 모델을 예로 살펴보면²⁵⁰⁾ (1) 예비입양부모에게 요구되는 서류 관련 비용 (2) 인가단체 회원의 연회비²⁵¹⁾ (3) 보조금²⁵²⁾ (4) 인가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다.²⁵³⁾ 3.7장(인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참조한다.

373.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예비입양부모가 지불한 비용으로 인가단체의 운영비용과 기타 필요한 비용의 충당이 가능하여야 한다. 예비입양부모에게 요구되는 비용은 운영비, 재정적 의무, 보조금 등 이러한 모든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앙당국은 요구되는 금액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50)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47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251) 일부 인가단체들은 입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예비입양부모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회원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회원으로 남아 있다.

252) 상기 노트 81을 참조한다.

253) 예를 들면 Terre des hommes는 아동이 가정에 입양된 이후 관리비 명목으로 성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금은 가정의 소득에 비례하며 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다.

8.3.2 출신국 인가단체의 대리인과 협력자의 보수

374. 협약 제32조의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의 금지는 대리인과 협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비용에 관한 규칙 역시 대리인과 협력자를 포함한 입양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의 의미에 대한 모범이행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적인 윤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75. 유러덱트(EurAdopt) 윤리규정 제20조에서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다.

“기관은 기관의 대리인과 협력자의 업무방식에 책임져야 한다. 입양을 위해 배치된 아동의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리인과 협력자는 사례 수를 근거로 하여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관이 대리인과 협력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기간 뿐 아니라 해당 국가 생활비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²⁵⁴⁾

376. 모범적 이행의 측면에서 인가단체의 대리인과 협력자는 월급으로 보수를 받는 직원, 그리고 해당 인가단체의 급여대상자로 자격을 제대로 갖춘 구성원이어야 하며, 건수를 기반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입양 건수가 적어 서비스 제공이 매우 불규칙한 경우라면, 대리인에 대한 보상비에 입양 배치 아동 한 명 당 제공되는 인센티브나 사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실한 경우, 대리에 대한 보상비를 건 수 기반으로 책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377. 보수의 형태는 수행하는 업무, 요구되는 기술, 출신국에 있는 유사한 포지션에 대한 현지 고용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합의된 연봉이어야 한다.²⁵⁵⁾ 그러므로 인가단체는 이러한 포지션의 직업에 대한 임금수준, 사회보장연금, 추가적인 보상의 수준, 출장비용(호텔, 교통, 식사), 환급정책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378. 수령국의 인가단체는 대리인에게 현지 수준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대리인이 다른 인가단체에서 일하며 상이한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대리인은 보수가 많은 기관을 선호할 것이다. 대리인을 선택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동일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인가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절한 수수료 수준을 확립하고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인가단체와 일하고 있음을 또는 앞으로 일할 의사가 있음을

254) EurAdopt 윤리 규정 노트 29를 참조한다.

255) 예를 들면 특정 국가 내 캐나다 대사관 및 기타 외교 기관의 현지 직원에 대한 보수 책정 방법은 우선적으로 총원된 직위의 분류 및 그런 다음 공공 및 민간 직원이 제공한 급여, 휴가 및 복리 혜택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 비교하는 전문 회사가 실시한 급여 질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현지의 비교가능 데이터는 해당 국가와 관련해서 직위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밝혀야 한다.

379. 국제입양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부패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역 표준임금보다 조금 더 높아야 한다. 협약 체결국은 조금 더 높은 임금의 합리적인 비율에 동의해야 한다.

380. 월급 기반의 보수는 아동배치에 압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한다. 또한 월급기반의 보수는 “급행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책에 대한 우려 없이 대기자 목록이 올바르게 준수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381. 수령국과 출신국 내의 당국은 대리인과 협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준수는 해당 인가단체가 인가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8.3.3 기타 서비스 비용 (인가단체에 고용되지 않은 협력자 및 전문가 비용)과 출장비

382. 서비스 비용은 수령국과 출신국 내의 전문가(변호사, 공증인, 의사)와 기타 협력자(운전자, 통역가)의 수수료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직원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방문비용을 포함한다.

383. 독점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 인가단체는 각 서비스 당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 협력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비용을 비교하고 서비스 별로 최고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와의 협력 계약은 경우에 따라 인가의 신청 또는 갱신 시, 또는 허가 신청 시에 수령국과 출신국의 중앙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인가단체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384. 수수료의 수준은 유사한 형태 및 업무량을 요하는 현지 절차 및 서비스와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한다.²⁵⁶⁾ 인도주의 단체, 국제 비영리기구, 국내 전문기관은 각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385. 서비스 비용 산정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입양 과정에 법률자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를 대리하는 법률자문은 동일한 입양절차에서 인가단체나 아동을 대리할 수 없다. 법률자문과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에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아야 한다.

256) 예를 들면 상기 유러덱트(EurAdopt) 윤리 규정 노트 29, 조항 21 “전문가가 기관에 부과하는 보수는 수행한 업무에 비례해야 한다”를 참조한다.

386. 인가단체는 병원 검진 또는 치료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수수료는 현지 환자의 수수료와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기준에 따라 외국어 능통이나 국제기준에 따른 서면 증명서 작성 등 특정 요구가 있는 경우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387. 번역 측면에서는, 수령국과 출신국의 법과 입양절차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저렴하고 양질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서류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88. 대리인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수령국과 출신국의 당국이 서로 다른 전문적 서비스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범위를 정하기 위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 할 것을 권고한다.

8.4 비용의 투명성

389.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서비스 비용이 정해져서 미리 예비입양부모에게 공지되어야 한다.²⁵⁷⁾ 그러므로 각 인가단체는 업무 진행을 인가 받고 활동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의 입양비용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²⁵⁸⁾ 이를 위해 본 장 부속서 B에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예비입양부모는 도움을 받을 인가단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에 기반을 둔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90. 또한 각 인가단체는 수령국과 출신국 내에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²⁵⁹⁾ 이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입찰의 과정이 아닌 서비스의 질에 바탕을 둔 결정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이는 중앙당국이 인가단체의 업무가 국제입양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391. 각국의 중앙당국은 자국의 권한당국이 수행하는 서류절차의 비용을 포함한 실제 입양비용과 비용 변동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각 인가단체는 국가별 입양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좋은 예로, 콜롬비아는²⁶⁰⁾ 중앙당국 홈페이지에 외국의 인가단체가

257) 이러한 원칙은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47, 실제 입양 비용과 연관이 없는 성금과 관련된 권고 사안 No 10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의 질문 No 48 및 49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보수는 인가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예,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미국) 아니면 관할 당국의 승인 하에 정해진다(예,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스페인 및 스위스). 여타 국가들의 경우 보수는 인가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관할 당국이 정하고 있다(예, 캐나다(마니토바) 및 이탈리아).

258)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노트 47, 권고 사안 No 8을 참조한다. 또한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0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도 참조한다.

259) 이러한 세부 사항은 일부 국가들이 인가단체로 하여금 예비입양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계약 또는 합의에 명시될 수 있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14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260)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49에 대한 콜롬비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이러한 이행은 본 지침의 부속서 2, 1절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제출한 자세한 비용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392. 출신국 내 외국의 인가단체가 지불한 수수료와 성금(contribution)에 대한 합의서의 사본은 출신국과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93. 예비입양부모는 국제입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을 자세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출신국의 아동보호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을 위한 성금이나 기부금은 반드시 국제입양비용과 구분되어야 한다.²⁶¹⁾ 비용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인가단체나 그들의 대리인 또는 협력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청자 가족의 이름으로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394. 비용의 투명성 실현 및 유지는 국가 간 협력의 중요한 목표이다. 출신국은 일부 인가단체가 예비입양부모에게 출신국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출신국과 수령국에서 비용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기를 원한다.²⁶²⁾ 예비입양부모 또한 본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했는지, 과장된 가격을 지불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비용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8.5 비용의 지불

395. 예비입양부모는 가능한 한 입양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입양기관을 통해 지불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는 제 3자에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²⁶³⁾ 이러한 접근은 입양을 통해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착취로부터 예비입양부모를 보호 할 수 있다. 입양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예비입양부모가 인가단체에 지불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출신국 내 대리인, 법조인, 통역사의 보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모든 비용이 인가단체에 의해 출신국에 지불되어야 하며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을 방문할 때 지불해서는 안 된다.

396. 예비입양부모는 서비스 비용을 출신국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반드시 공지 받아야 한다. 만약 입양절차와 관련한 추가 비용 지불을 요청 받았다면, 즉각 그 사실을 수령국의 인가단체와 본인의 인가단체의 법적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출신국의

261) 1993년 5월 29일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실질적 운영에 관한 제 3차 특별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결론 및 권고사안을 참조한다 (2010년 6월 17-25일). 이 보고서는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 (이하 '2010 특별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사안') 권고사안 No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2)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5에 대한 부르키나파소 및 콜롬비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263) 예를 들면 온타리오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탁 계정 시스템을 참조한다. 이는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1에 대한 캐나다 (온타리오)의 응답에 설명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퀘벡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중앙당국 뿐 아니라 수령국의 중앙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397.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비용을 추구하여야 한다. 인가단체를 통해 모든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제공될 변호사와 공증인 비용, 통역비, 방문비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398. 인가단체와 예비입양부모 간 또는 인가단체와 국내/외국의 서비스제공자 간의 자금의 이동은 항상 추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99. 입양 과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해 항상 증빙이 있어야 한다. 인가단체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은 이러한 자료의 보관을 허용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등을 위해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여야 한다.

8.6 합리적인 비용

400.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각 인가단체는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전략을 구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정교한 정도에 있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수반되는 비용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중앙당국은 인가단체가 요구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책임을 가진다.

401. 합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의 질과 범위, 사례의 복잡성, 동일한 출신국의 유사한 기관이 제시하는 비용과의 비교 등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당국은 자국 내 비용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러한 정보를 자국의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수령국의 경우²⁶⁴⁾ 아동의 출신국에 상관없이 모든 예비입양부모에게 동일한 비용을 적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가단체 간의 연대 원칙이다. 이는 출신국 선택이 수령국에서 부과되는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출신국별로 비용은 다양할 수 있다).

402. 무엇이 합리적인 비용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자국 내 서비스 비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입양부모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중앙당국은 출신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 정보를 출신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허가신청 시 중앙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인가단체에 달려 있다.

264) 노르웨이

- 출신국 내 국제입양 비용
- 현지직원과 외국인 직원의 임금 (통상적인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연휴 및 복지 수당 등의 보조금을 포함)
- 국내입양에서도 요구되는 서비스와 유사하게 출신국에서 제공된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403. 몇몇 출신국은 자국에서 “입양은 비용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서도 비용의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없으며,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예비입양부모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²⁶⁵⁾ 입양 업무는 전문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서비스이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예비입양부모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당국과 공공당국은 그들의 서비스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비입양부모의 개인적인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무료 서비스가 될 수 없다.

404. 인가단체가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가단체가 청구한 비용과 발생한 비용의 차액을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경제적인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비축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당국은 이러한 비용의 차이가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합리적 이윤 산출에 대한 내용은 부속서 B를 참조). 인가단체의 법적 형태가 비영리 기관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인가단체가 재정적 안정과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비축하는 것이 협약 제11조의 “인가단체는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405. 출신국에서 제공되는 특정 전문서비스의 경우 일반 비즈니스 영역에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수수료는 입양의 개별적인 특성과 일관성 있게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가단체는 비교 가능한 출신국 내의 유사한 서비스 비용에 관한 정보를 중앙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406. 국제입양에서 비용을 제한하는 접근법 중 하나는 (가능하다면) 중앙당국이 인가단체와 협력하여 수령국과 출신국의 거시경제지표(GDP, 고용계층의 평균임금 등)에 따라 비용의 각 항목의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의 총합을 설정하는 것이다.²⁶⁶⁾ 인가 또는 허가의 신청 당시, 인가단체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입양 비용의 제시안에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였음을 보여줄 수

265) 예를 들면 브라질, 포르투갈, 태국 및 우루과이가 포함된다. 태국의 경우 입양부모들은 단지 아동의 여권 및 의료비만 지불하고 있다.

266) 캐나다 (마니토바)의 경우 관할 당국은 입양 인가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 및 보수의 한도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한도는 입양 규정 19/99의 표 A에 명시되어 있다.

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이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07.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출신국과 인가단체에서 비용에 관한 정보 입수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 지침을 설정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²⁶⁷⁾ 예비입양부모는 인가단체에서 부과한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지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범 이행은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처리 비용의 표준화 및 합리적 비용 설정을 위해 동일한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8.7 기관의 책임과 비용의 통제

408. 인가단체의 책임성(재정적 활동에 대한 책임을 포함)은 중앙당국에 의무수행 방식, 발생한 문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를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에 반영될 수 있다. 2.3.5 인가단체의 책임원칙 그리고 7.4(인가단체 모니터링 및 감독)에서는 인가단체가 인가 조건을 위반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09. 연례보고서는 이러한 공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고서에는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주요한 변화와 이례적인 행사와 같은 최근 운영 년도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²⁶⁸⁾ 또한 재무제표에는 수령국뿐 아니라 출신국에서 이루어지는 인가단체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410. 책임의 측면에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검토는 회계 및 재무 감사를 포함하여야 한다.²⁶⁹⁾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국제입양 수행을 위한 기관의 실제적인 재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감독 활동의 일환으로 인가단체의 정기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²⁷⁰⁾

411. 비용-편익분석을 기초로 하여, 회계감사 비용은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가단체의 수입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 중앙당국은 미감사

267) 이탈리아의 경우 출신국에서 발생한 비용 (절차비 및 운영비 포함)은 관련 인가단체와 맺은 합의 및 추가 비용 확인 후 중앙 정부가 정한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지역)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가능한 한 출신국 내 관련 당국과의 공동 합의에 의해 정해지거나 해당 국가와의 입양 계약 전 현지 파트너가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 정해진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47 및 48을 각각 참조한다.

268) 본 지침의 6.6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기관의 재무 보고서 사본은 매년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단락 265를 참조한다. 독립적 감사에 대한 재무 보고서 제출 요건과 관련해서는 상기 노트 169의 예를 참조한다. 또한 본 지침의 7.4.3 장을 참조한다.

269) 이는 인가단체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정확성, 규칙성, 준수성 및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인가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독립적인 전문 '감사'에 의해 수행된다.

270) 중앙 정부들의 감사 실시 이행의 예와 관련해서는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1에 대한 뉴질랜드, No 34에 대한 독일, No 51에 대한 덴마크, 룩셈부르크 및 미국의 응답을 각각 참조한다. 여타 국가들의 경우 공인 감사(상기 노트 168의 예 참조) 및 '독립적' 감사에 의해 감사를 받는 것은 인가단체의 책임이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1에 대한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마니토바 및 퀘벡)의 응답을 참조한다).

재무제표의 제출을 인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무제표는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412. 회계감사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당국이나 감독당국이 지명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독립성은 회계감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에 감사의 실시를 공지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회계감사는 운영의 규모나 수입, 업무수행의 허가를 받은 출신국의 숫자 등과 같은 특정 요소에 따라 인가기간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수행되어야 한다.

413. 그러므로 중앙당국은 모든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회계 양식을²⁷¹⁾ 제공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장부, 재무정보의 동일한 처리 방식을 제시하여 다른 기관, 다른 출신국, 다른 년도와 비교할 경우 유용하도록 한다.²⁷²⁾

부속서 8A : 국제입양 비용의 분류 제안

▶ 분류 1 - 수령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 분류 2 - 출신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 분류 3 - 방문비용

▶ 분류 4 - 입양사후 비용

▶ 분류 1 - 수령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류 1의 비용은 가입비(회비), 등록비, 행정 절차 수수료, 법적 비용, 심리평가 비용(가정조사 보고서), 훈련/교육비, 다양한 이민 절차와 증명서 비용과 같은 행정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가단체 서비스 비용

· 기관 구성원에 대한 비용

271) 회계 형식은 일단의 가치 평가 및 기록/계정 관리 규정이자이다. 회계는 수작업 또는 컴퓨터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72) 이탈리아의 경우 인가단체들은 현행 법률 요건 및 다양한 소관 부처들이 공포하는 지침 및 회람에 따라서 계정을 작성해야만 한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1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 입양사례절차 개시 비용
- 프로그램 개발 비용
- 행정, 서류절차 비용
- 의사소통 비용
- 준비, 교육, 훈련 프로그램
- 예비입양부모의 사례파일 번역 비용
- 기밀보장과 파일보관을 포함하는 기록유지 비용

(2) 제 3자 서비스 비용

- 사례파일의 증명서 비용
- 법적 수수료
- 입양적합성판단을 위한 심리사회 영역 평가 준비 비용
- 공증인 수수료
- 서류의 공인 비용
- 이민 절차 비용
- 증명서 발급(의료, 출생, 혼인, 범죄기록) 비용
- 여권발급 비용
- 통역비
- 건강검진비

▶ 분류 2 - 출신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류 2의 비용은 예비입양부모의 숙박과 교통비를 제외한 출신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용은 또한 인가단체가 부과할 수 있다. 분류 2에 해당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과 협력 비용
- 법적 서비스(공증, 변호사, 소송 비용)
- 아동의 의료기록을 위한 의료 전문가 수수료
- 아동의 건강검진 비용
- 통역비용
- 아동양육 비용

- 기록 업데이트 비용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성금(contribution)이나 기부금(donation): 비록 실제입양 비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용은 보통 출신국이나 인가단체가 부과한다. 예비입양부모는 아동보호 관련 사설/공공 기관이나 고아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젝트에 성금이나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분류 3 - 방문비용

분류 3의 비용은 예비입양부모의 출신국 방문과 관련된 비용이다. 분류 3에 해당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귀국 항공 요금
- 숙박요금 : 호텔과 식사
- 아동을 위한 편도 요금
- 통역 비용과 지침 비용
- 출신국 내 이동비용

▶ 분류 4 - 입양사후 비용

분류 4의 비용은 입양 확정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입양이 완료될 때 발생한다. 분류 4에 해당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입양결정 판결의 번역 비용
- 입양 사후 보고서
- 출신국을 위한 입양사후 보고서 번역 비용
- 보고서 증명과 보고서의 출신국 전달 비용
- 협약 외 입양의 경우, 외국 판결 인정 동의와 관련된 법적 비용²⁷³⁾

273) 헤이그협약 입양과 관련해서 입양 결정을 인정하기 위한 추가적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협약 제23조에 나와 있듯이 인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부속서 8B : 입양 실제 비용의 표본 산출과 예비입양부모에게 부과되는 비용 설정

입양 과정에서 인가단체는 두 가지 다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 **직접비:** 다시 말해, 입양사례 진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을 말한다.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제공된 다양한 전문서비스 수수료, 협력자의 임금과 같은 입양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다양하며, 다루는 입양사례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 **간접비:** 일 년 동안 수행된 모든 입양사례 간에 공유되는 비용이다. 이는 보통 구조적인 비용과 이자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고정비이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활동의 규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규모의 활동이 커다란 부지와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소규모의 활동은 임대비용 절감과 적은 부지를 선택함으로써 특정 비용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다음 표에 제시된 특정원가법을 이용하여 입양 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발생한 모든 직접비와 간접비(변동비용과 간접비)를 구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인가단체는 아래의 표(표 1)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단 실제 비용이 결정되면, 인가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비용의 하한선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가단체는 적립금 마련 및 사업생존성 유지를 감안하여 예비입양부모에게 부과할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총비용은 서비스 변동비용을 감안하고, 실제 비용에 기관의 장기적인 생존유지를 위한 합리적 이윤(추가 이윤)을 더하여 책정한다.

그러면 중앙당국은 인가단체가 취합한 비용과 추가이윤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인가단체는 기관의 인프라(예. 간접비)를 지원하고 적립금을 비축하기에 충분한 변동비용에 대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가격을 추천해야한다.

$$\text{비용}^{274)} = \text{실제 비용가} + \text{추가이윤} = \text{총비용} * (1 + \% \text{추가이윤})$$

274) 본 부속서에의 표 2에 나와 있는 비용 산정 예를 참조한다.

[표 1 : 가상데이터를 이용한 국제입양 총 비용 계산]

(단위: USD)

	국가 1	국가 2	국가 3	행정	총비용
변동 원가					
수령국의 법적 비용	500	500	500		
출신국의 법적 비용	1,500	1,500	1,500		
수령국의 전문서비스 비용	3,500	3,500	3,500		
출신국의 전문서비스 비용	2,000	2,000	2,000		
수령국의 서류번역 비용	500	300	700		
출신국의 서류번역 비용		100			
출신국의 의사소통(통신) 비용	200	900	200		
수령국의 의사소통(통신) 비용	2,300	6,000	300		
방문비용	4,000	4,500	4,000		
이민비용	400	400	400		
여권비용	170	170	170		
증명서 비용(결혼/출생)	110	110	110		
기록갱신비용	200				
아동유지(보호)비용			1,500		
최종 비용	500	1,000	600		
입양 사후 비용	180	280	100		
변동단위원가의 총액	16,360	20,660	15,480		

활동의 규모(사례 수)	12	35	20		67
소 계	196,320	723,100	309,600		1,229,020
	국가 1	국가 2	국가 3	행정	총비용
개별비					
직접적인 인건비	24,000	30,000	28,000		82,000
에스코트 비용			5,000		5,000
출신국의 허가비용		700			700
간접적인 인건비				140,000	140,000
기 타				5,000	5,000
소 계	24,000	30,700	33,000	145,000	232,700
기타 공유 간접비					
임 대					12,000
전기료					600
보 험					1,000
교 통					4,500
홍 보					2,500
통 신					3,850
감가상각					500
소 계					24,950
총비용	220,320	753,800	342,600	145,000	1,486,670
입양 건당 비용	18,360	21,537	17,130		22,189

[표 2 : 예비입양부모에게 부과되는 입양비용(미국 달러기준)과 다양한 마진의 계산]

이 경우 마진은 15%로 설정됨.

	국가 1	국가 2	국가 3	행정	총비용
실제 입양 비용	18,360	21,537	17,130		
추가이윤	15%	15%	15%		
예비입양부모에게 부과되는 총 비용	21,114	24,768	19,700		
규 모	12	35	20		67
수익 : 총비용 X 규모	253,368	866,870	393,990		1,514,228
변동비용의 총액	196,320	723,100	309,600		1,229,020
변동비용의 이윤	57,048	143,770	84,390		285,208
개별비	24,000	30,700	33,000	145,000	232,700
순마진	33,048	113,070	51,390	-145,000	52,508
기타 공유 간접비					24,950
순이익					27,558

그러므로 추가이윤을 15%로 설정하였을 때, 인가단체는 \$285,208의 변동원가의 이윤 수익을 창출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합리적인 간접비(\$232,700+\$24,950)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으며 기관의 유지를 보장하는 \$27,558의 수익을 발생시킨다.

$$\text{변동비용의 이윤} = \text{변동소득} - \text{변동비용} = (\text{양} \times \text{비용}) - \text{변동비용}$$

성금과 기부금

9.1 국제입양 목적의 상기

414. 본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동이 그의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외국에서 아동을 위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국제입양의 목적을 상기하는 것은 유용하다.

415. 그러므로 윤리적인 국제입양을 위해서는 아동의 국제입양을 고려하기 전 먼저 협약 제4조 b)항의 보충성의 원칙이 출신국에서 적용되고 아동의 입양적합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416. 보충성의 원칙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출신국은 반드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령국은 출신국의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가단체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동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10장과 아래 420번에 언급된 “수령국”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2000년 특별위원회 권고를 참조).

417. 인가단체는 출신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구축을 돕기 위해 일상적으로 예비입양부모에게 성금이나 기부금을 받거나 요구한다. 성금이나 기부금은 출신국이 보충성의 원칙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금이 국제입양에 아동을 제공하는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예비입양부모는 종종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아동을 배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는 출신국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418. 또한 아동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외부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원하는 출신국은 국제입양을 위한 아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는 414번에서 명시된바와 같이 국제입양의 목적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9.2 특별위원회의 권고

419. 2005년 수령국, 출신국, 국제기구 전문가가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헤이그에 모여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출신국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령국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에 합의하였다.

420. 전문가들은 2000년도에 작성된 다음의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수령국이 아동유기방지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출신국의 국내 아동보호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국제입양절차의 청렴성을 위협하거나 국제입양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의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을 국제입양에 배치하는 결정이 지급 금액이나 성금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급 금액이나 성금은 입양가능성, 입양 대상 아동의 나이, 건강 또는 기타 특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²⁷⁵⁾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 과정에 관련된 기관에 기부를 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기부가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²⁷⁶⁾

421. 출신국은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며 적절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NGO 파트너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조직하고 자금을 대고 전달하는 당사자가 인가단체인 경우가 많다. 인가단체를 통한 권고 이행이 중단되는 경우 수령국의 정부지원기구는 직접적 또는 비정부 기관 및 기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422. 2010년, 특별위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협력 사업에 관한 더욱 강력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모든 경우에 있어 국제입양이 성금이나 기부금, 개발원조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²⁷⁷⁾

423.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갖는 견해의 다양성에 따른 문제의 복합성은 9.7에서 설명하였다.

9.3 성금과 기부금

424. 때때로 국제입양절차에서 제공된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비입양부모가

275)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47, 권고사안 No 10을 참조한다.

276) Ibid., 권고사안 No 9

277) 상기 2010 특별 위원회 노트 261, 권고사안 No. 14의 결론 및 권고사안을 참조한다. 본 지침의 목적 상 ‘개발 원조’ 및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개발 원조는 함은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의 불평등을 줄이고 자급자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 기술 지원 또는 생필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 원조는 대개 피지원 국가들의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공식 경로를 통해 제공되며 공식 승인을 받고 있다. 개발 원조는 정부 원조 기관에 의해 직접 제공되거나 아니면 국제 기구, NGO, 재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국제 입양 이슈와 관련해서 이러한 원조는 주로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력 사업: 이 용어는 국제 입양 맥락에서 출신국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주로 이해당사자들의 역량 구축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래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타 형태의 협력 사업을 훼손하는 일 없이 본 지침에서 논의하는 협력 사업은 개발 원조의 범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가단체에 약간의 금액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a) 출신국이 요구하는 성금으로 의무적이며, 입양시스템 또는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다. 금액은 출신국이 정하며, 이러한 성금은 출신국의 당국 또는 출신국이 위임한 기타 당사자가 관리한다.
- b) 인가단체가 예비입양부모에게 요구하는 성금으로 출신국의 특정 기관 (예. 아동에 대한 유지비) 또는 인가단체의 협력 사업을 위한 것일 수 있다. 협력 사업은 출신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금액은 인가단체 또는 그 협력자가 정한다. 이러한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인가단체는 ‘권장’ 차원에서 성금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성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입양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예비입양부모에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
- c) 예비입양부모 또는 인가단체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시 지급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 이러한 기부는 주로 입양 대상 아동과 연결된 고아원이나 시설에 이루어진다. 또한 인가단체가 해당 출신국의 특정 기금에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윤리적인 문제로 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대신 공식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시설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이 선호된다.

425. 투명성의 관점에서 볼 경우, 성금은 인가단체의 공개된 수수료 목록에 있는 실제 입양비용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²⁷⁸⁾

426. 출신국이 요구하는 의무적인 성금의 경우, 그 금액은 고정액이며 출신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수령국에게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 아동보호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이 일반 경비로 지출되지 않기 위해 출신국에서 엄격하게 규정된 절차가 필요하다.

427. 출신국이 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한 유지(보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고아원이나 기관에서 정한 비용이 아닌 출신국의 중앙당국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이는 입양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청과 뇌물수수를 예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반대로 더 많은 아동 유지(보호)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시설에 아동을 더 오랜 시간 보호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출신국들은 여전히 기관이나 고아원이 직접 유지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기관이나 고아원이 수령 금액과 유지하고 있는 아동의 수를 중앙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당국은 윤리적인 이행이 자리 잡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금의

278) 캐나다(퀘벡)의 경우 예비입양부모가 제공한 기부금은 신탁 계정 체계를 통해 관리된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2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사용을 모니터해야 한다.

428. 유지비용 등 인가단체가 요구하는 성금의 경우 그 금액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예비입양부모와 중앙당국에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중앙당국은 이러한 성금 금액 설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429. 입양 과정 동안 기부금이 아동의 배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인가단체와 예비입양부모에게 기부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²⁷⁹⁾ 안타깝게도 입양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기관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이러한 “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부자들은 입양절차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매우 비도덕적이며,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예비입양부모는 다른 입양부모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기부금을 지불해서도 안 된다. 기부금이 입양 후에 지불된다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대부분의 경우 정당화될 수 없다(9.7.1 참조).²⁸⁰⁾

430. 그러나 일부 입양가정은 입양아동의 출신국과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랄 수 있으며 인가단체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기부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²⁸¹⁾ 이러한 경우는 상기에 명시된 상황과는 다르다.

431.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성금을 요구하는 출신국 또는 수령국의 국제입양 성금으로 지원되는 협력 사업을 요구하는 출신국은 아동보호서비스 및 협력 사업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9.4 성금이나 기부금은 입양의 “비용”이 아니다.

432. 성금이나 기부금은 입양의 기본적인 행정 및 법률 비용에 부가되는 가변적이고 재량에 의한 금액이나 행정 및 법률 비용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성금이나 기부금은 모든 국제입양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며, 국가는 성금이나 기부금이 또 다른 비용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수령국은 성금이나 기부금을 국제입양 수수료와 비용의 일부로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²⁸²⁾ 일부 출신국은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성금이나 기부금을

279) 상기 2000 특별 위원회 보고서, 노트 47, 권고사안 No 9를 참조한다.

280) 예를 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입양이 완료되는 즉시 기부가 이루어진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2에 대한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281) 예를 들면 Terre des hommes는 입양 완료 후 입양부모로부터 기금을 받아 익명으로 일 년에 한번 기부금을 고아원에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고아원은 기부자 및 기부 금액을 알지 못한다.

282) 일례로 노르웨이를 들 수 있다.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4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수령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²⁸³⁾ 그러나 일부 출신국과 수령국에서는 성금의 지불이 의무적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433. 예비입양부모들은 성금을 “입양 비용”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입양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불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금은 입양 과정의 실제 비용, 즉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특정 입양을 완료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서비스의 비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9.5 성금 허용의 위험

434. 성금과 관련된 위험은 다음과 같다(이들 중 일부는 기부금에도 적용됨).

- 국제입양 자금에 대한 출신국의 의존성
- 예비입양부모의 성금은 보충성의 원칙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기보다 국제입양 장려책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성금은 기관이 아동 보호를 위한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을 원하는 경우 아동의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
- 성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협력 사업으로 인해 인가단체가 더 많은 아동을 국제입양에 할당하려고 할 수 있음
- 국제입양이 수요 중심이고 금전적 인센티브가 있다면 입양적합성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충성의 원칙도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게 됨
- 성금이나 기부금이 국제입양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너무 안일함

9.6 인가단체와 부모의 성금으로 지원되는 협력 사업

435. 헤이그협약에 따른 협력의 의무는 협력 사업을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업은 협약이 발효되기 전부터 있었으며 이는 출신국의 재양, 위기,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장 원리”의

283) 일례로 브라질 및 우루과이를 들 수 있다.

균형이 변화로 인해 협력 사업이 헤이그협약 입양절차의 청렴성을 해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였다.²⁸⁴⁾

436. 안타깝게도 국제입양 아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협력 사업과 국제입양 사이의 연결 고리가 끊어져야 윤리적인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된 많은 협력 사업들은 순전히 자선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입양과 관련이 없고 국제입양을 위한 아동 공급이라는 형태의 “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⁸⁵⁾ 협력 사업이나 국제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없이 이러한 순수한 차원의 협력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력 사업의 도전과제이다.

9.6.1 협력 사업과 국제입양 간 연결 고리 단절

437. 일부 협력 사업의 경우 출신국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향해 발전해나간다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대안 양육이 존재하여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38. 인가단체의 협력 사업 참여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이다. 최선의 경우는 사업이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계획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출신국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전적으로 이타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국제입양을 목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특정 기관으로 보내는 수단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39. 후자와 같은 사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많은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결과는 아동을 상품과 같이 취급하여 입양기관에 넘기는 비양심적인 아동 공급자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이다. 이는 국제입양의 아동중심적인 접근과 일치하지 않으며, 아동의 이익보다 예비입양부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입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협력 사업은 모범적 이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40. 출신국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입양부모들의 압력에 대응하는 수령국은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인가단체와 수령국이 특정수의 입양을 대가로 기대하고 아동을 위한 시설 및 기타 유사한 기관을

284) 예를 들면 2009년 11월 ISS 보고서 ‘베트남으로부터의 입양: 평가 결과 및 권고사안’, 제 5.3.2 장, 57-65 페이지에 나와 있는 논의를 참조한다. 이 보고서는 웹사이트 <www.iss-ssi.org>에 요청시 ISS에게서 구할 수 있다.

285)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No 1, 노트 22, 5.2장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예가 언급되어 있다.

설립하고,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 할 수 있다.

441. 개발 원조(금전, 기술지원 또는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의 형태)는 주로 수령국의 정부기관 및 비정부 기관에 의해 직접 출신국에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록 인가단체가 그 자금을 모금했는지라도 반드시 인가단체를 통해 원조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국제입양과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올바른 지향점이 될 수 있다.²⁸⁶⁾

442. 인가단체의 협력 사업 이행에 대한 일부 지침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관(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지침은 스웨덴의 인가단체가 SIDA로부터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이 지침에 의하면 인가단체는 입양 사업과 개발 사업이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인가단체는 국제입양 중재와 개발 사업에 사용되는 재정과 인력이 분리되었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이 양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출신국의 협력 파트너 역시 이와 같은 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스웨덴 국제입양 중재법에 따르면, 인가단체의 국제입양 외 활동이 입양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9.7 성금, 기부금, 협력 사업에 대한 상이한 견해²⁸⁷⁾

9.7.1 활동의 분리(관점 No.1)

443. 일부 국가, 당국, 기구는 출신국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개발원조 또는 협력 사업은 국제입양과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와 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은 쌍방 및 다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가단체는 이러한 활동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아야 한다.

444. 일부 입양 전문가의 경험에 따르면, 인가단체와 예비입양부모의 성금은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기보다는 국내 해결책보다 국제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입양 후의 기부금이 입양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모든 이들은 입양이 신속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이유로 기부금을 지불할 수 있다. 기부금이 제공될 것임을 알고 입양이 진행될 때 이러한 기부금이 입양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86) 상기 2010 특별 위원회, 노트 261, 권고사안 No 14의 결론 및 권고사안을 참조한다.

287)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No 1, 노트 22, 5.4장에는 상이한 견해들이 논의되어 있다.

445. 유니세프의 출신국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출신국은 의무적인 성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출신국이 국제입양 자금을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니세프는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통한 개발 원조는 아동보호체계 및 개별 기관의 개선을 돕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 수령국의 정부구호기관들은 출신국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시키는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9.7.2 출신국의 필요 충족(관점 No.2)

446. 일부 국가는 “활동의 분리”를 주장하는 국가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엄격한 분리”의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함으로 수령국이 출신국의 실질적인 필요에 눈 감아 버릴 수 있음을 염려하며, 이는 입양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447. 일부 출신국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중앙당국을 포함한 아동복지당국에 매우 적은 자금만을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자원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두 번째 관점의 지지자들은 수령국이나 인가단체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신국을 돕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성금이나 기부금의 철회는 많은 아동과 가족에게 막대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출신국의 아동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그들은 개발원조는 부족하고 이러한 자금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 경쟁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수령국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은 교육을 조직하고, 국가 조직의 기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448. 출신국과 수령국 간 서면 업무 협정 작성은 국제입양과 협력 사업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분리가 유지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는 수령국의 인가단체가 이행한 사업에 대해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독하게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449. 필리핀에서는 다른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외국의 인가단체나 그들의 대리인은 필리핀에서 업무 수행을 허가받지 못한다. 그들은 현지의 비정부 기관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부 기관은 가족보존이나 현지 영속성 계획 등 국제입양과 관련되지 않은 특정 사업 용도로 성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의 중앙당국이 입양 과정을 면밀히 통제하고 있다.

9.7.3 인가단체의 성공적 프로젝트(관점 No.3)

450. 세 번째 관점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승인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인가단체들은 출신국에 대한 박애주의적 지원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²⁸⁸⁾ 규모는 작지만 특정 집단의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사하여 고안된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일 수 있으며, 해당 집단의 복지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대규모의 국제조직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국제입양과 분리가 되어 있다면, 프로젝트는 국제입양 건수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451. 여러 프로젝트가 국제입양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장기간 동안 유지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은 입양가족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와 프로젝트 자금 간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다.

452. 한편, 소규모의 기관은 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있으며 출신국의 당국은 어떤 프로젝트(사업)를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신국은 협력 사업과 국제입양 간의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453. 인가단체가 가족보존이나 아동교육지원과 같은 다양한 협력 사업에 연관된 대규모 비정부 기관의 일부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인가기관이 국제입양과 협력 사업 간의 분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 수 있다(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많은 비정부 기관들은 아동이 시설에 배치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 조치 뿐 아니라 입양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대안 양육’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국제입양의 역할에 대한 과장 없이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9.8 성금과 기부금의 미래

454. 성금 및 기부금 문제로 인한 딜레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이고도 윤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수령국의 정부구호단체는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직접적 또는 유니세프 및 기타 국제기구, 비정부 기관을 통해 여러 출신국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늘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288)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5.2에 일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언급되어 있다.

455. 이는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나, 인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공적인 이행이 존재한다. 중앙당국과 인가단체가 모두 고려해 볼만한 모델은 스웨덴 모델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국제입양은 법에 따라 협력 사업 및 기타 원조와 분리되어 있다.
- 정부구호기관은 협력 사업을 위한 인가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 인가단체는 협력 사업을 위한 분리된 조직이 있어야 하며, 동 사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정부구호기관과 인가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책임이 필요하다.

456. 정부구호기관을 통해 스웨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스웨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분리 요건은 여전히 적용될 것이며 중앙당국이 감독할 것이다.

출신국 인가단체 관련

절차와 과제

457. 본 장은 취약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단계들을 설명하며, 이러한 단계는 입양에 앞서 진행되고 인가단체가 개입될 수 있다. 출신국에서는 인가단체의 개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0.1 취약 아동의 보호

458. 취약 아동의 보호와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다.²⁸⁹⁾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당국이 아동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수령국과 출신국 모두-에서는 NGO나 사설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보호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에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며 NGO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459.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 6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²⁹⁰⁾ 국내외 입양을 고려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²⁹¹⁾ 대부분의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이 본인의 원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것 그리고 아동보호체계와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²⁹²⁾

460. 위기에 있는 가정을 위해 일부 출신국은 가족보존 프로그램, 가족보존 지원을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²⁹³⁾ 아동이 아동보호당국에 알려지거나 보호체계에 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그 아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²⁹⁴⁾

461. 취약 아동 발견 시 초기 단계에서 취해진 모범 이행은 국내입양의 모범 이행 구현을 보장하고, 이로써 국제입양의 모범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89) 이 이슈는 앞서 5.2.1 장에서 언급된 바 있다.

290) 상기 조항: 3, 노트 7, UNCRC (강조 추가)

291) 상기 조항: 21, UNCRC (강조 추가)

292) 입양된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여러 상황 (예, 폭력, 방치, 유기)이 있다. 따라서 아동 보호 제도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이는 모든 국가에서 제도화된 건 아니다.

293) 간과될 수 있는 가정 보존 서비스 중 하나는 젊은 엄마 또는 서출 태생의 아동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94) 예방을 포함한 구체적인 아동 보호 대책은 아동이 입양되기 전에 확립되어야 한다. 2009년 9월 15일자 총회 결의안 A/RES/64/142 에서 채택된 2009 대체 아동 관리를 위한 지침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웹사이트 < www.unicef.org > 내 ‘중점 분야’ 및 ‘아동 보호’ (2012년 2월 14일 최종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2 아동보호에 관한 출신국의 구조적인 과제

462. 일부 출신국의 주요한 과제는 아동복지와 보호를 포함하는 공공사회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아동보호체계의 부재는 아동에게 국제입양 외에 진정한 대안 양육 옵션이 없다면 보충성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행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동은 빈곤만을 이유로 국제입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나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제입양 한 건을 위한 비용은 아동과 그의 가족이 자국에서 수년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일 수 있다.

463. 일부 국가에서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사설기관과 NGO가 유기나 유괴, 자발적인 양육권 포기 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식별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을 수 있다. 때때로, 출신국의 인가단체가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아동이 시설기관에 입소하거나 국가의 양육체계로 편입될 것을 결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사나 기타 공공당국의 전문가들이 이 단계에서 담당자 역할을 해야 한다.²⁹⁵⁾

464. 숙련된 사회복지사의 부족은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에는 매우 소수의 사회복지사만 유지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가족과 부모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보호 및 권리 분야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부족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족에 의해 발생한다. 수령국(중앙당국과 인가단체 포함)은 출신국이 사회복지 전문가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개발을 통해 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더 많은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한 국가도 있을 수 있다. 장학금을 제공하면 전문가의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65. 아동보호와 대안양육을 위한 법적 기반의 부재나 부족은 몇몇 국가의 도전 과제이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당국에 취약 아동을 보고함에 있어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법규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훈련과 자원의 부족으로 동 규정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10.3 국내외 입양 전 과제

466. 국가가 아동보호 시스템의 책임을 출신국 인가단체나 사설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문제가

295) 예를 들면 칠레의 인가단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파악하고 아동에 대한 결정을 위해 법원에 권고를 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가족보전을 위한 업무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려는 친모 상담
- 유기된 아동과 입양 대상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다양한 범주 관리
- 예비입양부모(국내외입양)와의 업무

467. 이러한 시스템은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²⁹⁶⁾ 일부 출신국 인가단체가 가족보존,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 상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인가단체와 기관은 예비입양부모로부터 더 많은 성금이나 기부금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입양가능 아동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68. 다음의 섹션은 사설기관과 인가단체가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6장에서 설명한 아동보호의 4단계에 참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0.3.1 1단계 : 아동의 보호체계 편입

469. 출신국의 인가단체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친권을 포기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확인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및 편파성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는 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가족보존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470. 출신국 인가단체가 아동유기의 판단을 하거나 친부모로부터 입양동의를 받고, 이후에 동일한 기관이 아동 결연 및 결연 배치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출신국 내의 공공당국이다. 이 단계에서 인가단체의 전문적인 자원의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이해상충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주요 도전과제가 발생한다.

471. 출신국의 인가단체나 아동보호시설이 아동의 평가에 개입하는 경우, 편파의 가능성이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은 이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을 발견하였다. 하나의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경우, 그 기관은 이후 아동 결연에 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다른 기관에 의해 결연이 이루어진다.²⁹⁷⁾ 이러한 모델을 통해

296)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7에 대한 칠레 및 콜롬비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297) 부속서 2, 3절에 나와 있는 필리핀의 관점을 참조한다.

필리핀은 자국의 인가단체와 외국의 인가단체 간 이해상충을 예방할 수 있다.²⁹⁸⁾

472. 외국의 인가단체는 원칙적으로 아동 입양적합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동의 양육자와 연락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입양 자격과 적절성에 대한 승인을 받은 예비입양부모와 결연되기 전까지는 아동의 양육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출신국에서 외국의 인가단체가 종종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며 보충성의 원칙 적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473. 한편, 일부 출신국은 외국의 인가단체에게 결연을 위한 아동보고서의 일환으로 아동의 신체검사 및 심리 검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러한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때문에 결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²⁹⁹⁾

10.3.2 2단계 : 가족 보존

474.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상담과 조언 업무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사회복지사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친모와 친척을 상담하는데 있어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 문화와 전통은 친모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상황이 아님(예를 들어, 미혼모이기 때문에)을 인정한 친모들이 가혹한 판단을 받고 경찰 및 당국의 차별을 받는 일은 매우 흔하게 있다.

475. 많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의 책임은 공공당국이 지고 있다.³⁰⁰⁾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부재나 부족으로 이러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출신국 인가단체가 가족보존, 재결합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의 공급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³⁰¹⁾ 일부 출신국에서는 자국의 전문화된 인가단체가 이러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³⁰²⁾

298) 필리핀은 국가 아동 관리 기관들을 '연락 기관'으로 인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인 국제 입양기관들과 합의각서(MOA) (중앙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를 체결해서 입양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 '연락 기관'의 지정으로 인해서 관리를 받는 아동들은 연락 기관이 계약을 맺고 있는 국제 입양 기관과의 주선에서 즉각 배제되고 있다.

299) 예를 들면 해외 인가단체들은 출신국에 상주하며 아이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 직원을 두고 있다. 해외 인가단체들은 출신국 정부 당국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아동에 관한 진실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당국에 의해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어, 관습, 예절을 가진 현지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인가단체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통해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신국들은 조항 29에 따라서 아동과의 연락과 관련된 법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300)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2가지 유형의 NGO가 있다. 한편으로는 '아동 보호 기관'이 방치, 유기 또는 버림받은 아동들을 책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 입양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들을 위해 입양 가정을 찾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301)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7에 대한 칠레의 응답 및 질문 No 56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필리핀의 경우 이는 현지 인가단체들의 책임 소관이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7에 대한 필리핀의 응답을 참조한다.

302) 예를 들면 칠레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7에 대한 응답에서 논의된) 및 남아공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아동 보호 기관이 인증을 받아 여타 아동 보호 서비스와 더불어 입양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2005 아동보호법 No. 38, 15을 참조한다(이는 2012년 2월 14일 최종 확인한 웹사이트 < www.gov.za > '문서', '법' 및 '2005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6. 이러한 기관의 과제는 가족보존과 재결합 프로그램과 입양 프로그램의 완전한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업무의 객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동을 포기하기 원했지만 결국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은 후 아동을 양육하기로 결정한 어머니들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다.³⁰³⁾ 이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나중에 아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3.2.1 가족보존이 가능하지 않을 때 : 양도와 동의

477. 때로는 원가정이나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지 못할 수 있다. 영구적인 해결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위탁양육이나 다른 임시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때로, 아동이 “임시적인” 양육을 위해 친모에 의해 시설에 입소되기도 한다. 가장 힘든 상황은, 아동이 몇 년씩 시설에 남아있고 부모가 아동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이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도록 하며, 당국은 아동의 미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

478. 이러한 상황에 관한 다른 관점은 빈곤한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 거주지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는 아동을 방문할 수 없지만 언젠가 자녀가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 때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479. 이 경우는 관리가 어렵다. 한편으로, 아동이 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은 발달에 해로울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부모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 것이 아동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는다. 만약 빈곤한 부모가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시설에 있는 아동을 좀 더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은 더 많은 아동을 수용하여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장소, 음식, 자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 양육시설이 복지 및 입양시스템을 남용하게 할 수도 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부모들에게 아동을 입양배치 시키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

480. 빈곤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은 빈곤하고 교육 받지 못한 부모를 설득하여 “교육”을 위해 아동을 시설로 보낼 것을 종용하고 국제입양을 위해 고아로 선언하는 위조 서류를 작성한다.

303) 과테말라의 경우 2008 - 2011년까지 자녀 양육을 포기하려던 어머니들이 지원을 받았고 그 중 약 50%가 아이를 계속 기르기로 결정했다. Consejo Nacional de Adopciones de Guatemala, 'Informe Final de Gestión 2008-2011'을 참조한다. 이는 웹사이트 주소 <www.cna.gob.gt> 내 '문서' (2012년 2월 14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칠레의 자국 내 입양 인가단체인 'Fundación San José'에서는 1994년 이래로 5,414명의 여성들이 상담을 받았다. 그 중에서 불과 1,104명만이 자녀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2011년 상담을 받은 247명의 여성들 중 불과 45명만이 자녀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481. 해결책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동을 한동안 방문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을 통해 아동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국내외 입양이 고려되는 경우, 부모에게 반드시 아동포기의 효력에 대한 정보와 동의의 필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포기의 영구성과 포기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시에, 친부모는 가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 6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482. 또 다른 사례로, 확대가족은 친모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양육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아동을 원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확대가족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의 학대, 낙인, 연속적 유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483. 상담 후, 친모가 아동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자녀의 미래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것을 권유 받고 참여한 경우 훨씬 나은 “치유 과정(healing process)”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 동안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허락된 경우, 아동의 미래에 관한 친모의 개입은 친모의 의사에 적절한 경중을 두어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0.3.3 3단계 : 일시보호와 시설보호

484. 일시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다양한 기간 동안 여러 이유로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시보호는 아동의 법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가 평가되는 동안 그리고 영구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필요하다. 일시보호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 6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485.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이 입양절차 수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도 있다.³⁰⁴⁾ 일부 국가는 입양 대상 아동만을 받고 양육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체와 연계된 기관이 보통 성금 및 기부금을 통해 보다 많은 자금을 받으므로 양육의 질과 기관의 시설 면에서 심각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도전과제는 시설 간의 불평등, 즉 입양 대상 아동이 있는 기관이 높은 수준의 좋은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입양 대상 아동이 없는 기관은 시설과 인력 면에서

304)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7에 대한 에스토니아, 필리핀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 기관 전체가 인증을 받지만 오직 1개 부서만이 예비입양부모들과 업무를 본다.

열악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486.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상황도 존재한다. 입양 대상 아동이 있는 기관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열악한 상황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었다.

10.4. 입양적합성의 과제

10.4.1 4단계 : 국내입양 또는 영구적 양육³⁰⁵⁾

487. 보충성의 원칙을 위해, 출신국은 아동의 입양가능성을 판단하기 전 위기 가정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이 입양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면, 국제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출신국 내의 가정에 아동을 배치시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488. 그러므로 아동의 입양적합성 평가는 가장 중요한 입양절차 중 하나이다.³⁰⁶⁾ 예를 들어, 가족보존 단계에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이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헤이그협약 제4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국제입양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489. 입양적합성의 결정은 인가단체가 아닌 사회, 가족, 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출신국 관련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법원이나 심사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공공당국이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필요한 배경 조사를 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는 법으로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입양적합성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제 업무는 권한당국의 숙련된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출신국 인가단체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위임하기도 한다.³⁰⁷⁾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만일 인가단체나 시설이 외국의 인가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

490. 아동에 관한 서류 일체는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으로 보호 시스템에 편입되는 순간 작성된다. 그 과정의 각 단계에서, 당국이나 시설에서 수집한 사진 등 개인적 정보를 포함한 아동에 관한 모든 정보가 서류 안에 기록될 것이다.

305) 이 절은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의 6.4장 (4단계: 국내입양 또는 영구적 보호) 및 7.2장 (아동)을 함께 참조해야 한다.

306) 입양 가능성 평가는 법적 입양 가능성 및 사회심리적 입양 가능성을 포함한다.

307)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7에 대한 에스토니아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491. 또한 아동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와 서류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훈련 뿐 아니라 유기된 아동을 어떻게 다루고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³⁰⁸⁾ 입양된 아동에 관한 정보와 개인적 사항을 다루는 전문가와 기타 공무원은 아동에 관한 정보와 개인적인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기밀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여야 한다.

492. 이러한 서류상의 정보는 당국의 입양적합성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입양적합성이 일단 결정되면, 아동에 대한 보고서는 입양관점에 맞추어 준비된다. 이는 출신국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된다. 아동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된 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을 통해 적합한 입양가정을 찾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493. 권한당국이나 출신국 인가단체는 국내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의 신청을 받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시키며 동시에 그들을 평가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494. 출신국 인가단체나 공공당국의 입양전문부서는 국내입양을 위한 결연 절차를 담당한다.³⁰⁹⁾ 결연 위원회는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적인 팀이어야 한다. 그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설로부터 아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받고, 또한 입양신청 담당 부서로부터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받아야 한다.

308)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2.1.3.2 장을 참조한다.

309) 입양 추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단체의 예를 보자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57에 대한 에스토니아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수령국 인가단체 관련

절차와 과제

495. 수령국에서 인가단체의 활동은 주로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것이다. 특히, 입양부모 평가, 준비와 수령국에 아동이 도착한 후 제공하는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496. 이러한 활동들은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 7장(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 특히, 7.4(예비입양부모)에서 설명하였으나 본 지침은 입양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봉착하게 되는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1.1 입양 전 단계

11.1.1 예비입양부모의 준비와 기대 관리

497. 예비입양부모는 국제입양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³¹⁰⁾ 이러한 준비는 예비입양부모의 기대를 현실화시키고 출신국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예비입양부모는 자신에게 아동에 대한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혹은, 입양 대상 아동의 수나 프로필이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³¹¹⁾ 일부 예비입양부모는 국제입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의무적인 준비 사항과 국가의 '개입'이 부재하는 경우, 이들은 입양을 출생과 비교하기도 한다. 많은 수령국은 일반적인 입양에 관한 정보 세션, 국제입양의 현 이슈와 과제에 관한 세션 등과 더불어³¹²⁾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필수(의무적) 준비 과정을 도입하였다.³¹³⁾ 이러한 과정은 공공당국이 수립·운영하거나 공공당국과 계약한 전문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³¹⁴⁾ 인가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³¹⁵⁾ 준비과정을 운영하는 개인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입양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³¹⁶⁾

310) 상기 ISS 책자, 노트 135를 참조한다.

311)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406을 참조한다.

312)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6에 대한 벨기에 (프랑스 지역)의 응답 및 질문 No 57에 대한 스페인의 응답을 참조한다. 상기 입양 비용? 노트 62, 32-33 페이지를 참조한다.

313)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410을 참조한다.

314) 예를 들면 이는 네덜란드의 이행으로서 예비입양부모들은 일반 정보 과정에 참여하고 아동 관리 및 보호 기관은 그들의 적합성 및 자격을 조사한다.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의 질문 No 4(g)에 대한 네덜란드의 응답을 참조한다. 스페인의 지역 정부는 1차 상담 및 주선을 준비하고 제공한다. 이따금 계약을 맺은 민간단체가 이를 수행한다(이러한 민간단체는 인가단체가 아니다). 이러한 1차 준비 후 인가단체는 차후 단계에서 자문, 상담 및 준비 절차 설명을 추가로 제공한다.

315) 이러한 과정이 인가단체에 의해 마련되는 예를 보려면 상기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6에 대한 벨기에 (프랑스 지역) 및 질문 57에 대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및 퀘벡),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및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또한 상기 입양 비용?, 노트 62, 32-33 페이지를 참조한다.

316) Ibid.

498. 인가단체가 단독으로 준비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준비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입양기관, 중앙당국, 전문가 간의 건설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준비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499. 입양부모 준비 과정은 그룹 세션,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킨 세션 등 몇 개의 세션으로³¹⁷⁾ 구성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키는 접근은 입양모와 입양부에 각각에 대한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³¹⁸⁾ 일부 국가는 공식적으로 입양적합성을 평가받기 전에 예비입양부모가 준비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비입양부모는 준비 과정 중 과정이 끝난 후 자신이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준비과정은 “자동 평가”의 역할 또는 자율적 제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³¹⁹⁾

11.1.2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eligibility)과 적합성(suitability)

500. 출신국은 수령국에서 예비입양부모로 선정된 사람들이 적절하고 완전한 평가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³²⁰⁾ 수령국은 철저하게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예비입양부모의 기대를 현실화시키고 다양한 출신국에서 입양되는 아동의 필요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³²¹⁾

501.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에게 적격성(eligibility) 요건을 공지할 수 있다.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 결정은 초기과정에서 권한당국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모가 수령국이나 출신국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입양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다.³²²⁾

502. 예비입양부모로서의 적격성이 확인되면, 적합성(suitability) 평가가 시작된다.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고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엄격한 과정을 적용하기 위해³²³⁾ 평가업무는 공공당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317) 교재는 과정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갖고 있는 스웨덴 중앙 정부의 국가건강복지위원회가 개발한 것이다. 스웨덴 사회 서비스를 위한 입양 핸드북에 따르면 (웹사이트 주소 < www.socialstyrelsen.s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4월 16일 최종 확인) 예비 과정은 두번의 전체 주말 또는 상이한 주말에 걸쳐 4일간 7번의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어 수업간 복습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인가단체들은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318) 예를 들면 스웨덴, 특수 아동을 위한 부모에 관한 의무적 준비 부모 과정의 내용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웹사이트 주소 < www.mia.eu/english/parents.pdf > (2012년 4월 16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9)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의 J. Boatright Wilson, J. Katz 및 R. Geen의 2005 논문 시리즈 nwp05-005 ‘부모의 의견 듣기: 입양 아동의 양육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하기’를 참조한다. 이 논문은 웹사이트 주소 < www.hks.harvard.edu > (2012년 4월 16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들은 미국 국내 입양의 실패 요인이 분석되어 있다.

320)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402를 참조한다.

321) Ibid., 단락 404.

322)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지 1, 399-401 단락에 나와 있는 협약의 조항 5 a)를 참조한다.

323) 헤이그 컨퍼런스의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 입양’란에 나와 있는 국가 프로필을 참조한다.

503. 인가단체에 평가업무를 위임한 국가의 경우, 인가단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비입양부모 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인가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라는 부모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정적인 이유로 일정수준의 예비입양부모 등록 숫자를 유지해야 하는 등과 같은 다른 압력도 존재할 수 있다.

504. 예비입양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에는, 입양을 위한 공식적인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단체는 공식 승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일부 국가에서 입양승인은 권한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자의 긍정적인 권고와 특정 아동(연령, 성별, 건강, 장애별)을 입양할 수 있는 신청자의 능력에 기초한다.³²⁴⁾ 인가단체는 출신국 송부용으로 적합성 보고서 사본을 받아야 한다.

505. 공정한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령국은 국제입양에 국내입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출신국은 일부 인가단체가 입양적합성(suitability)이 의심스러운 취약한 입양 프로필을 가진 예비입양부모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령국마다 입양 승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오직 법적 기준(연령, 혼인여부, 비전과자 등)만을 이용하고 심리사회 관점에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에서 심리사회적 특성에 근거한 예비입양부모의 비적합성(unsuitability)은 입양승인 거절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인가단체는 이러한 예비입양부모를 신청자로 받아야만 한다.

506. 수령국에서 승인을 받으면, 수령국에서 이루어진 적합성(suitability) 판단과 신뢰를 기반으로 출신국에서도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아동이다. (예. 입양부모가 입양한 아동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

507.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요구된다. 출신국은 인가단체, 중앙당국에게 그리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출신국은 수령국에서 예비입양부모 적격성과 적합성이 확인되는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한다. 출신국은 적합하지 않은 예비입양부모 신청 거절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508. 일부 수령국은 출신국으로부터 전혀 관련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상세한 의학적(심리적) 자료 분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가 신청자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어서이거나, 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해서라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수령국은 인가단체가 출신국의 요건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령국의 중앙당국과 인가단체는 아무리 끈질기게 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비적합한 신청자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324)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7에 대한 응답 및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에 대해 개별 국가들이 제출한 '기구 조직도'(Organigram)를 참조한다.

509. 이러한 문제들은 수령국과 출신국의 권한당국이 출신국의 예비입양부모 평가기준 뿐 아니라 신청자의 적합성(suitability) 평가 절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1.1.3 인가단체와 예비입양부모 간의 계약

510. 입양신청을 준비하기 전, 예비입양부모와 인가단체 간에 서면으로 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³²⁵⁾ 이러한 합의서는 각자의 약속 내용 뿐 아니라 각 당사자(인가단체와 예비입양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해준다. 절차의 모든 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절차의 각 단계 기술, 비용, 기간과 입양 사후 보고서의 조건 등)이 합의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는 서명한 합의서가 반드시 아동의 입양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가족이 필요한 아동은 그 아동의 필요 충족에 가장 적합한 입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부모에게 연결된다.

511.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할 능력이 없다고 의심된다면, 기관은 예비입양부모와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건은 중앙당국으로 보낼 수 있다.

512. 예비입양부모와의 업무는 정보의 기밀을 보장하며 가급적 국내외 기준을 따르는 행동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³²⁶⁾

513. 예비입양부모는 오직 한 국가의 하나의 기관과 입양진행을 합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배치되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다중으로 입양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관행은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 출신국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른 부모들의 절차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반드시 또 다른 결연절차를 거쳐야 하는 아동의 입양절차에 지연과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514. 그러나 다중신청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출신국에서 입양 프로그램이 무기한으로 종료되었다면, 전체 절차의 재개 없이 다른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인가단체는 새로 선택된 국가에 대한 특정 준비를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원칙은 동일한 부모의 2개 이상의 입양 서류가 다른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325) 이러한 이행은 다수의 수령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14에 대한 벨기에(플랑드르 및 프랑스 지역), 캐나다(온타리오 및 퀘벡),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및 스위스의 응답을 참조한다.

326) 상기 노트 142를 참조한다.

11.2 입양절차 진행 동안

515. 예비입양부모가 공식적 승인을 받으면, 아동의 특징이나 국가 선택과 관련된 추가적 준비를 할 수 있다.

11.2.1 전문적인 준비

11.2.1.1 특수 욕구 아동³²⁷⁾

516. 예비입양부모가 특수 욕구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국은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특수 욕구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를 특수 욕구 아동의 프로필에 적합한 특정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에게 회부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준비는 중앙당국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다.³²⁸⁾

517. 수령국의 인가단체는 특수 욕구 아동을 위해 적합한 예비입양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을 요청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출신국은 적합한 입양부모를 선별하기 위해 특수 욕구 아동의 자세한 사항(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외)을 수령국에 전달해야 한다.³²⁹⁾ 이러한 서류흐름을 거스르는 관행에 대해서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에서 논의하였다.³³⁰⁾ 또한 이러한 경우 인터넷 사용에 관한 내용은 3.8을 참조한다.

11.2.1.2 특정 출신국에서의 준비

518. 인가단체는 적절한 시기에 예비입양부모 준비를 지속하고 그들에게 출신국의 입양절차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327) 아동의 특수 욕구 관련 지침의 경우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No 1, 노트 22, 7.3장을 참조한다.

328) 예를 들면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의 질문에 대한 네덜란드의 응답을 참조한다. 또한 상기 스웨덴 사회 서비스를 위한 입양 핸드북, 노트 318, 81 페이지를 참조한다. 이 핸드북은 공인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동의 필요에 대처하고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예비입양부모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가단체에 적용되는 표준 중에는 “입양할 특정 아동 및 아동의 특별한 필요 측면에서 예비입양부모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 시 개별 면담 및 준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법 제22의 조항 96.48 e)를 참조한다.

329)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7.3 장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동)을 참조한다. 이러한 이행의 예를 원하는 경우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42에 대한 덴마크의 응답 및 질문 57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330) 상기 노트 22, 단락 394를 참조한다.

519. 일부 인가단체는 워크숍과 그룹 세션을 통해 특정 국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소그룹은 종종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 역할과 각 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국가에서 인가단체는 자발적으로 다른 가정을 돕거나, 서로 돕고자 하는 입양부모 및 입양인을 포함한 지원그룹과의 지역별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³³¹⁾ 이러한 자원봉사자는 입양절차 수행기관으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 인가단체의 전문직원은 출신국의 법적, 행정적 입양절차에 대한 이해나 지식 뿐 아니라 법적 사회적 문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언어능력의 완전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고 간주된다.³³²⁾

520. 전문적인 준비의 한 부분으로, 예비입양부모는 국가, 전통, 문화, 지역과 언어에 대하여 가능한 많이 배울 것을 권장 받는다. 아동과의 첫 만남에서 몇 마디의 대화는 아동과 의사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2.2 신청서 준비와 출신국으로의 발송

521. 인가단체의 국가 전문가는 각 특정 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 서류와 절차를 알려줄 것이다. 6.5.1(수령국 인가단체의 국가 전문가)을 참조한다.

522. 출신국은 예비입양부모 신청서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출신국의 관련 당국에 신청서류를 전달하기 전 신청내용이 정확한지, 제대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인가단체의 책임이다. 출신국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요건을 분명하게 충족시킨 예비입양부모의 신청만이 전달되어야 한다. 신청은 결연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뿐 아니라 출신국의 중앙당국이나 권한당국이 해당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출신국은 어떠한 정보와 서류가 신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523. 출신국에 전달되는 입양신청의 수는 출신국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출신국의 당국에 대한 지나친 압력과 과도한 업무량을 피하기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

524. 일부 국가의 중앙당국은 모든 서류를 직접 출신국에 전달한다.³³³⁾ 어떤 국가에서는 인가단체가 신청서를 출신국에 직접 전달하며, 중앙당국이 정기적으로 출신국에 전달한 모든

331) 예,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9에 대한 뉴질랜드의 응답을 참조한다.

332)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지침의 6.5.1을 참조한다.

333)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의 질문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응답을 참조한다.

신청서 현황을 보고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신청이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에 의해 전달된다.³³⁴⁾

11.2.3 예비입양부모와 결연된 아동의 세부사항 확인과 전달

525. 결연된 아동에 대한 보고서가 수령국의 인가단체에 전달되면, 예비입양부모와 접촉하기 전에 출신국의 대리인을 통해 혹은 출신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가 직접, 또는 전문가팀이 또는 적어도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와 접촉하기 전 중앙당국에 보고서의 복사본을 전달해야 한다.³³⁵⁾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의료적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예비입양부모와 연락을 담당하는 자는 의료정보가 적절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526. 때때로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 예비입양부모와 접촉하기 전, 인가단체가 의료전문가, 정신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수 욕구 아동인 경우 이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 아동에 관한 정보는 전문가의 평가와 함께 예비입양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1.2.4 결연 제안의 수용

527. 예비입양부모는 질문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인가단체의 사회복지사/담당자는 예비입양부모가 제안을 수용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에게 합리적인 시간을 허락해야 하나, 아동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예비입양부모가 의료전문가로부터의 추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528. 이 시점에서 예비입양부모에게 사후입양 관련 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출신국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것이 적절하다.

529. 예비입양부모가 제안을 수락하면, 중앙당국이나 권한당국은 협약 제17조 c항에 따라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될 합의서를 발행하기 전, 서류와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530. 일부 국가에서 인가단체는 이미 동일한 국가에서³³⁶⁾ 입양을 한 경험이 있거나 동일한 연령의 아동 또는 동일한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을 입양한 자원봉사 가족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334) 예, 스페인

335) Ibid.

336)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8에 대한 독일의 응답을 참조한다.

11.2.5 예비입양부모의 출신국 방문 준비

531. 인가단체는 출신국 방문 요건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초기단계에 이를 예비입양부모에게 공지해야 한다.
532.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만나기 위해 출신국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해야 하며, 그들의 방문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방문하기 가장 적합한 날, 최적의 운송수단, 필요한 비자, 출신국 내 건강증명서,³³⁷⁾ 비상시 연락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신국 방문 기간 동안 입양가족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533. 아동을 인도 받기 위해 출신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출신국은 이를 예비입양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부 부모는 방문을 원하지 않고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모범 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에스코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534. 예비입양부모는 특정 출신국 방문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일부 출신국은 공식적으로 방문을 승인받기 전까지는 예비입양부모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안내 받아야 한다.³³⁸⁾
535. 출신국 내 관련 당국과 인가단체는 출신국에서 예비입양부모에게 아동을 인도한 후, 아동이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복지와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³³⁹⁾

11.2.6 예비입양부모가 모든 단계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

536. 준비단계 동안 인가단체는 출신국에서 입양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일반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시민권 신청이 필요한 경우의 법적 절차와 같이 아동이 수령국에 도착한 후 필요한 조치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알려주게 된다. 인가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입양부모를 지원하여야 한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입양의 경우, 협약 제23조에 따라 외국의 입양 결정은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수령국에서 인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537. 출신국은 아동이 입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거부당하였거나 입양부모가 아동을

337)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7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338) 추가 논의는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433을 참조한다.

339) 협약 제19조

위한 국적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아동이 수령국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³⁴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8.4.5장을 참조한다.

11.3 입양사후 단계

11.3.1 배치 및 입양 사후 서비스

538. 준비 단계 동안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와 배치 및 입양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입양아동과의 적응 문제 등에 직면한 입양가족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입양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연계를 유지하면서 제공될 것이다. 인가단체는 입양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수령국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⁴¹⁾

539. 입양절차를 통해 예비입양부모를 준비시키고 지원하는 인가단체의 경험(가정조사 완료, 출신국의 특성 및 요건에 대해 입양부모에 안내를 제공, 결연제안 수용 결정에 동반하는 등)은 입양사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해준다. 반대로, 배치 또는 입양 전 입양부모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던 입양사후 서비스 담당 당국은 해당 가족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입양사후 단계의 역동성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아동의 출신국에 대한 친밀도가 부족할 수 있다.

11.3.2 입양사후 보고서

540. 수령국으로부터 입양사후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것은 출신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많은 출신국에서 보고서의 제출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41. 입양사후 보고서 전달의 중요성은 헤이그협약의 초안을 작성할 무렵부터 그 이후의 모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어 왔다. 다수의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작성된 바 있다. 이러한 주제는

340)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57에 대한 캐나다(온타리오)의 응답을 참조한다. 이 응답에서 캐나다는 입양된 아동의 이민 절차에 관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가단체의 추가적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341) 많은 수의 국가들에 있어서 입양사후 서비스 제공은 인가의 요건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2009 설문지의 질문 No 58에 대한 벨기에(플랑드르 및 프랑크 지역)의 응답을 참조한다.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 9.3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³⁴²⁾

542.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출신국의 요건이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예비입양부모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 수령국에서 보고서 송부의 책임이 있는 개인, 기관이나 당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543. 아동결연 제안 수락 시, 예비입양부모는 후속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공지를 받은 상태이고, 이러한 요건 준수를 확인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 상태여야 한다. 협약 제17조 c항에 따라 합의서를 준 사회복지사나 공공당국의 직원은 후속보고 의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44. 사후보고서의 일부는 인가단체, 공공사회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작성되며 일부는 입양가족에 의해 작성된다. 출신국의 해당 당국에 전달되기 전에 수령국의 인가단체가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고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모범이행일 것이다. 2년부터 18년까지의 보고 기간 동안, 수령국의 인가단체와 입양가족 간의 연락은 유지될 것이다.

545. 많은 출신국에서 사후보고서 제출을 입양 승인에 필요한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양사후보고서 규정은 출신국 내 인가단체의 허가를 위한 조건일 수 있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출신국은 해당 단체의 허가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342)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지침 No 1, 노트 22를 참조한다.

제12장

국가, 중앙당국, 인가단체 간 협력

546. 본 장에서는 인가단체의 운영 개선을 위한 체약국 간 협력 조치의 구축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협력은 출신국과 수령국 간, 수령국 간, 출신국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협력은 여러 국가의 당국 간, 당국과 인가단체 간, 인가단체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12.1 출신국과 수령국 간의 협력

12.1.1 협력의 의무

547. 협약은 협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체약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협약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협약 제1조 b항에 규정하였다.³⁴³⁾

548. 협약 제7조 1항은 중앙당국이 아동의 보호와 협약의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당국들과 협력하여야 하며, 국내에 있는 권한당국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549. 협약 제7조 2항은 중앙당국이 입양에 관한 국내법 관련 정보 및 통계와 표준서식과 같은 기타 일반정보를 제공할 것 그리고 협약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전달하고 가능한 한 협약 적용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직접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550. 협약 제7조가 위임할 수 없는 중앙당국의 의무만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인가단체가 협력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의 명칭과 제1조의 목적에서, 협력은 협약절차에 따라 입양을 진행하는 모든 관련자들의 일반적인 의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중앙당국은 협력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협약 제14조~21조의 국제입양절차는 입양이 중앙당국 혹은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련 두 국가의 당국이나 기관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을 요구한다.

12.1.2 협력과 상호 책임 : 공동 책임 증진

551. 일반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를 위한 협약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약국은 자국에게 부과된 특정한 책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공유된 책임을 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343) 협약 목적 및 협약 원칙으로서의 협력 이슈는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2.3장 및 3.3 장의 핵심 운영 원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수령국과 출신국은 협약이 그 의도대로 운용되도록 하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며 국제입양의 효과적인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협력해야 한다.

552. 협약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이 더 높은 기준을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공유된 책임이나 상호 책임은 높은 수준에서의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국의 법과 절차의 폭 넓은 범위를 허용하기 위한 협약의 융통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은 어떻게 하면 협력의 의무가 충족될 것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명서는 책임의 분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³⁴⁴⁾ “상호 책임”이라는 용어는 공유된 책임의 수락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³⁴⁵⁾

553. 상호 책임의 중요한 목표는 수령국이 국제입양 수요의 일차적인 근원이며 전문적, 재정적 자원을 갖추어야 함을 인정하고, 또한 출신국의 아동보호 및 입양체계 증진을 위해 출신국을 지원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협약의 모든 보호 장치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이는 수령국이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를 통해 일부 규제를 이행하고 다음과 같은 모범관행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 예비입양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아동의 “공급”을 위해 출신국에 압력을 가할 수 없다. 압력은 공무원에게 후원이나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³⁴⁶⁾
- 바람직한 예비입양부모의 프로필 뿐 아니라 입양 대상 아동의 프로필과 숫자에 관한 출신국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입양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을 입양하는 신청서는 송부하지 않아야 한다. 비합리적으로 많은 수의 입양 신청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 인가단체의 프로필과 숫자에 관한 출신국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출신국과 협력하는 인가단체의 숫자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체계의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되는 국가와 입양을 중단하거나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³⁴⁷⁾

344)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65를 참조한다. 이 보고서의 조항 1, b)의 목적에 따르면 “계약 국가들 간 협력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협약이 입양 허용 또는 입양 목적에 적용되는 법률을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아동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국과 수령국간 책임 분배를 하는 등 일부 관할지역 문제들은 간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설명서의 단락 104, 173, 294, 307, 490 및 588을 참조한다.

345) 상기 입양 비용? 노트 62, 3, 7-8 및 17 페이지에 따르면 기존의 불건전 관행 및 아동 인신매매와 관련해 수령국의 ‘공동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에 관한 국가 관찰 유럽 네트워크(ChildONEurope), 입양 후 서비스에 관한 지침, Litografia IP, 2007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웹사이트 < www.childoneurope.org > 내 ‘이슈’ 및 ‘입양’ (2012년 4월 17일 최종 확인)에 나와 있다. 문서 24 페이지에 따르면 “입양 후 서비스는 출신국 및 수령국간 전문적인 네트워크 조정, 신뢰 및 공동 책임의 맥락 하에서 확립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3년 5월 29일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2009년 6월 22-26일 헤이그)와 관련해서 2009년 6월에 열린 Francophone 세미나에서 여러 국가들의 전문가 및 변호사, 정부 및 국제 NGO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 No 5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책임 원칙을 수용하고 지지한다. 즉, 수용국과 출신국은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절차 개발에 관한 책임을 공유해야만 한다.” 이 세미나의 결론 및 권고사항은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6)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특히 10.4 장을 참조한다.

347) 아동 학대는 개별적으로 소관 부처에 신고·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협약 제33조를 참조한다.

- 국제조약에서 입양 업무 수행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인가단체에 개선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국제입양의 현실에 대해 예비입양부모를 준비시키고 그들의 기대를 현실화해야 한다.

554. 출신국은 부패와 위법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수령국은 지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외국의 인가단체는 중앙당국에 출신국 내의 부패와 위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출신국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이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문제가 있는 수령국이나 인가단체와의 국제입양 거절
- 아동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수령국과 인가단체의 부적절한 압력에 저항
- 함께 업무를 진행할 가장 전문적인 당국과 기관만을 선정
- 출신국의 다른 기관을 통해 특정 인가단체에 대한 정보 탐색

555. 효과적인 협력과 상호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중앙당국을 위협하기도 하는 정치적인 이익보다 출신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공동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로비가 매우 강력하고 활발하며 영향력 있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수령국은 다음과 같은 국제입양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킴으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출신국 내 국내입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제입양이 필요한 건강한 아동은 소수이다. 특수 욕구 아동이 국제입양을 필요로 한다. 고아원의 아동이 항상 고아인 것은 아니다. 가정이 없는 아동이나 고아원의 아동 모두 반드시 유기되었거나 반드시 입양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556. 상호 책임은 체약국이 해당 지역에서의 인가나 허가의 수에 매우 민감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을 두고 일어나는 인가단체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57. 상호 책임은 특정 전문용어의 보편적인 이해를 위해 확장될 수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의 개념이 모든 체약국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이익”의 개념 역시 동일하게 이해되지 않아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수령국과 출신국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접근해야 하며, 협약에 입각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³⁴⁸⁾ 8장(국제입양의 비용)은 진솔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사고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348) 다른 한편으로 아동 매매에 관한 UNCRC의 선택적 규약은 조항 2 a): 아동 매매의 구성 요소에 관해 매우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 매매라 함은 보수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특정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아동을 양도하는 모든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12.1.3 정보 교환의 증진

558. 상호 책임이 협력의 한 형태로서 성공하려면 국가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정책적, 사회적, 법적, 문화적 현실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과 지속적인 정보의 교환은 서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559. 인가단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의 건전한 교환을 장려하는 이유는 이미 본 지침 7.4에서 기술하였다. 요약해서 말하면, 체약국 간의 진솔한 관계는 인가단체 운영의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며 업무의 질을 향상시킨다.

560. 인가단체를 통한 정보를 포함하는 수령국과 출신국 간의 정보 교환은 협약 절차를 향상하고 협약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가단체는 국제입양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으며 모범적 이행과 건전하지 못한 관행을 관련 당국에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건전하지 못한 관행은 인가단체에 의해 교정될 수도 있으나, 시스템적인 문제는 공공당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관련 국가의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561. 개방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선호하는 체약국은 승인의 부여나 거절, 승인의 갱신이나 갱신 거절, 입양의 지속이나 지속 거절 등과 같은 인가단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정보의 지속적인 교환은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국제입양 시스템 개선의 역동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562. 체약국과 중앙당국, 인가단체 간의 빈번한 교류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준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빈번한 교류로 인하여 그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정보의 출처와 관계없이 현재의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63. 이 같은 정보 교환은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기술은 표준시간대와 원거리에 관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정보 교환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12.1.4 개인적인 방문(출장)의 가치

564. 수령국과 출신국 내의 당국과 기관이 만나 국제입양에 대한 협력의 요소를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을 때 체약국 간의 협력은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565. 이러한 출장은 출신국과 수령국의 중앙당국과 인가단체들 간의 신뢰관계 형성 및 증진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같은 만남은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각국의 입양절차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각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제공한다.

566. 당국은 수령국이 출신국의 아동보호와 입양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인적인 방문(출장)을 이용할 수 있다.³⁴⁹⁾ 그러나 이러한 방문은 해당 수령국이 더 많은 아동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12.2 수령국 간 업무 협정

12.2.1 협력 : 중앙당국

567. 인가단체와 다른 당국이 협약의 요건 준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수령국과 출신국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과 같이, 수령국 간의 협력은 출신국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방법 등 출신국의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권장된다.³⁵⁰⁾

568. 현재 국제입양은 실제로 입양이 요구되는 아동의 수와 예비입양부모가 입양하기 원하는 수가 불균형한 상태이며 그 간극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압력 그리고 국제입양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일 수 있는 예비입양부모의 압력에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인가단체와 수령국 간 긴장을 유발한다. 그 결과 수령국과 인가단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는 연합된 기관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경쟁자처럼 행동한다.

569. 특정 출신국의 이익을 위한 수령국 간의 공적인 협력은 인가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570.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신국에서 입양활동이 미심쩍은 경우 수령국의 중앙당국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를

349) 본 지침의 12.5장을 참조한다.

350) 유럽의 경우 유럽 국가 중앙 정부들은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남미 중앙 정부들 간에 이와 유사한 유형의 회의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최초로 열렸다.

해결하기 위한 통합된 개체로 활동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공동의 미션에 합의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공동 행의를 할 수 있으며 함께 관행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다.³⁵¹⁾ 취약한 아동과 친부모, 예비입양부모의 권리와 이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 불안한 상황인 경우, 수령국들은 협약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관행을 고발하기 위하여 공동의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라토리엄(활동중단)을 위한 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

571. 수령국 간 공적인 협력의 일부 구체적인 사례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국제입양 기술지원 프로그램(Permanent Bureau's international adop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ICATA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몇몇 프로그램 운영 국가의 국제 자문단에 의존하고 있다.³⁵²⁾ 이러한 자문단은 상황을 논의하고 공통적인 접근법을 채택,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자와 만나고 있다. 소규모의 국제 전문가 집단 또한 법령 초안 작성과 법적 자문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에는 다른 출신국의 전문가 한 두 명이 참여하고 있다.

572. “우호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진 보다 규모가 큰 집단은 위기단계에 있는 과테말라에 국제입양 개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국가의 연합체”를 구성하였다.³⁵³⁾ 이 집단은 과테말라에서 직접 만났으며, 중앙당국과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외교사절단 내에 아동 또는 사회문제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다.

573. 유사한 공공협력은 비협약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 몇몇 국가에서³⁵⁴⁾ 수령국의 외교사절단은 유니세프, 중앙당국, 기타 전문가와 함께 협약비준 절차를 지원하고 개혁을 지원하였다.

574. 수령국 간의 협력은 모범 이행에 관한 문서 교류 및 인가단체 간 배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중앙당국은 인가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인가단체가 입양분야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순환은 중앙당국의 책임이다.

351) 이러한 접근법은 국가들이 개혁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국제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ICATAP) 하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352) 예, 캄보디아, 과테말라, 아이티

353) 2005 특별 위원회에서 과테말라 정부는 지원을 요청했다. 권고사안 No 22는 그러한 지원을 승인했다. 상기 2005 특별 위원회, 노트 5의 결론 및 권고사안을 참조한다.

354) 예, 아이티, 네팔 및 베트남. 베트남은 2011년 11월 1일 협약을 비준했다.

12.2.2 협력 : 인가단체

575. 중앙당국들이 특정 출신국에서 개선을 위한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경우, 중앙당국들은 자국의 인가단체를 동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동원해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출신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단체에 공동의 목표, 목적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한 방법을 알려야 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인가단체는 문제 해결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576. 협약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가단체 지원 방법으로,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인가단체의 전문적인 행동 및 윤리 강령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³⁵⁵⁾ 이 같은 강령은 수령국의 직원, 출신국 내의 대표와 협력자 뿐 아니라 기관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다.³⁵⁶⁾

577. 전문가 윤리가 기본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 윤리의 우선적인 역할은 권한, 모범 이행, 감독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강령의 채택을 통해 인가단체는 공통의 합의와 윤리 원칙을 준수하는 성숙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578. 같은 맥락에서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인가단체와 함께 훈련, 상담, 토론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기관 간의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범 이행을 증진하며 공동의 목표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발전시킨다.

579. 수령국들은 경험, 전문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인가단체 역시 다른 수령국의 기관과 경험, 전문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증진하여야 한다.³⁵⁷⁾

580.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이들이 각자의 전략적 입지에서 아동보호 조치의 초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81. 협력관계에서 수행된 업무의 영향은 모든 관행을 개선시키고 운영을 조화롭게 하며 일관된 행동을 보장하고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보다 일관된 기준, 취약한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지원 확대, 입양아동의 통합을 위한 가족지원, 설명서 개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초기 연구 프로젝트와 법률개정을 위한 협력도 이루어 질 수 있다.

355) 법률 체계가 포괄적이고 중앙 정부가 엄격히 감독하는 경우 전문가 윤리 강령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356) EurAdopt는 그러한 윤리 강령을 시행하고 있는 예이다. EurAdopt 윤리 강령, 노트 29, 조항 16 - 28을 참조한다.

357)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는 EurAdopt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입양 위원회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들이 이러한 회의에 초청받고 있다.

12.2.3 수령국 내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

582. 중앙당국과 인가단체는 성숙하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583. 수령국에서 일부 인가단체가 특정 출신국의 입양 체계에 대해 자국의 중앙당국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고, 해당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인가단체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인가단체는 출신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수령국 내의 중앙당국과 인가단체는 인가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해당 국가로부터의 입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84. 한편, 수령국 내 중앙당국은 자원 부족으로 출신국 방문이나 출신국의 중앙당국 초대, 출신국(특히 “신규” 출신국)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 지원 등에 있어 제한적이 될 수 있다.

585. 일부 인가단체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기술, 경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출신국이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인가단체와 중앙당국이 최대한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6. 수령국의 하나 이상의 인가단체가 동일한 출신국에서 업무 진행을 허가받은 경우, 수령국 내의 중앙당국은 정보와 경험의 교환 뿐 아니라 출신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단체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 의사소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출신국 내에서 혼란을 야기한 수령국에 대한 모순된 정보와 같은 “건전하지 못한 관행(bad practice)”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기관에게 동일한 문제로 질문을 받는 출신국 내의 당국들이 시간낭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587.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가단체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상임사무국에 직접 제보하거나 자국의 중앙당국에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중앙당국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12.3 모범 이행을 위한 협력

12.3.1 출신국에 대한 수령국의 압력 피하기

588. 출신국에 대한 수령국의 압력에 관한 문제는 본 지침에서 종종 언급되었다.³⁵⁸⁾ 요약하면, 너무 많은 인가단체가 제한된 수의 입양 대상 아동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 예비입양부모가 너무 많은 경우, 예비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부적합한 신청자로부터 신청서가 전달되는 경우, 그리고 국제입양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에게 신청할 경우 압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모범 이행이 권고되었다.

589. 출신국에 대한 압력은 “개발 원조”, 성금이나 기부금의 제공이 특정수의 아동이나 특정한 아동을 자국에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와 연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빈번한 전화, 빈번한 미팅 요청, 신속한 서류처리 등과 같은 중앙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도 있을 수 있다.

590. 출신국의 필요와 인가 또는 허가받은 기관의 수의 관리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각 국가의 중앙당국은 서로 긴밀히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출신국은 신뢰와 이해관계 구축을 위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인가단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591. 출신국들은 자국의 당국들에게 외국의 인가단체에 대한 의무와 최소한의 기준을 부과하도록 강력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당국은 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일부 출신국은 외국의 인가단체의 허가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³⁵⁹⁾

592. 각 외국의 인가단체로부터 필요한 파일의 수는 서면으로 된 합의서 조건에 규정함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신국에 의해 수정되어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수령국 내의 인가단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신국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593. 인가단체는 출신국의 상황과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적어도 1년에 한번 출신국을 방문할 수 있다.³⁶⁰⁾ 비록 이러한 방문이 출신국에 대한 특정 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방문은 상호 유익이 되며 권장된다. 당국들은 만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만남이 절차를 개선시키고 상황을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관계를 유지 및

358) 예를 들면 3.4.2, 4.3, 5.2.3, 6.1, 7.4.4, 8.1, 9.7 및 12.1.2 장을 참조한다.

359) 예를 들면 에콰도르의 경우 최대 8개의 국제 입양 인가단체만이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상기 노트 106을 참조한다. 케냐는 자국 인가단체 및 해외 인가단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갖고 있다. 해외 인가단체의 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출신국들의 예를 알고 싶은 경우 콜롬비아(ICBF에 의해 채택된 Lineamiento Técnico del Programa de Adopciones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를 비롯해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질문 No. 23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웹사이트 < www.icbf.gov.co > 내 “Familia y Sociedad” 및 “Programa de Adopciones y Restitución Internacional” (2012년 5월 1일 최종 확인); Costa Rica (set out in the Reglamento para los procesos de Adopción Nacional e Internacional, 조항 89에 명시되어 있으며 코스타리카 웹사이트 온라인 법률 정보 포털 < www.pgr.go.cr > (2012년 5월 1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리투아니아(국제 입양과 관련하여 해외 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웹사이트 < www.vaikoteises.lt/en > 내 ‘입양’ 및 ‘인가단체’; 2012년 5월 1일 최종 확인) 및 필리핀(부속서 2A 및 2B 참조)에 각각 나와 있다.

360) 또한 4.4 장에는 허가 요청을 하기에 앞서 인가단체가 해당 기관의 서비스가 출신국에서 요구되는지 (방문 및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모범적 이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594. 출신국이 예비입양부모 적합성 기준을 공지할 때, 출신국은 부적절한 신청자의 신청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신청이란 예비입양부모, 인가단체의 전문성이나 지식의 부족 또는 준비 미흡을 의미한다. 또한 출신국의 자원이 제한적임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령국의 인가단체나 당국들은, 필요한 경우 특정 출신국에 적합한 예비입양부모가 선택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595. 프로필에 맞지 않는 아동에 대한 신청서가 출신국으로 계속 보내지는 경우, 출신국은 이러한 신청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12.4 출신국 간 협력 또는 “수평적 협력”

596. 보편화 되고 있는 협력의 또 다른 형태는 출신국 간의 협력이다. 이 경우, 협력은 중대한 문제를 가진 출신국 간, 문제와 남용을 극복한 입양의 오랜 역사를 가진 출신국 간, 그리고 모범적 이행을 개발한 출신국 간에 이루어 질 수 있다.

597. 이러한 협력은 숨은 동기가 없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양 대상 아동”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출신국들에게 매우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통 이러한 협력은 재정적인 지원보다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모범 이행 출신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는 문제가 있는 출신국에 가서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조언 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출신국의 전문가는 아동보호체계와 입양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모범 이행 출신국으로 출장을 갈 수도 있다.

598.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ICATAP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상호 협력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이웃 국가인 칠레와 콜롬비아는 과테말라에 대한 ICATAP의 기술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그리고/혹은 유니세프는 출장비용을 제공하며 모범 이행 출신국은 전문가를 제공하고 있다. 과테말라와 칠레의 초기 협력의 결과, 이 두 국가는 후에 업무 협정에 서명하였다.

599. 캄보디아의 경우, 필리핀의 중앙당국이 ICATAP의 프로그램 하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베트남과 네팔에도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2.5 다른 형태의 협력

600. 중앙당국 간의 직접적인 미팅을 통해 예상 밖의 협력을 이룰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바로 퀘벡과 리투아니아의 프로젝트이다. 리투아니아의 공무원들이 퀘벡을 방문했을 때, 청소년 보호관련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았고 사회복지사를 위한 훈련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퀘벡의 전문가팀은 리투아니아를 방문하였고 60명의 리투아니아 사회복지사들이 입양 분야의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리투아니아의 사회복지사 훈련은 국내입양을 촉진시키는 데 목표를 뒀다는 점이다.

601. 협력의 또 다른 긍정적인 형태는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특별위원회의 뿐 아니라 국제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출신국이 참여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입양 포럼에서 많은 출신국들의 참여는 대화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인 훈련 역할을 한다.

12.6 심각한 결함 또는 폐단 사례를 다루기 위한 협력

602. 계약국은 한쪽 당사자 권리에 심각한 남용이 있거나 심각하게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해왔다.³⁶¹⁾ 이러한 경우 입양가족, 그들의 대리인, 출신국 내 파트너 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가단체는 협력의 개선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603. 이 같은 사례는 입양아동의 유괴, 매매, 밀거래와 빈번하게 연관되지만 아동이 입양가족으로 통합되어 언어를 배우고 본인의 배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입양부모에게 하게 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604.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입양이 가능하지 않으나, 불법적으로 가족에서 분리된 아동이 실제로 외국 가정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의 가족과 헤어진 슬픔을 겪는 것이 입양가족에게는 단지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더욱 복잡해진다.

605. 아동의 친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 그들은 가난하거나 학력이 높지 않다. 아동이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음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이 아동이 유괴되었고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그들은

361) 상기 2010 특별 위원회, 노트 261, 권고사안 No 2의 결론 및 권고사안을 참조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지역 당국은 그들을 도울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출신국의 공무원들은 그들을 돕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동이 선진국으로 입양될 기회를 얻었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606. 아동이 입양 대상 아동이 아니었으며 친가족으로부터 강제 분리된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입양가족이 알게 되면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일부 입양가족은 아동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수령국의 몇몇 공무원들은 아동이 수령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조언할 수도 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아동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만 용기 있게 친부모를 찾는 계획에 착수하기도 한다.³⁶²⁾

607.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때, 수령국과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친부모의 기대가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중앙당국들은 각국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일부 부모는 법적 대리인을 원할 수 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중앙당국들은 새로운 사고의 예방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

12.6.1 국제입양에서의 불법 관행을 고심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앙당국 간 협력³⁶³⁾

608. 2010년 특별위원회 회의 토론 이후,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식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구성이 권고되었다. 권고안은 호주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과 함께 비공식 실무 작업반 마련을 주선 및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남용의 특정 사례를 설명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협력을 고려하기 위해 헤이그협약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참여로 비공식 실무 작업반 마련을 주선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을 통해 체약국에 회람되어 검토될 것이다.³⁶⁴⁾

609. 비공식 실무 작업반의 주요 목표는 국제입양에서 남용의 특정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원칙과 협력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헤이그협약의 기본 원칙 특히, 아동 최선의

362) 예를 들면 J. Rollings, Love Our Way, Harper Collins, 시드니, 2008을 참조한다.

363) 다음 절에서 제안된 대책은 국제 입양과 관련한 불법 관행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접근법으로 개발된 중앙 정부들 간 협력 논의 문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문서는 2012년 4월 호주 중앙 정부가 작성했으며 웹사이트 < www.ag.gov.au > 내 '국제 입양' (2012년 2월 15일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4) 상기 2010 특별 위원회, 노트 261, 권고사안 No 2의 결론 및 권고사안을 참조한다.

이익 원칙, 안전의 원칙, 협력의 원칙의 일관된 적용은 아동 유괴, 매매, 밀거래 예방의 중심이 된다.³⁶⁵⁾

610. 협약의 목적과 원칙의 틀 안에서, 일부 원칙은 남용의 특정 상황을 설명하고 예방하기 위해 존재한다. 협력, 정보 공유, 출신국에 대한 과도한 압력 금지에 관한 일부 원칙은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방법 개발에 지침을 제공하며 심각한 사례 및 부당한 방법들에 대한 사례를 다룬다.

611. 국제입양에서 심각한 남용의 혐의나 우려가 있을 때, 이는 모두에게 특히, 관련 아동(들)에게 비극이 될 수 있다. 범죄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기밀, 사생활 보호, 관련 가족(친가족과 입양가족 모두)에게 제공되는 혹은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의 종류 등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³⁶⁶⁾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당사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각국의 법률, 자원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612. 국가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보의 공유와 입양 당사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가 간 협력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실행 가능하고 자원이 허락된다면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³⁶⁷⁾

613. 다음과 같은 협력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출신국이 제기된 우려사안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연락담당자를 지명한다.
- 특정 사례 또는 남용이 발생한 사례의 조사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와 국가에 정보를 제공한다.
- 필요하다면, 조사기관에 사례를 회부한다.
- 지속적으로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는 협약 제7조에 따라 서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도 알려야 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앙당국과 인가단체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이나 상호연락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진, 편지나 다른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 관련 당국은 국제사회봉사회와 같은 제3자를 통한 중재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 친가족과 입양가족에 상담, 중재, 법률자문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소개한다.

365) 이러한 원칙은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19, 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66) 상기 호주 중앙 정부, 노트 363, 6 페이지를 참조한다.

367) Ibid.

- 관련당국은 DNA검사가 적절하고 아동최선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1993년 헤이그협약 국가 프로파일의³⁶⁸⁾ 새로운 섹션에 따라 중앙당국은 위법의 혐의가 있거나 실제 위법이 발생한 사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술할 수 있다.

368)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에서 국가 프로필을 참조한다.

협약 제22조 (2)항에 따라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과 기관

614. 본 지침의 초점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인가 관련 사안들과 인가단체이다.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은 협약 입양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장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중앙당국의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때 협약의 원칙과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다. 본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모범 이행은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13.1 용어

615.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라는 용어는 중앙당국의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협약 제22조 (2)항에 따라 지명된 개인(또는 기관)을 설명하기 위해 본 지침에서 사용되었다.

616. 그러나 “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라는 용어는 협약 제22조 (2)항의 동일한 사람을 언급하기 위해 설명서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협약이 개인이나 기관에게 승인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다.³⁶⁹⁾ 한편, 일부 국가는 협약 제22조 (2)항의 개인을 언급할 때 “승인된 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상임이사국은 협약 제22조 (2)항의 적용과 “승인된 개인”³⁷⁰⁾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일부 국가에서 혼란스러워하므로 모범적 이행을 위한 본 지침은 이러한 특정 개인들의 역할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명서의 용어 사용을 따른다.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라는 용어는 설명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충이지만 일부국가에서는 “승인된 개인”의 의미로 사용됨을 인정한다.³⁷¹⁾

617. 미국에서, “입양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는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총괄하여 의미한다.

618.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라는 용어가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는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69) 한 가지 접근법으로 상기 2009 설문지, 노트 6의 A 절에 대한 미국의 응답을 참조한다.

370) 상기 2005 설문지, 노트 3의 질문 No 6(6)에 대한 응답을 참조한다.

371)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노트 22, 4.4 장을 참조한다.

13.2 협약 제22조의 의미와 의도

619. 협약 제22조는 협약에서 마련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를 원하는 이들과 실행에 있어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들 간의 절충 조항을 나타낸다.

620. 설명서는 다음의 논쟁을 참조하였다.

“사적” 입양 그리고 “독립” 입양이라고 불리는 입양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찬반논의가 오랜 시간 이어졌고 승인된 해결책은 적대적인 입장 간에 합리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협약 제15조-21조에 의해 일부 승인받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이 특정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중앙당국에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허락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체약국은 승인받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의 참여를 수용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체약국은 침묵을 지킴(수용을 나타내는)으로써 또는 그와 같은 참여에 반대를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위치를 취할 수 있다.³⁷²⁾

13.2.1 중앙당국 역할의 위임 : 협약 제22조 (1)항

621. 협약 제14조-21조에 의하면 중앙당국은 규정된 절차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야 한다(shall)”는 용어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나타낸다. 그러나 협약 22조 (1)항은 이러한 기능의 위임을 허가하고 있다. 중앙당국이 협약 제14-21조에 규정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이러한 기능을 다른 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1)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장에서의 중앙당국의 기능은 당해 중앙당국이 속하는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공당국 또는 제 3장의 인가단체도 수행할 수 있다.

622. 이러한 위임을 허용하는 이유는 각 체약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중앙당국에 할당된 업무가 다른 당국이나 기관, 개인에 의해 수행될 때, 위임 업무가 누구에 의해 수행되는지에 관계없이 그 책임은 여전히 위임당국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623. 설명서 1항이 다음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372)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373을 참조한다.

... 절차적 규칙은 협약의 최선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4장에 따라 부과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중앙당국에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각 체약국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 제21조 1항은 체약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의무를 위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³⁷³⁾

624.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당국 기능의 위임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협약 제22조 (1)항이 필요하지 않다. 협약은 공공당국을 제외하고(8조) 의무의 위임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7조). 협약 제7, 8조와 중앙당국이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인가단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함이 가능하도록 한 협약 제9조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협약 제22조 1항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특히, 2,4,5항은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특정 활동에 대한 특별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⁷⁴⁾

13.2.2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역할을 위임하기 위한 조건 : 협약 제22조 (2)항

625. 협약 제22조 (2)항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협약 제15-21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특정 기능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위임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체 또는 개인도 협약 제15조-21조에 정한 중앙당국의 기능을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협약의 수탁자에게 선언할 수 있다.

- a) 당해 체약국에서 요구하는 청렴성, 전문 역량, 경험 및 책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나 개인
- b) 윤리적 기준과 훈련이나 경험으로 보아 국제입양분야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단체나 개인”

626. “선언할 수 있다”는 용어는 체약국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이용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특정한 협약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한 체약국은 반드시 협약의 수탁자(네덜란드 외교부)에게 선언해야 한다.³⁷⁵⁾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373) Ibid., 단락 374.

374) Ibid., 단락 375.

375) 조항 48 d).

627. 협약 제22조 (2)항의 두 번째 조건은 체약국은 반드시 법으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약국은 반드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 대한 권한당국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28. 세 번째 조건은 협약 제22조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반드시 협약 제22조 (2)a)항과 b)항에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629. 협약 제22조 (2)a)항과 b)항에서 말하는 기준과 위에서 언급한 감독의 요건은 협약 제11조 b)항과 c)항에서 규정한 인가단체를 위한 요건의 범위와 유사하다. 다만, 인가단체는 오직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한 협약 제11조 a)항에 주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조항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3.2.2.1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위임된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제한사항

630. 협약 제22조 (2)항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되거나 지명된 개인은 협약 제15조-21조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다.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위임된 역할은 인가단체에게 허가된 역할보다 더 제한을 받는다.³⁷⁶⁾ 허가된 역할의 목록에서 협약 제14조가 제외된 것은 예비입양부모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³⁷⁷⁾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협약 제9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631. 이와 더불어, 국가가 인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처럼 국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것이다. 체약국은 필요에 따라 바람직한 제한이나 요건을 부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협약 제17조와 18조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3.2.2.2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위한 기준 : 협약 제22조 (2)a)항과 b)항

632.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인가단체의 적격기준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협약 제11조 a “인가국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그 제한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하여야 한다.”에 구속되지 않는다.

376)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1, 노트 22, 단락 216을 참조한다.

377) 협약 제14조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제출한 1993 외교 회의 작업 문서 No 139 및 170의 제안에 따라서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컨퍼런스, 17차 회의 회의록, 제 II권, 입양-협력, 321 및 336 페이지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다.

633. 그러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과 관련된 협약 제32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에 관한 일반적인 금지가 협약 하에 국제입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또한 비용과 수수료에 관한 32조 (2)항에 구속된다. 국제입양의 실제적인 비용과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해야 한다.

634. 직원과 책임자의 보수에 관한 32조 (3)항은 인가단체, 인가받지 않은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자격과 관계없이 사용된다.³⁷⁸⁾

635. 22조 (2)b)항에 따라,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청렴성, 전문적 역량, 경험과 책임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³⁷⁹⁾ 반드시 국제입양에 있어 윤리적 기준과 훈련이나 경험에 있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³⁸⁰⁾ 이것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그러므로 각 체약국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a와 b는 협약 제15-21조의 중앙당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된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특정 요건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므로 각 체약국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활동을 감독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부과될 기능의 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³⁸¹⁾

636. b는 인가단체의 책임자와 직원에게 적용하는 협약 제11조 b)항의 기준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인가단체나 인가받지 않은 기관(개인)이나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은 자율 규제를 할 수 없다.³⁸²⁾

13.2.2.3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의 감독 : 협약 제22조 (2)항과 (5)항

637.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은 권한당국의 감독 하에 있다. 체약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적절한 권한당국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378)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533을 참조한다.

379) 조항 22(2) a).

380) 조항 22(2) b).

381)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383을 참조한다. 단락 386 및 388도 참조한다.

382) Ibid., 단락 387.

638. 체약국의 법이 이러한 개인들이 입양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가하였다면, 그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권한 당국의 감독에 따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협약 제22조 (2)항은

“허가받은 승인받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은 협약 제22조 (2)항의 선언을 한 국가의 “권한당국의 감독 하”에 있다. 협약의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는지 감독할 것이다. 특히, 국제입양과 관련 된 활동에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이나 다른 이득의 금지의 원칙과 협약 제22조 a)항과 b)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³⁸³⁾

639. 이와 더불어, 협약 제15조와 16조에 규정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반드시 감독당국의 책임 하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2항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15조 및 16조에 규정된 보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앙국가 기관 또는 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640. 설명서 398항은 협약 제22조 (5)항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진술하였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협약 제15조와 16조에 규정한 보고서의 준비에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보고서의 책임이 여전히 중앙당국이나 다른 공공기관 혹은 협약 제22조(1)항에서 규정한 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장에 따라 인가단체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³⁸⁴⁾

641. 협약 제22조 (5)항의 규칙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제14조-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요건-의 이행에서 배제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중재자”로써 국제입양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13.2.2.4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 선언이 필요하다 : 협약 제22조 (2)항

383) Ibid., 단락 384.

384) Ibid., 단락 398. 단락 5는 상기 작업 문서 No 170, 노트 378, 336 페이지 내 이탈리아 및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포함되었다.

642. 협약에 따른 입양에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개입되는 것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개입 허가의 취지를 밝히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체약국에 의한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협약 제48조 d)항과 함께 읽혀졌을 때의 제22조 (2)항의 의도이다.³⁸⁵⁾

643. 체약국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국제입양 개입을 허락하는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선언의 부재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협약 제15-21조에 따라 중앙당국으로부터 위임된 기능의 수행을 허가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설명서는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협약 제15-21조에 의해 중앙당국에게 할당받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가하는 체약국의 분명한 선언이 (2)항에 따라 요구된다. 그러므로 체약국의 침묵은 중앙당국이 할당한 업무 수행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⁸⁶⁾

644. 이러한 선언에 대한 시간적인 제한은 없다. 비준이나 승인의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비록 협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같은 선언은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지만 수탁자에게 공지해야 한다.³⁸⁷⁾

13.2.2.5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에 공지 : 협약 제22조 (3)항

645. (3)항은 체약국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를 국제사법회의의 사무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 규정된 선언을 하는 체약국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에 그 단체 및 개인의 명칭과 주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646. 이러한 규칙은 협약 제13조에서 인가단체를 위해 규정한 규칙과 유사하다.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에 공지하는 목적은 정보가 헤이그협약 체약국과 협약 당사국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³⁸⁸⁾ 협약이 협약의 목적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협력 특히, 국가 간 그리고 국가와 사무국 간의 협력을 매우 강조함에 따라,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들로부터 국제입양 업무수행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에 정보를

385)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380을 참조한다.

386) Ibid., 단락 382.

387) Ibid., 단락 381.

388) Ibid., 단락 391.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양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협약 제33조에 의해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³⁸⁹⁾

647.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자세한 연락처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혼란을 피하고 모범적 이행을 위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의 국제입양 참여를 허가한 체약국은 협약 제22조 (2)항에 의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과 협약 제10조에 의해 승인되고 13조에 의해 공지된 인가단체의 공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과 인가단체와의 혼란은 방지되어야 한다.

13.2.3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개입 금지 : 협약 제22조 (4)항

648. 국가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국제입양 업무수행을 허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³⁹⁰⁾ 출신국은 협약 제22조 (4)항에 따른 선언을 통해 수령국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아동의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³⁹¹⁾

649. (4)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의 입양은 중앙당국의 기능이 (1)항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 협약의 수탁자에게 선언할 수 있다.”

650. 협약 제22조 (4)항은 출신국에 적용되고, 또는 수령국이 특정한 입양의 출신국인 경우 수령국에도 적용된다. “그 영토 내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언급은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651. 협약 제22조 (4)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침묵은 수용을 의미한다. 출신국이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출신국의 아동을 국제입양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89) Ibid., 단락 392.

390) Ibid., 단락 373.

391)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마카오 및 홍콩 SAR),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헝가리, 몬테네그로, 파나마, 폴란드, 포르투갈 및 베네수엘라는 협약 조항 22(4) 하에서 선언한 출신국들이다. 일부 수령국도 선언을 했다: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퀘벡),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리히테슈타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 (2012년 5월 1일 최종 확인, 협약 계약국 목록 및 선언문은 헤이그 컨퍼런스 웹사이트 < www.hcch.net > 내 ‘국제입양’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항에 따르면, 수령국의 중앙당국 기능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국가의 침묵은 그 영토 내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의 국제입양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⁹²⁾

652. 그러므로 출신국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개입을 허가할 의도가 있지 않는 한, 반드시 협약의 수탁자에게 선언해야 한다. 선언에 부과된 시간제한은 없다. 그러므로 승인이나 비준의 시기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 질 수 있다. 비록 협약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라도 선언을 철회할 수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철회 역시 수탁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³⁹³⁾

653. 체약국이 협약 제22조 (2)항이나 (4)항의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협약 제22조 (2)항의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해당 국가에서 협약 기능 수행을 허가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선언 없이는 허가도 없다. 그러나 협약 제22조 (4)항 선언의 경우, 출신국이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국제입양에 참여함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언이 없다는 것은 허가 되었다는 것이다.

654. 그러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임명한 수령국과 협약 제22조 (4)항의 선언을 한 출신국 간에 여전히 입양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명백하게 해야 한다. 선언의 효과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특정 출신국의 국제입양에 개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인가단체나 중앙당국만이 선언을 한 출신국의 입양에 개입할 수 있다.³⁹⁴⁾

655. 인가단체와 달리, 협약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다른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지하지도 않고 있다. 설명서 397항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인가단체처럼 협약 제12조의 양쪽 체약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는 동일한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³⁹⁵⁾

392)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396을 참조한다.

393) Ibid., 단락 394.

394) 상기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1, 노트 22, 단락 220을 참조한다.

395) 상기 설명서, 노트 19, 단락 397을 참조한다.

부속서



부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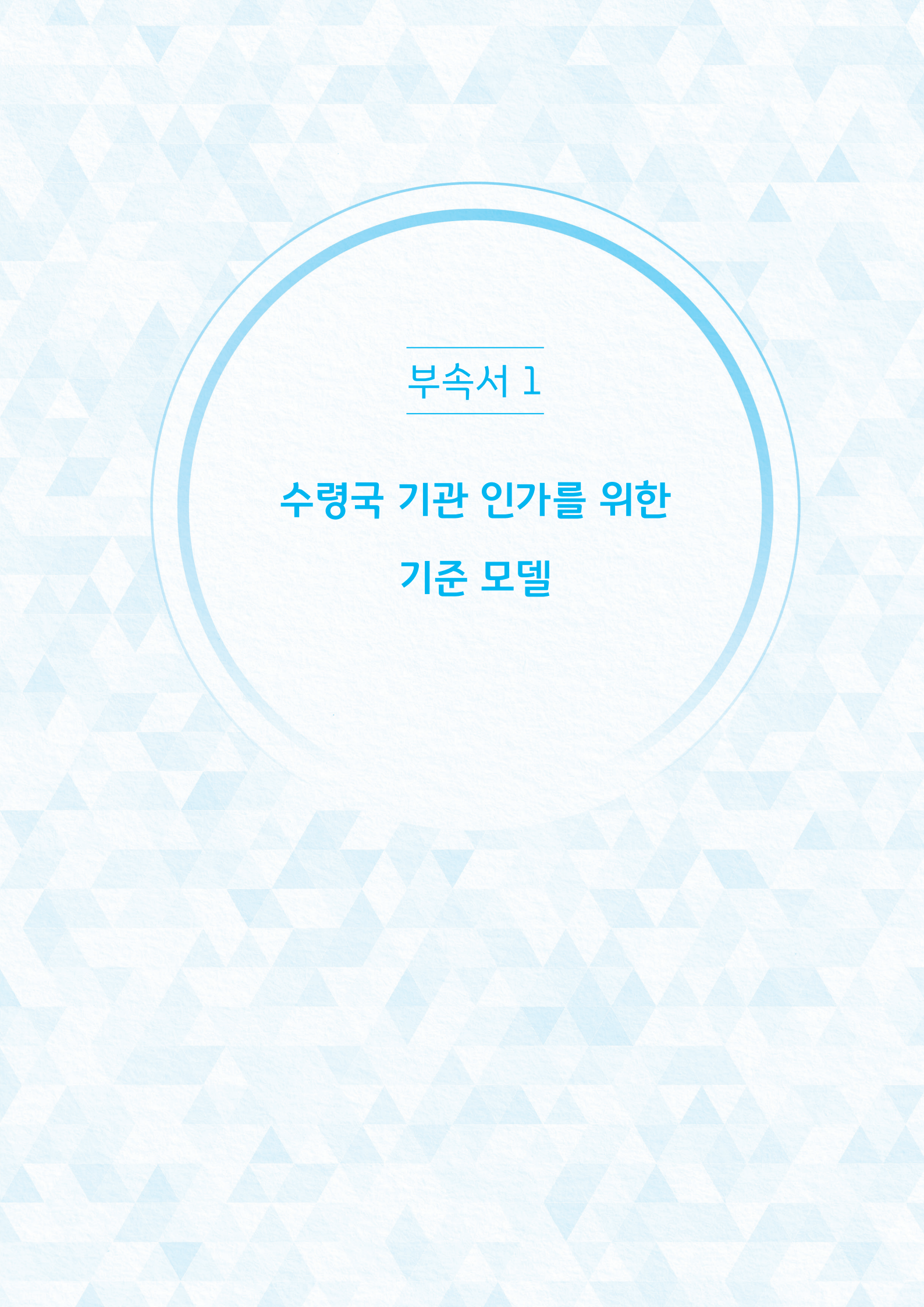
부속서 1 : 수령국 기관 인가를 위한 기준 모델

부속서 2 : 출신국 관점

부속서 2A 외국 입양기관 인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필리핀)

부속서 2B 국제입양 연락서비스에 대한 지침(필리핀)

부속서 3 : 수령국 관점



부속서 1

수령국 기관 인가를 위한 기준 모델

헤이그협약에 따른 역할과 의무 수행을 위한 수령국 기관 인가를 위한 기준 모델

1. 지도 원칙

아동복지, 아동보호와 국제입양 분야에서 기본적인 주춧돌로 폭넓게 인식되는 두 가지 국제문서가 있다.

- 1993년 헤이그협약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 두 국제문서에 규정된 원칙과 의무는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반 역할을 한다.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2에 규정된 인가 원칙은 인가단체가 협약의무를 준수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헤이그협약 하의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가는 협약에 규정된 원칙과 요건 그리고 인가 원칙을 지지하는 기관에만 주어져야 한다.

인가를 위한 기준 모델은 인가를 부여받은 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그 기준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2. 핵심 원칙

2.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1993년 헤이그협약 제1조)

국제입양은 가족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 조치이다. 아동의 행복, 권리, 최선의 이익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른 이익보다 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예비입양부모, 시설, 기관, 당국의 이익과 권리는 아동 최선의 이익 다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2 보충성의 원칙(1993년 헤이그협약 전문, 협약 제4조 b)항)

- a) 아동 유기 예방은 아동보호 조치로서 우선순위로 다루어진다.
- b) 아동에게 가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대안적 해결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입양이 고려될 때, 이 조치는 다른 영구적인 배치와 비교되어야 한다. 가족배치는 시설배치보다 우선시되며 적합한 국내가정으로의 배치는 국제가정으로의 배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 c) 출신국 내 배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이는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찾는 가능성을 무기한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은 출신국 내의 배치 가능성이 모두 소진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3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1993년 헤이그협약 제1,7,9조)

협약의 기본적인 목표는 입양될 아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약 절차에 연관된 모든 기관과 개인 간의 협력은 협약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3. 인가(1993년 헤이그협약 제3장)

3.1 인가 신청

기관은 기관이 위치한 국가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국가법에 준하여야 하며 권한당국이 정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3.2 입양분야에서의 역할

- a) 인가 서류는 기관에 위임된 기능과 의무를 명시하여야하며 자국과 다른 국가 내 입양분야의 관련 당국과 기타 기관의 역할 및 한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입양 전, 입양절차 동안, 입양 후 단계에서 예비입양부모, 입양가족과 입양인에 대한 인가단체의 책임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b) 일단 인가가 되면, 인가단체가 위치한 국가의 중앙당국은 협약 제13조에 따라 인가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전달해야 한다. 인가단체가 위치한 국가의 중앙당국은 인가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관리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인가단체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인가의 부여

- a) 인가는 위임된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증명된 기관에만 부여될 수 있다. 기관은 또한 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윤리적인 방법과 아동중심의 접근법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b) 기관은 인가를 받을 때까지 협약에 따른 기능을 이행 할 수 없다.

3.4 허가의 부여

- a) 인가단체는 출신국과 수령국에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출신국 내에서 또는 출신국과 공동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
- b) 출신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 인가단체는 출신국에서 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출신국의 국제입양 관련법과 절차 특히, 입양 대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안전장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3.5 인가 기간

인가기간은 인가 결정문에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다.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인가 갱신에 관한 행정적 업무를 줄이기 위해, 인가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이다.

3.6 철회 또는 종료

인가단체가 헤이그협약의 목적과 원칙, 출신국의 법과 규제, 승인의 요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는 언제든지 권한당국에 의해 철회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4. 조직

4.1 법률과의 관계

인가단체의 목적과 조직구조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적절한 수준에서 승인되어 기관의 정관, 헌장 또는 승인국의 법을 준수하는 유사한 문서에 규정되어야 한다. 인가단체는 반드시 인가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비영리 기구로 등록, 허가 또는 법인설립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의 업무 목적과 방법은 인가 또는 허가를 부여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2 조사(1993년 헤이그협약 제11조 c)항)

인가단체는 언제라도 재정과 기능에 대한 권한당국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인가를 부여한 국가의 권한당국은 권한범위 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인가단체는 조사당국이 해당 단체의 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4.3 관리(1993년 헤이그협약 제10조, 11조)

인가단체는 정책과 전략 수립, 프로그램 결정, 개발 안내, 리더십을 제공하는 관리(기획)팀이 있어야 한다. 관리(기획)팀은 인가단체의 정책과 활동이 협약과 인가 및 허가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기획)팀의 구성원은 국제입양 업무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늘 최신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반드시 명확하게 관리구조를 규정해야 하며 위임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직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4.4 전문적 역량(1993년 헤이그협약 제11조, 22조)

a) 대리인, 해외 협력자를 포함한 직원의 자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이 요구된다.

- 높은 윤리 기준
- 국제입양에 적용되는 원칙, 협약, 법, 규정에 관한 지식
- 적합한 이론 및 실질적 훈련
- 다른 문화에도 잘 적응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
-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분야에서의 역량
- 행정적인 능력과 리더십

b) 모든 업무에서 높은 기준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무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c) 출신국 내 대리인 선발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리인의 전문적 역량은 선발과정 동안 권한당국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4.5 전문 자문 서비스

인가단체는 위임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의료적, 법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즉각적 이익을 위해 최소한 위탁을 통해서라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재정

5.1 비영리 목적(1993년 헤이그협약 제11조)

- a) 기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밝히는 방침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관은 또한 인가국과 활동 허가국의 직원과 상담자의 급여에 관한 방침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직원, 대리인, 상담가에게 제공하는 급여와 수수료는 관련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출신국에서 입양아동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개인 뿐 아니라 사례를 관리하는 수령국 직원의 보수 역시 입양 건수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 b) 기관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행한 업무와 상응해야 한다.
- c) 예비입양부모에게 부과한 수수료와 비용은 입양 업무 수행에 관련된 비용과 운영비를 반영해야 한다.

5.2 재정 안정성

입양 프로그램 중단이 일시적인 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인가단체는 동 단체의 의무 이행과 장기간의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예비금(적립금)과 부채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투명성

- a) 인가단체는 재정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수령된 수수료와 그 사용목적에 관한 정보는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나 양부모에 대한 기밀정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6.2와 6.8 a)을 참고한다.

- b) 인가단체는 반드시 대리인과 협력자와 같은 파트너에게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돈의 목적과 사용에 관한 만족할만한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협력은 중단된다.
- c) 인가단체는 인가 국가의 권한당국에 재정관리와 현황, 감사받은 연례 회계장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계장부에는 입양 업무와 명백히 분리된 기타 활동(멤버십 활동, 개발 원조, 협력 사업, 관련 프로그램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5.4 책임성(1993년 헤이그협약 제4조d(4), 8조, 32조)

- a) 인가단체는 인가 국가의 법규가 인정하는 재무관리, 부기,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출신국에서의 금융거래(법적 수수료 비용, 아동 케어 비용 등)를 포함한 입양 업무에 대한 금융거래의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거래는 정부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 b) 각 입양에 관련된 비용은 인가단체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특히, 출신국을 위한 비용은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에 있을 때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

5.5 예측 가능성

비용과 수수료의 총합 결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입양절차 전에 확정되고 예비입양부모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수수료와 비용이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는 입양절차 중에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사유와 이후 절차는 반드시 사전에 상의되어야 한다. 6.2를 참고하라.

5.6 개발원조, 협력 사업, 성금, 기부금

- a) 개발원조, 협력 사업, 성금 또는 기부금은 반드시 입양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 b) 개발원조, 협력 사업, 성금 또는 기부금은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출신국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의 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특정 입양 또는 입양의 수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 c) 인가단체는 진행 중인 입양절차와 관련된 시설 또는 개인에 직접적인 기부금을 내지 않도록 예비입양부모에게 조언해야 한다. 의료기구, 장난감, 훈련 및 교육자료 등과 같은 비품의 기부는 허용될 수 있다.

6. 입양서비스(1993년 헤이그협약 제2-4장)

6.1 서비스의 이용

- a) 인가단체는 인가 조건에 따라 비차별 원칙을 기반으로 입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협약과 관련국의 법규에 명시된 입양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모든 신청자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b) 그러나 인가단체는 출신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출신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입양을 위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c) 입양신청자가 다수의 국가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d)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가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자가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는 보장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2 정보 (1993년 헤이그협약 제5조, 17조)

인가단체는 입양신청자에게 국제입양 원칙, 입양요건과 가능성, 대기시간, 위험과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신청자, 기관과 협력 파트너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신청자와 그들의 협력 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초기단계에서 절차, 신청자나 기관에 의한 입양절차 중단의 법적·재정적 결과에 대해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인가단체는 신청자, 협력자와 관련 당국의 모든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6.3 예비입양부모의 준비 (1993년 헤이그협약 제5조)

인가단체는 인가단체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단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입양 신청자가 적절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재의 경향, 도전과제 뿐 아니라 국제입양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4 입양상담 (1993년 헤이그협약 제5조, 15조, 17조)

입양상담은 관련국 권한당국에 의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인가단체는 이러한 기준이 준수되고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5 결연 상담

예비입양부모는 결연을 수락하기 전 결연이 제안된 아동에 대하여 인가단체의 상담(조언, 정보, 지원)을 받아야 한다.

6.6 입양 과정 또는 절차 (1993년 헤이그협약 제9조b, 제4장 제35조)

- a) 인가단체는 입양절차 동안 분명하게 규정된 입양정책과 서비스의 체계적인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높은 업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반드시 입양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기획, 관리,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한다.
- b) 인가단체는 국제입양의 우선적인 목표(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정과의 결연)를 고려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입양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러한 목적의 양립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 c)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의 준수를 반드시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 d) 인가단체는 아동이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동의 안녕이 보호됨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인가단체는 미래의 입양부모가 아동의 출신국을 방문하여 아동을 데리고 갈 것을 권장해야 한다.

6.7 입양 사후 서비스 (1993년 헤이그협약 제9조c), 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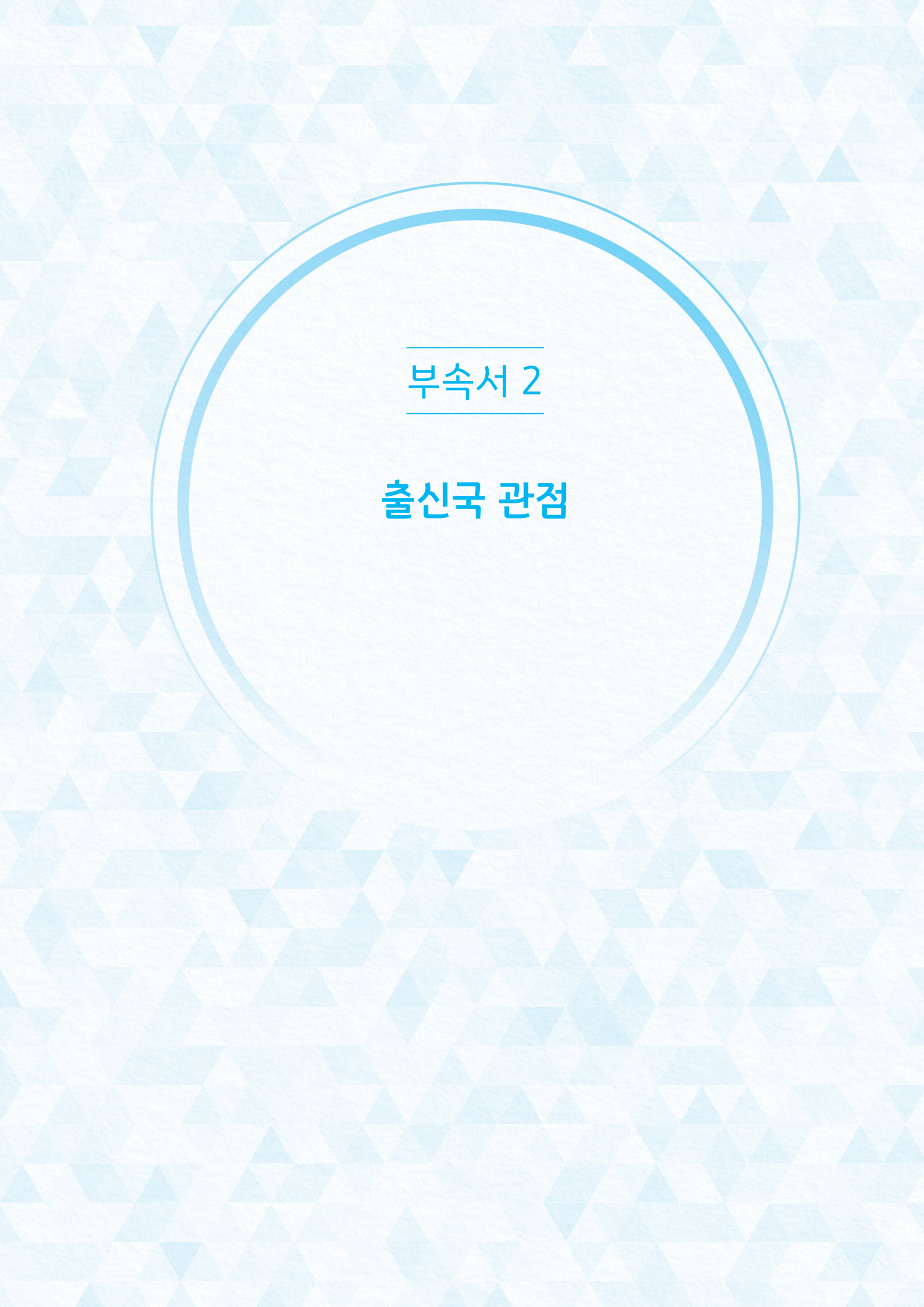
- a) 인가단체는 입양이 완료된 후 입양가정과 입양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절차는 입양아동이 성장하고, 성인기와 독립시기에 이르는 등의 다양한 단계에 따른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입양 사후 서비스의 주요한 목적은 입양인의 윤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b) 인가단체는 입양부모가 출신국의 입양사후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6.8 서류 (1993년 헤이그협약 제4장, 제30조, 31조)

- a) 인가단체는 안전한 방법으로 고객의 기밀정보를 유지하면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정보는 국내법과 국제기구에 따라 반드시 보호·보존해야 한다.
- b) 입양사례 관련 서류는 관련국의 법에 따라 보존되어야 하며 최소 75년 간 보존해야 한다. 서류는 입양인의 요청에 의해 열람될 수 있다. 기관이 입양 업무를 중단한 경우라도, 입양기록의 지속적인 보존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c) 이 같은 서류는 입양 당사자의 기밀성을 위반하지 않는 연구촉진에 사용될 수 있다. 인가단체는 입양관행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촉진시켜야 한다.

6.9 윤리 규정

인가단체는 국제기구와 국내법에 부합하는 윤리규칙(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포럼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인가단체와 국제입양의 이행 및 기준 개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부속서 2

출신국 관점

1. 출신국 : 콜롬비아

1.1 전후(then and now) : 콜롬비아가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인가단체에 대한 상황을 요약

콜롬비아는 1993년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후 1998년에 비준하였다. 협약은 1998년에 발효되었다. 협약에 서명하기 전에도, 콜롬비아는 10년 이상의 국제입양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Instituto Colombiano de Bienestar Familiar (ICBF)는 입양에 관한 중앙당국이다.

- ▶ 일반적으로 콜롬비아의 협약 비준은 다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제입양 프로그램(중앙당국과 인가단체 수준)의 조직과 감독
 - 절차적인 안전장치의 개선
 - 콜롬비아 입양절차의 최종 서류인 협약 제23조 증명서의 발급을 통해 수령국의 국적을 획득하는 것을 촉진
 - 인가단체를 위해 일하는 개인(현재는 반드시 인가단체의 법적 대리인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의 감독과 투명성 제고
 - 입양 사후조치의 감독과 모니터링 향상

인가단체의 평가와 허가는 애초에 ICBF 내의 보호부서(Protection Division)의 책임이었다. 오늘날은 ICBF의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도움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허가 부여, 갱신, 중단, 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인가단체에 대한 내부 정보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내입양단체의 전문가들이 예비입양부모와 함께 준비작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입양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업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ICBF는 Lineamientos Tecnicos del Programa de Adopciones이라는 기술 지침을 통해 콜롬비아 내 인가단체의 운영과 인가단체 법적 대리인의 활동을 감독한다.

이 지침은 법적 대리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중앙당국 앞에서 인가단체를 대리하고 둘 간의 의사소통 고리를 제공. 대리인은 반드시 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해야 하며, ICBF 앞에서 가족을 대리하고 후속 조치를 제공해야 함.
- 가족의 결연제안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아동 준비를 위한 가족정보 통지(Notice of Family Information for Preparing the Child)” 및 입양위원회가 요구하는 준비 자료와 함께 ICBF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
- 입양가족이 콜롬비아에 머무르는 동안 가족에게 입양절차에 대한 안내와 조언 제공
- 입양사후 보고서 취합 및 ICBF 제출
- 협력과 절차의 이행 강화를 위해 ICBF가 소집한 회의 참석

ICBF는 인가단체가 위에서 언급한 기능 외에 숙박, 교통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ICBF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가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BF는 수령국의 중앙당국과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인가단체가 예비입양부모에게 전가하는 실제적인 비용에 대해 파악하고 평가 할 수 있게 된다.

인가 정책과 관련하여, 콜롬비아 법은 기관이 2년 동안의 서비스 필요성에 근거하여 허가를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현지 인가단체(허가 시설) 8곳과 외국의 인가단체 64곳이 콜롬비아에서 업무 수행 허가를 받았다.

1.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입양기관은 국제입양 서비스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중앙당국이 부여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당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콜롬비아 입양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기준 설정
- 절차 조사, 모니터링, 감독
- 아동의 입양적합성 결정(변호사에 의해 결정)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
- 가족의 적합성 결정³⁹⁶⁾
- 콜롬비아 허가 기관에서 아동과 입양가족간의 공식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입양가족에 통합이 적절할 것인지 결정.
-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을 위해 협약 제23조에 따른 인증서(certificates of compliance) 발급
- 입양 후 모니터링과 감독, 정보시스템의 유지와 업데이트

1.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ICBF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인가단체와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해왔다.

- 명확한 서면 규정
- 신뢰의 분위기 조성
법적 대리인과 기관 운영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예를 들어, 이들을 지침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
- 중앙당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인가단체 참여
- 개방적이며 존중하는 태도

ICBF는 대리인에게 입양프로그램의 변경사항 일체와 업데이트 사항을 서면으로 공지한다. 편의상 ICBF의 웹사이트에 공지할 수 있다. ICBF는 콜롬비아의 입양절차 중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개 비용에 주안점을 두고 외국의 인가단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ICBF 내 입양팀(Adoption Team)은 외국의 인가단체와 연락하고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담당하는 3명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1.5 국내기관 인가

396) ICBF의 전문가가 아동을 권리를 대변하고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경우 인가단체는 입양 가정의 적합성도 결정할 수 있다.

콜롬비아에는 입양 위원회를 통해 입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허가 기관이 8개가 있다. 허가 기관은 예비입양부모를 국내외에서 선정하고, 2006 년 법 1098, 1991 년 법령 2263, 1996 년 법령 2241 및 기술 지침 (2007년 결의문 2310, 2008년 결의문 4694 및 2009 년 결의문 2660에서 합의됨)에 따라 아동을 결연하는 것을 담당한다.

1.6 외국 인가단체의 허가 (제12조)

인가단체는 ‘아동 청소년 강령(Code of Infancy and Adolescence)’과 기술 지침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문서에 따라 기관의 허가는 서비스의 필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2년에 한번 씩 갱신된다.

2009년, 외국의 인가단체 허가를 위한 전문 위원회가 ICBF 내에 신설되었다. 위원회의 기능은 허가의 부여, 갱신, 중지와 철회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각 기관이 임명한 지역의 법적 대리인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콜롬비아에서의 활동을 허가받기 위해, 외국의 인가단체는 ICBF의 장에게 성실하게 작성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침에 규정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술 지침은 허가 신청 절차, 콜롬비아 내 법적 대리인의 기능, ICBF가 허가한 기관의 감독, ICBF의 내부절차와 허가책임을 갖는 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허가를 위해, 기관은 반드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콜롬비아 아동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또는 계획(예방 또는 특별 보호 성격의)을 위한 ICBF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출신국 내의 특별한 도전

출신국으로써 콜롬비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입양절차의 적절한 비용과 가족 방문 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의 감축, 규제, 모니터링(수령국의 중앙당국과 ICBF가 운영하는 숙박을 위한 지침을 출판할 예정이다)
- (i) 해외 콜롬비아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ii) 2010년 협력과 조정의 촉진을 목적으로 콜롬비아 내 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앙당국들의 네트워크 구축 (iii) ICBF 홈페이지, 다른 중앙당국 웹사이트에 인가단체가 부과한 수수료를 공지함으로 콜롬비아 내 입양 시스템에 관한 정보 보급
- 예비입양부모가 자신들의 신청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 검토

- 중앙당국이나 외국의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입양에 지역 중재자 개입 금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중앙당국이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중개인의 참여는 불필요하다. 지역 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존재는 ICBF에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 정보가 다른 채널을 통해 이미 전달된 경우 그들은 구두로 입양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ICBF는 협약 제23조에 따른 인증서(certificates of compliance) 발행 전에 수령국과 출신국 내 입양절차 수행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1.8 수령국의 특정과제

ICBF는 각국의 법을 조정, 인가단체의 감독, 모니터링 그리고 높은 수준의 협약준수를 위한 이행을 위해 중앙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별히, 다음을 통해 중앙당국의 참여와 협력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이다.

- 콜롬비아 아동의 현재의 필요에 근거한 입양정책 개발
- 입양절차 수행 기관에 대한 공동 인가 및 감독
- 불만 처리를 위한 공동협력시스템 구축
- 아동과 가족 지원 분야의 협력 규제

콜롬비아의 또 다른 도전과제는 중앙 당국 간 비용 문제를 조정하여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예비입양부모와 입양기관의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해준다. 특히, 비용을 규제하는 문제는 중앙당국이 입양프로그램 운영의 행정적인 부분 전체를 인가단체에 완전히 위임한 국가에서 발생한다.

더 큰 도전과제는 중앙당국이 입양프로그램(예비입양부모의 적합성 평가와 입양사후 후속 조치 포함)을 인가단체에 위임한 국가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특정 기관들은 본부나 지역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

- 가족은 심리사회연구와 입양사후조치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위치 선정에서 기관의 제안을 따르게 된다.

- 가족을 위한 지원은 비인간적이고, 주요비용을 차지하며 때때로 인터넷이나 영상통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ICBF는 외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콜롬비아 Nos Une”라는 프로그램의 부분인 “Redis Colombia” 포털에 입양모듈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앙당국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2. 출신국 : 리투아니아

2.1 전후(then and now) : 리투아니아가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현재의 인가단체 관련 상황 요약

리투아니아는 1997년에 1993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고 중앙당국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서 2000년 까지는 외국가정의 입양신청서가 리투아니아 당국으로 전달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 예비입양부모는 자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를 통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일부 예비입양부모는 외국 또는 심지어 리투아니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2000년 사회보장&노동부(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 산하 입양서비스기관(Adoption Service)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외국의 인가단체와 개인(private person)의 활동의 통제 방법이었다. 리투아니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인가단체와 양자협약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입양절차의 일부 요건이 변경되었다. 특히 사적입양이 금지되었고 예비입양부모(인가단체가 아니라)는 대기명단에 개인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리투아니아 중앙당국은 이탈리아 중앙당국에게 리투아니아에서 활동하는 인가단체의 수가 4곳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메커니즘을 통제하는 통일된 국가 시스템이 없고 계약국이 되기 전 미국의 관행은 각 주의 법과 허가 당국에 의존하고 있어 더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2005년 6월 3일, 사회보장노동부 장관(Minister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은 리투아니아의 국제입양에 관한 외국기관의 허가 절차에 관한 명령을 승인하였다. 이 명령은 헤이그협약 12조가 요구하는 외국의 인가된 입양기관에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 허가의 갱신, 중지, 철회, 종료 절차, 외국의 인가단체의 허가를 확인하는 증명서 발행, 등록 절차와 허가받은 외국의 인가단체의 기능,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명령은 외국의 인가단체의 상황과 기능을 매우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중앙당국은 외국의 인가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2.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리투아니아에는 국내 인가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리투아니아 중앙당국에서 허가한 외국의 인가단체만이 활동하고 있다. 인가단체의 수는 2006년 이래로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외국 인가단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2006년 7월 17일 사회보장노동부 장관은 2006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의 인가단체의 허가 신청은 수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공표하였다. 그 당시 리투아니아에는 14개의 인가단체가 존재하였다. 이들의 활동과 의무는 위에 언급한 명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리투아니아 중앙당국은 허가를 중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의 입양 대상 아동 중 많은 수가 특수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연장아(매년 약 20명의 6세 이하 아동들이 외국 가정에 입양되며 그들 중 80%의 아동이 형제자매와 함께 입양된다), 의료적 치료와 집중적인 영구 보살핌이 필요한 심각한 장애아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형제자매이다.

입양 대상 아동이 아주 어린 경우에는 국내입양 되므로 국내입양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입양 되는 6세 미만 아동의 수는 매우 적다. 어리고 건강한 아동만을 입양하기 원하는 외국 예비입양부모의 대기시간(4-5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노동부 장관은 2006년 7월 17일 리투아니아와 업무를 수행할 국가들이 허가받은 외국의 인가단체나 중앙당국을 통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6세 이하 아동의 입양신청은 2가정 이하의 신청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 중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은

- 국제입양의 조직 (협약 제4,7,9,16,23조에 따라)
- 외국의 인가단체 허가, 이들의 활동 통제, 입양과 아동권리 보호 분야의 외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와 협력

리투아니아의 국제입양에 관한 외국기관의 허가 절차에 관한 명령에 따라, 허가된 외국의 인가단체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입양절차 동안 예비입양부모를 대리한다.
- 리투아니아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절차와 요건을 공지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 예비입양부모들이 해외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리투아니아 시민 및 아동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 명부에 등록되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돕고, 이러한 신청자들이 협약15조에 준하여 입양을 잘 준비하고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인한다.
- 예비입양부모에게 아동의 사회적 위상, 발달과 건강에 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아동의 수령국 입국과 수령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허가받았는지 또는 받을 것인지 확인한다.
- 입양서비스기관(Adoption Service)과 입양절차와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입양서비스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승인된 특별한 필요를 가진 국제입양에 적합한 아동을 위한 절차를 따른다.
- 리투아니아 입양서비스기관에 입양된 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입양 후 최초 2년 간-6개월 마다, 이후 2년 간-1년 마다, 4년 후- 입양서비스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에는 입양아동의 입양가정 통합, 생활여건, 발달과 건강, 시각자료 등이 포함된다.

허가된 외국의 인가단체는 적절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시한을 어기지 않고 다음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리투아니아의 법과 국제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불법적인 재정적 이익이나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수를 얻어서는 안 된다.
- 입양서비스기관에 허가된 대리인 변경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 매년 1월 31일 전에 지난 1년 간 리투아니아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입양 서비스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

수령국은 먼저 입양 작업을 시작하기 전 출신국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협력과 소통은 수령국과 출신국이 한 국가의 필요와 다른 국가의 가능성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 리투아니아의 중앙당국은 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상대국가에게 법률 부분의 변화 등 현황을 전달하고 있다.

2.5 국내기관의 인가

리투아니아에는 국내기관에 대한 인가 절차가 없다.

2.6 외국 인가단체의 허가

외국의 인가단체의 선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외국기관의 상황, 수령국 중앙당국의 권고
- 국제입양 분야에서의 경험
- 리투아니아의 국제입양 분야에서의 경험
- 과거 입양한 아동의 프로필, 특별한 필요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 리투아니아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예비입양부모의 수
- 수령국의 입양절차(예를 들어, 수령국에서 예비입양부모가 중앙당국 또는 인가단체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외국기관 여러 곳에 대해 허가를 줄 필요가 없다.(예.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경우 허가받은 기간은 한곳임) 그러나 수령국이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절차를 인가단체들을 통해서만 밟도록 한다면, 여러 곳의 외국기관에 허가를 주어야 한다(예. 이탈리아와 미국의 경우 4개의 허가 기관이 있음).
- 예비입양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수수료
- 리투아니아 내의 외국기관의 대리인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입양위원회는 만일 외국의 인가단체가 맡겨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해당 기관을 추천한다. 리투아니아 중앙당국의 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고려하여 외국의

인가단체에 리투아니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허가된 외국의 인가단체는 리투아니아 중앙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매년, 1년 31일 이전에, 기관은 리투아니아 내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당국의 장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나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리투아니아 내 외국 기관의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허가된 외국의 인가단체의 허가를 중지할 수 있다. 외국의 인가단체의 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허가가 철회되거나 중단된 사례는 없었다.

2.7 출신국의 특정과제

허가법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왔다.

2.8 수령국의 특정 과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가단체는 리투아니아에서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중 하나는 재정 보고서이다. 이러한 정보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리투아니아 중앙당국은 웹사이트에서 이에 관한 수령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긍정적인 반응은 없었다. 통제는 양국이 더 원활한 소통을 하고 인가 발급 전에 가능한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3. 출신국 : 필리핀

3.1 전후(then and now) : 필리핀이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현재 인가단체의 상황에 관한 요약

필리핀은 1995년 7월 17일에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6년 7월 2일에 비준을 준비하면서, 필리핀은 협약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착수하였다.

1995년 6월 7일, 필리핀 의회는 1993 헤이그협약에 일치하는 1995년 국제입양법(법률 8043)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제입양위원회(International Adoption Board, ICAB)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였다. 국제입양 실행 시스템이 협약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ICAB는 1995년 12월 26일 법률 8043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1996년 11월 1일 협약 발효 전, 필리핀 국제입양절차는 사회복지개발부 장관실 직속의 필리핀 국제입양부(PIAU)가 수행하였다. 수 년 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PIAU는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예비입양부모, 수령국의 인가단체)과 그들의 현지 대리인 인가에 대한 지침을 구축하였다. 지역 아동시설(Child Care)과 배치기관³⁹⁷⁾ 운영에 대한 인가는 계속 사회복지개발부의 권한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입양위원회가 외국의 입양기관 인가 절차를 시작하였다. PIAU의 협약 전 지침을 통합 및 개선은 문서가 1996년 국제입양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는 현재 *외국의 입양기관의 승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Foreign Adoption Agencies)*으로 알려져 있다(부속서 2A).

필리핀은 자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려는 외국의 인가단체에 대한 훌륭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허가를 신청하는 기관은 12조에 따라 허가되기 전에 먼저 필리핀의 인가 절차 따라야한다.

3.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유엔아동권리협약, 1993년 헤이그협약, 기타 국제법과 협약에 의해 규정된 아동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필리핀 공화국 법 8043호는 다음과 같이 국가 정책을 선언하였다.

“모든 방임된 그리고 유기된 아동에게 성장과 발달의 기회 뿐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양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임/유기된 모든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 내 가정으로 아동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동이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 또는 외국인에게 입양될 수 없어 국제입양을 고려해야 한다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경우에만 국제입양이 허용됨을 보장하는 조치를 국가에서 취해야 한다.”

외국인 가정에 필리핀 아동을 배치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의 개입을 인정하는 법은 아동보호와 배치 활동에 종사하는 NGO기구 뿐 아니라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아동양육 및 배치기관, 입양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수립하였다.

ICAB는 외국의 입양기관의 수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특정국의 인가된 입양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397) 필리핀의 경우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2가지 유형의 기관이 있다. 한편으로 '아동보호기관'은 버려지거나 방치되거나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입양추천기관'은 아동을 위한 입양 가정을 모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경우, 새로운 인가 신청을 중단하도록 한다. 한 수령국에서 하나의 인가단체만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는 수령국의 상황과 외국입양기관의 지역적으로 커버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수령국의 다른 입양기관을 인가할 수 있다. 국제입양이 가능한 아동의 수는 적고 대기부모의 수는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사무국의 요청 시 인가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의 기능과 권한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선별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국제입양에 관한 필리핀의 법을 준수해야 하며 앞서 말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공지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규정(시행규칙 6장 8절 e항)한 입양사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ICAB는 국제협력기관을 포함하여 105개의 협력기관과 일하고 있다. 50개의 중앙당국, 50개의 NGO기구, 5개의 국가입양기관이다. NGO기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호주(1), 벨기에(2), 캐나다(3), 덴마크(2), 핀란드(1), 프랑스(1), 독일(1), 이탈리아(4), 네덜란드(1), 뉴질랜드(1), 노르웨이(1), 스페인(6), 스웨덴(1), 스위스(1)와 미국(24)이다.

3.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국제입양에 연관된 시설/기관은 다음과 같다: 권한당국으로서의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중앙당국으로서의 국제입양위원회, 아동양육 및 배치기관, 수령국의 중앙당국이나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이 필리핀 정부를 대표한다.

국제입양에서는 국내입양과 같이, 유기되고 학대 또는 방임당하는 아동의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가 국가를 대표한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와 아동연구센터(Study Center for Children, RSCCs)는 국가의 양육 하에 있는 아동의 물리적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갖는다.

ICAB는 1995 국제입양법(Republic Act 8043)에 따라 헤이그협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국제입양건을 진행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가진 당국이다. 또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국제입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필리핀의 유일한 중앙당국이다.

인가되고 허가받은 아동양육 및 배치기관, 아동복지와 연관된 정부 및 비정부기구는 유기되고 학대 또는 방임당하는 아동의 제1차 양육자이다. 이러한 기관은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을 적극적으로 결연하는 것을 담당한다.

필리핀에서 국제입양 신청은 승인받은 외국 기관이나 중앙당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ICAB는 예비입양부모의 신청을 직접 접수 할 수 없다. 예비입양부모는 그들이 선택한 중앙당국이나 외국 입양기관과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입양절차는 본질적으로 행정절차이다. 입양 과정은 예비입양부모의 신청이 중앙당국이나 ICAB가 허가된 외국의 인가단체에 접수된 이후 예비입양부모의 국가에서 시작된다. 신청과정, 아동의 결연, 배치는 필리핀에서 이루어지나 입양의 확정이나 입양허가의 발행은 입양부모의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수령국은 반드시 협약 제23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고 필리핀의 중앙당국에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3.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과 소통

협력과 소통의 문제는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국제회담(Global Consultation on Child Welfare Service)”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 2009년 8월 18일-21일에 10차 세션을 가진 국제회담은 2년에 한번 씩 개최된다. 회담기간 동안, 국제입양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춘 국제입양이행의 개선에 관한 문제와 사회복지이행의 새로운 경향, 그리고 입양사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국의 입양기관, 중앙당국 그리고 아동양육 분야 전문가들이 초대되었다. 회담은 외국의 입양기관, 중앙당국, 지역아동보육기관이 특정 주제를 설명하고 외국 가정에 배치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회담기간 동안, 현 시스템이 아동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켜주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와 평가가 실시된다.

질의, 새로운 정책 안내, 사후보고서 수령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본 체계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의 최종배치나 입양확정이 지연되는 것은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될 아동권리의 박탈과 마찬가지로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메일을 통한 신속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편비용은 비싸며 느리기 때문에 이메일이 선호된다. ICAB은 해당 문서가 정호가하며 원본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약속서가 있고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 또는 중앙당국이 ICAB의 요청 시 원본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경우 스캔된 사후 보고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3.5 국내기관의 인가

종합적인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DSWD의 허가 및 인가를 받은 아동보육 및 배치기관만이 ICAB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 ICAB는 외국의 입양기관, 국내아동양육시설, 배치기관의 인가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ICAB는 49개의 비영리 아동보육시설과 배치기관, 16개의 사회복지부 지사, 11개의 “아동을 위한 공공수용시설과 연구센터”와 관계를 맺고 일하고 있다. ICAB는 외국의 입양기관들의 연락기관이나 대리인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ICAB는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수령국으로 데리고 갈 때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6개의 연락기관과 일하고 있다. 연락기관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으로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CAB는 연락기관 등이 그들이 대리하는 기관에 아동을 결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락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 기능과 역할은 국제입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부속서 2B).

3.6 외국 인가단체의 허가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의 역할과 인가에 관한 첫 번째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수립이 미흡하다는 점을 주목하여, 2004년 1월 8일 ICAB는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이 필리핀 국제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본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체약국 중앙당국에 의해 인가된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 기관만이 필리핀 국제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6장 17절 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수령국 중앙당국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동일한 조항에서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에 대한 허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였다. 허가 갱신을 신청한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재확인하기 위해, 인가 방문이 실사과정 중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수령국의 인가단체)은 12조에 따라 허가받기 전에 필리핀에서 인가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입증되고 필리핀 아동 배치에 있어 비영리목적 추구를 해온 외국의 사설입양기관이 자국 정부로부터 국제입양 수행을 허가 및 인가 받았다면 ICAB는 이러한 기관이 필리핀 아동들의 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 및 허가해야 한다.

“외국 입양기관 인가의 최소한의 기준(부속서 2A)”는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으로서 인가받기 위한 기본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3월 13일, 비체약국으로 아동이 밀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리핀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비체약 국가를 위한 방법이 미흡함을 인정하며, ICAB는 비체약국 기관을 위한 인가 절차 허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6장 18절 3항). 비체약국의 입양기관 인가 요건은 체약국의 요건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입양을 담당하는 비체약국의 정부기관과 양해각서 체결이 필요하다.

3.7 출신국의 특정 과제 : 현지 중재자 또는 연계 기관

외국 입양기관의 연락기관으로 활동하는 아동보호기관은 자신이 대리하는 외국의 입양기관으로의 아동배치를 금지하는 정책과 아동의 필요에 따라 아동을 배치하는 사무국의 엄격한 원칙으로 인해, 자신과 관련된 기관에 아동을 결연해야 하는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08년, ICAB는 연락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기 전 그리고 실행 첫 해에는 ICAB의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연락기관이 공문서 발급에 있어 ICAB를 지원하는 것과 아동의 방문서류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신체검사”, “비자인터뷰”에 아동과 동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외국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프로젝트 펀딩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신청한 가족 수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오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락기관과 그들의 외국 파트너는 아동 당/서류 당 제공된 서비스에 근거하여 예비입양부모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필리핀은 이러한 수수료 제도를 폐지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외국의 파트너에게 일반적인 항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 ICAB는 필리핀 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는 외국입양기관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례 수(서류)를 근거로 한 수수료 명세서가 존재할 때, ICAB는 부과된 수수료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ICAB는 국제입양이 확정된 아동에게 이미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해야한다. 배치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국제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는 소수이다. 게다가, 국제입양이 가능한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해, 필리핀은 입양신청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의 과제는 선별적인 활동 중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다수의 대기신청자가 있는 경우, ICAB가 예비입양부모의 연령범위 선호에 기반 하여 특정 연령 아동에 대한 신청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국가가 수용하는 아동의 유형을 기반으로 국가배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수령국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수용하는 경우 더 많은 아동이 배치 받을 수 있다.

3.8 수령국의 특정과제

수령국 내의 특정한 과제는 ICAB가 결연한 아동의 비자발급에 관한 것이다. 입양부모에게 아동의 입양을 허가하는 중앙당국의 승인이 반드시 아동의 수령국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 관할권마다 협약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국의 중앙당국과 영사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수령국 중앙당국과 영사관 간의 협력 부족은 비체약국의 관할권에서 국적으로 확정되는 입양 사례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영사관은 출신국에서 필요한 입양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아동에게 체류비자나 임시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출신국 중앙당국이 해당 아동의 국가 중앙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서류를 받지 않고 입국/거주비자를 발급하는 행위는 협약 제1조 (b)항의 목적(“그러한 보호 조치가 준수되어 아동의 탈취, 매매 또는 거래가 방지되도록 체약국간에 협력 체제를 수립”)에 위반된다.

부속서 2A

외국 입양기관 인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필리핀)

다음의 기준은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의 인가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 . 조직과 행정

1. 비전, 미션, 철학

- 1.1. 기관의 비전, 미션, 목적 또는 기능은 서면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1.2. 기관의 철학은 아동 중심적이어야 하며, 아동 출신국 내 가족보존과 재결합을 위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1.3. 이러한 사항은 기관의 운영 매뉴얼에 규정될 것이다.

2. 기관의 존재

기관의 수명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나타낸다. 수년 간 운영된 기관은 안정성과 탄탄한 기반을 보여준다. 그래서 5년 이상 존재한 기관은 정해진 목표 이행을 위한 건전한 재정계획 뿐 아니라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지리학적인 범위

주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지역과 이들의 파트너가 커버하는 지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운영위원회

- 4.1. 기관은 운영 매뉴얼, 등록부 또는 부칙에 명시된 기관의 목적을 위한 책임을 담당하는 이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질 수 있다.

- 4.2. 이사회는 기관의 비전, 미션과 철학에 대한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이 있고 책임감 있는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지역의 지도자로 구성된다.
- 4.3. 위원회는 최소 분기에 한번 씩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또는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다음 회의 때 참고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 4.4. 이사회는 정책결정 기구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은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직접적인 이행자가 될 수 없다. 이는 기관 운영상의 갭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증진할 것이다.

5. 직원의 유형

- 5.1. 기관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행정직원과 기술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 5.2. 서신, 기록, 회계장부,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정리 및 보관하기 위한 적절한 사무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한다.

6. 다른 기관과의 연계

- 6.1. 기관은 다음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 a. 사회복지부
 - b. 국내입양 네트워크
 - c. 국제입양 네트워크
- 6.2. 아동복지 서비스에 관한 또는 프로그램의 옹호목적 개발을 위한 기관 간의 회의 참석
- 6.3. 기관은 주 단위 또는 국가 전체에서 입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아동복지기관의 최신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II. 경영 재무상태

1. 기관은 IRS(국세청)나 다른 적합한 기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서류는 인가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영수증, 지급금, 자산, 부채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장부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3. 기관의 최근 재무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의 재무계획과 지급금은 기관 자금의 60%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지출되고 단지 40%만이 행정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60%는 제공되는 각 서비스와 프로그램 별 자금 할당을 포함한다. 40%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다.

4.1 직원 임금/인센티브

4.2 시설유지비(임대, 물, 전기 등)

4.3 교통비

4.4 사무용품/자재

5. 자금의 안전성

기관은 3년 단위의 업무계획과 재정의 실현가능성이나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인 자금의 출처, 이에 따른 기부 예상금액(현금 또는 현물) 예. 컨설턴트 등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 기부된 장비, 물품, 시설 등

5.2 업무계획, 이에 따른 행정과 운영 예산

5.3 기관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자원창출 전략이나 시스템

6. 시설 및 장비

6.1 가능하면 기관은 최대한 자가 소유이든 임대이든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2 면담, 상담, 컨퍼런스/회의를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야 한다.

6.3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Ⅲ. 인사관리

1. 인사관리 및 정책 매뉴얼

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사정책과 인사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1.1 직무기술서 - 각 직위에 해당하는 자격, 역할/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1.2 적합하고 직위에 상응하는 임금의 범위와 인센티브 조항. 노동법에서 규정한 범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1.3 은퇴계획, 사회보장제도, 입원, 의료, 보험, 병가, 법에 규정된 휴가를 포함하는 고용 복지혜택

1.4 x-레이를 포함하는 연 단위 건강검진과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

2. 직원관리

기관은 적합하고 유능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업무를 인수받기 전에 자신의 업무 역할, 의무와 책임을 포함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것이다.

2.1 상임이사

2.1.1 상임이사는 등록된 사회복지사(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또는 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이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된 다른 직종에서 전문적인 훈련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차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

2.1.2 아동보호기관의 관리 영역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관에 풀타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임이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아래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거쳐야 한다.

- a. 기관의 서비스와 업무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 b. 위원회가 수립한 조직과 정책 기반 내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를 기획하고 조정
- c. 서비스의 효율성의 지속적인 평가
- d. 더 나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개발

2.2 사회복지사 감독

3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외국의 입양절차 이행기관은 감독 업무를 수행할 훈련되고/승인된 그리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등록된 사회복지사 감독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거쳐야 한다.

2.3 사회복지사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 영역에서 경력을 가진 등록되고, 훈련되고/승인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거쳐야 한다.

2.4 기타 직원

기관은 다음의 직원을 정규직 또는 외부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다:

- a. 전문상담가(예-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 b. 행정직원(예-사무직원, 기술직)
- c. 회계사/회계장부 담당자

3. 직원과 고객의 비율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직원이 담당하는 고객의 비율은 관리되어야 한다.

직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3.1 사회복지사 - 1명이 매일 20-30건의 사례를 담당

3.2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3명 혹은 그 이상의 사회복지사 감독

4. 직원개발과 실무연수

4.1 모든 직원은 직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과 기관에서 기대하는 바에 대해 익히기 위해 채용 전 기관의 오리엔테이션과 실무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기관 내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4.2 서비스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개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한다. 각 직원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입양아동과 가족과의 업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4.3 정기적인 직원회의는 이후 프로그램 진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해결책을 논의할 뿐 아니라

기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갭(gap)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이사가 주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4.4 사례 컨퍼런스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입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입양아동을 위한 최선의 가정 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행될 것이다.

4.5 입양, 위탁양육, 아동복지에 관한 적합한 책, 잡지와 정기간행물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IV. 프로그램과 서비스

1. 서비스

기관은 입양신청자들이 입양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평가하게 할 뿐 아니라 입양신청자가 입양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된 입양가족이 입양절차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입양신청자

1.1.1 개별상담, 집단 오리엔테이션이나 입양포럼 등을 통한 입양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입양이 가능한 아동의 상황과 특성 그리고 입양부모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1.2 가정조사와 이민에 필요한 서류 구비 지원

1.1.3 입양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평가. 입양아동의 특별한 필요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의 능력과 적합성 평가.

1.2 승인된 입양가정

1.2.1 가족이 승인된 날로부터 아동과 매칭 될 때까지의 대기기간 동안의 지원

1.2.2 입양아동의 입양배치를 위한 사전 준비

1.2.3 입양가정과 아동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배치 사후 서비스와 배치감독 기간 동안 지원

1.2.4 입양가정과 아동에게 건강관리와 같은 지원서비스 제공

1.2.5 입양의 법적 최종 판결 지원

1.2.6 입양 완료 후 발생하는 문제를 위하여 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입양 후 상담 제공. 아동과 가족 간의 조절이 원만하도록 보장하는 여름캠프, 모국관련 캠프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포함.

2. 사례기록

2.1 기관은 입양가족과 아동의 완료되고 업데이트된 사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을 다루는데 있어 기밀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임이사가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직위에 따라 사례에 관련된 이들만이 기록을 조사 할 수 있다.

2.2 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2.2.1 입양가족

- 2.1.1 바르게 작성된 신청서
- 2.1.2 경찰, FBI 승인이나 이에 해당하는 서류
- 2.1.3 가족의 건강증명서
- 2.1.4 신청자와 가족 사진
- 2.1.5 기혼자인 경우 혼인증명서의 공증된 복사본
- 2.1.6 최근의 소득세 신고서나 재정정보증서의 복사본

2.2.2 입양아동

- 2.2.1 아동조사 보고서

2.2.2 출생증명서나 발견증명서(Certificate of Founding)

2.2.3 바람직한 경우, 법원의 유기 증명, 부모의 자발적 약속의 증서, 부모의 사망증명서

2.2.4 의료, 치과, 정신적 검사와 심리적, 정신적 검사. 기본적인 면역 기록.

2.2.5 배치 당국

2.2.6 사례기록 감독

2.2.7 신청과 관련하여 가정의 아동과 주고받은 모든 서신

2.2.8 입양허가

V. 검색과 공표

기관은 기관의 뉴스레터나 게시판에 마련하여 직원, 입양부모, 입양인 뿐 아니라 공동체 및 다른 기관의 사람들이 입양과 기관의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속서 2B

**국제입양 연락서비스에
대한 지침(필리핀)**

I . 정의

필리핀에서 연락기관이란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을 대리하는 아동양육 및 배치기관(Child Care/Placing Agency, CCA/CPA)이다.

II . 목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 입양사전 배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촉진 및 이행하는데 있어 국제입양위원회를 지원함

III . 정책

- 3.1 허가받고 승인된 CCA/CPA만 연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2 연락기관은 ICAB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3.3 연락기관은 아동양육 및 배치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적어도 5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 3.4 기관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사회복지 학위가 있는 별도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별도의 프로그램과 제공된 연락서비스에 대한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3.5 연락기관이 관리하는 아동은 승인된 신청자 명단(Roster of Approved Applicants, RAAs)에 결연 가능한 기타 예비입양부모의 가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락기관이 대리하는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의 가족과 결연되어서는 안 된다.
- 3.6 연락기관은 최대 5개의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을 대리할 수 있다.

IV. 기능

연락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4.1 배치 전

4.1.1 아동이 예비입양부모에게 결연되거나 예비입양부모에게 수용되기 전과 후에 ICAB가 요청한 추가 정보와 서류를 지원 및 제공

4.1.2 ICAB 사무국에 서류 일체 양도

4.1.3 서류 파일, 예비입양부모와 아동 관련 서류일체 각각 보관

4.1.4 DSWD Field Office(DSWD FOs) 또는 아동양육 및 배치 기관으로부터 마닐라까지 아동의 이동과 지원, ICAB가 허가한 기타 서비스 지원

4.1.5 입양을 위한 아동의 감정 및 심리적 준비 뿐 아니라 신체적 준비 영역에서 아동양육 및 배치기관을 지원. 특히 연장아동의 준비 지원

4.1.6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 및 예비입양부모의 원활한 출장 일정 지원

4.2 입양부모의 필리핀 입국과 배치

4.2.1 동화를 촉진시키는 아동의 습관, 선호와 행동을 예비입양부모에게 소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ICAB와 관련 아동양육 및 배치기관을 지원

4.2.2 예비입양부모의 아동 및 배치기관, 위탁가정 방문 동행, 출신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지원 제공

4.2.3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인도받을 때 지원

4.2.4 아동 배치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가능한 빨리 ICAB 사무국에 공지

4.3 배치 및 입양 사후

4.3.1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이 ICAB에 정기적으로 배치 후 보고서(Post Placement Reports, PPRs)와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

4.3.2 아동의 출생증명서 개정을 포함하여 입양명령, 귀화, 시민(국적)증명서 등 모든 입양사후 서류가 ICAB 사무국에 시기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

4.3.3 입양사후기간 동안 예비입양부모가 보내온 편지와 사진을 ICAB 사무국과 관련된 아동양육 및 배치기관으로 전달

4.3.4 입양사후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

V.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의 연락서비스 이용신청

5.1 연락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5.2 신청 접수 후, 위원회는 연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된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 리스트를 제공해야한다.

5.3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은 리스트 중 선택한 기관을 위원회에 공지하고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과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간의 양해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5.4 ICAB는 위원회의 조치에 관하여 외국 입양절차 이행 기관과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에 서면으로 연락한다.

VI. 연락기관 인가 신청

6.1 연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은 연락기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6.2 신청을 접수한 후, 위원회는 신청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락기관의 부적격요소가 없는 경우, 인가를 위해 사무국에 해당 건을 전달한다.

6.3 ICAB는 해당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전달한다.

VII. 수수료와 자금 활용

7.1 인가된 연락기관은 연락서비스 신청에 앞서, 서면으로 작성된 수수료 표와 추정된 그리고 실제비용의 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수료나 비용이 부과, 면제, 감소 또는 환불되는 조건 그리고 수수료 지불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7.2 인가된 연락기관은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 심리 사회적 개입 등의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기금 및 수수료를 열거하고 명시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전에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에 이를 공개하고 이러한 자금의 사용에 대한 회계내역 전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7.3 인가된 연락기관은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연락 기관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기부금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VIII. 보고서

인가된 연락기관은 연례업무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ICA가 검토하게 되는 이러한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재정현황,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X. 서신전달/의사소통

인가된 연락기관은 서류제출의 신속성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ICA가 고려하는 최종결연에 관해 파트너인 외국 입양절차 이행기관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인가된 연락기관은 이러한 특권을 행사함에 있어 항상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모든 긴급한 의사소통은 ICAB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속달서비스, 팩스, 이메일과 같은 최대한 빠른 방법을 통해 전달될 것이다.

X. 인가 절차

10.1 인가 전

10.1.1 신청자인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은 신청서를 다음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a. 프로그램과 서비스 설명
- b. 해당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의 책임자가 확인한 직원 명단 및 자격명세
- c. 감사받은 재정보고서 ;
- d. DSWD 허가과 인가 증명서
- e.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 운영매뉴얼

10.1.2 ICAB 사무국은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위원회의 서류검토를 위한 방문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10.2 인가를 위한 조사

10.2.1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 한 후 3개월 내에 인가를 위해 신청자를 방문할 것이다.

10.2.2 위원회는 다음을 조사해야 한다.

- a.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사
- b. 연락서비스 업무에 배정된 책임자와 직원 면담
- c. 아동, 프로그램/서비스, 행정 기록 검토

10.2.3 연락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는 3년 동안 유효하며 그 후 갱신할 수 있다.

10.3 인가 후

10.3.1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구성원이 방문한 날로부터 또는 대리인이 지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에 전달된다.

10.3.2 인가증명서는 규정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때에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에 발행된다.

10.3.3 ICAB 사무국은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XI. 연락기관의 인가 중단 또는 철회의 근거

11.1 인가된 연락기관의 위반이나 불법에 대한 확인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락기관에 민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초기조사에 착수한다.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은 이러한 조사 통지 수령일로부터 근로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한다.

11.2 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할 것이며 발견된 증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1.3 위원회 결정의 재고를 위한 이의신청은 결정의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결정은 최종적이고 집행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1.4 위원회는 다음의 근거에 의해 아동보호 및 배치기관의 연락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11.4.1 규칙을 위반하고 아동 배정의 대가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과 또는 수용

11.4.2 규칙에서 따라 요구되는 핵심정보의 왜곡 또는 은폐

11.4.3 신청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원회 대리인, 직원 등에게 금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11.4.4 입양 신청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입양 대상 아동의 사진이나 이름을 광고 또는 공개(배치가 어려운 아동을 위한 특별 가정 찾기의 경우는 제외)

11.4.5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이나 신청자에게 편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규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음

11.4.6 예비입양부모와 관련되지 않은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결연 계획에 개입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

11.4.7 법과 규정, 관련법을 위반하는 기타 모든 행위

XII. 위원회의 활동

조사가 종료되면, 증거가 타당하거나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DSWD에 추가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을 종료하거나, 해당 아동양육 및 배치기관의 연락서비스 제공 인가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연락기관에 전달된다.



부속서 3

수령국 관점

1. 수령국 : 벨기에

1.1 전후(then and now) : 벨기에가 1993년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현재 인가단체 상황에 관한 요약

인가된 입양기관의 승인체계(행정적, 방법론적, 재정적, 윤리적 요건)는 1991년 이후로 프랑스어권 벨기에에서 운영되어왔다. 승인체계는 2005년 이후로 벨기에의 중앙당국(Autorite centrale communautaire, ACC)인 공공기관에 의한 감독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예비입양부모는 반드시 인가된 입양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없었다.

2005년 9월(벨기에가 협약을 비준한 날)에 이루어진 입양개혁에서 인가된 입양기관이 어떤 의미에서 ACC의 연장선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역할을 확장 및 강화하며 예비입양부모들이 반드시 인가된 입양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여, 인가 기관의 주요한 역할을 확인하였다(현재 입양의 99%이상이 인가된 입양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음).

1.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인가된 입양기관은 ACC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ACC는 벨기에에서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산하 기관이다.

인가된 입양기관의 기능은 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인가된 입양기관의 수를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인가된 입양기관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좀 더 엄격한 요건과 감독의 결과). 1995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입양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어권 벨기에 내에는 6개의 국제입양을 위한 인가된 입양기관이 존재하며 어느 기관도 일 년에 100건 이상의 입양을 진행하지 않는다.

1.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ACC는 벨기에의 프랑스 커뮤니티 정부가 1993 헤이그협약의 중앙당국 의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한 공공기관이다.

ACC는 주로 다음에 대한 관할권(책임)을 가지고 있다.

- 예비입양부모 준비 단계 (등록, 실제적인 준비, 내용 결정, 담당자 선정, 과정 평가)
- 예비입양부모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가정조사(혹은 심리-사회조사)
- 결연 감독단계 : 개별 사례 관리, 입양기관의 아동 제공에 대한 동의, 외국 당국에 대한 증명서 발급, 예외적인 경우 결연단계를 직접관리(주로 국제적인 가족 내 입양과 관련)
- 인가된 입양기관 승인, 해외 협력에 대한 허가, 인가된 입양기관 감독
- 입양된 아동의 출신과 관련한 정보 보존

입양절차 모든 단계에서 관련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ACC는 입양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가된 입양기관은 입양분야에서 중재자로 활동하도록 벨기에의 프랑스 커뮤니티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법 또는 사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가진) 다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기관이다.

인가된 입양기관은 다음과 같이 입양절차의 다양한 단계에 개입한다.

- 예비입양부모 준비에 참여 (개별 심리 인터뷰)
- 예비입양부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가정조사(심리-사회 조사)를 위한 의견전달
- 제안된 입양을 감독(계획 마련에서부터 입양결정까지)
- 필요한 경우 입양사후조치와 가족지원 수행

인가된 입양기관은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ACC 감독 하에서 수행하고 있다.

1.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과 소통

입양개혁 이후, ACC와 인가된 입양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었다. 연방법에 따라 인가된 입양기관이 ACC가 위임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가된 입양기관이 좀 더 엄격한 모니터링을 받게 될 것(특히 개별 입양 건에 대한 관리)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가된 입양기관과 ACC간의 협력이 증대됨을 뜻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 인가된 입양기관에 관련된 행정 및 사법적 절차에 관한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ACC의 지침 개발
- 인가단체와 ACC간의 정기적인 연락 : 각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절차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다양한 증명서의 신청, 입양 제안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전달
- ACC와 모든 인가단체 간 회의(반 년 마다) : 각 인가된 입양기관의 공통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와 방법론에 관한 “공유된 문화”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
- 인가된 입양기관 모니터링 : 기관에 대한 연례 조사 또는 비정기적 조사를 통해 인가된 입양기관을 모니터링, 해외 사무소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ACC와 인가단체 직원을 위한 세미나와 훈련 세션 조직
- 특정국가의 입양필요 및 이들 국가에서의 업무 전망, 새로운 파트너십의 신뢰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ACC와 인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해외 조사업무를 계획

1.5 인가단체와 인가 절차

인가란 인가단체가 법적, 행정적, 방법론적, 재정적 그리고 윤리적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비영리 활동
- 아동 최선의 이익과 벨기에법과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아동의 기본권을 위해 활동
- 입양분야에서 경험이 있거나 훈련받은 신뢰할 수 있는 윤리관을 갖춘 이들에 의한 운영
- 입양기관이 필요한 다양한 전문 분야를 커버하기 위한 최소 한 명의 코디네이터, 한명의 사회복지사, 한 명의 심리학자와 한명의 의사로 구성, 지속적으로 훈련 및 감독을 받아 인가단체의 전문성을 유지
- ACC가 요구하는 운영모형 준수
- ACC의 연례조사에 동의하고 협력

인가는 5년 동안 유지되며 연장될 수 있다. 인가 신청은 인가 패널에 보고서를 발행하는 ACC에 의해 검토된다. 동 패널은 최종결정을 내리는 장관에게 보고한다. 인가단체는 국내 또는 국제입양을 위해 또는 두 경우 모두를 진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6 출신국의 입양 준비

인가단체와 외국과의 공동 작업은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관련 부처는 그와 관련하여 ACC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ACC는 제안된 공동작업의 신뢰성(외국 중개기관이 관련 법,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입양에 대한 필요도 확인한다. ACC는 다음 이슈도 조사한다: 아동의 출신, 제안된 협력의 재정적 측면, 협력자 또는 파트너의 윤리적 신뢰성. 해당 출신국에 조사를 다녀온 후, 인가단체는 ACC에 문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제안된 공동작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ACC가 직접 조사 미션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동작업은 처음에는 “시험단계”로 승인되고, 처음으로 완료된 입양 건에 대한 평가 후 확정된다.

1.7 수령국의 특정 과제

운영의 안정성 뿐 아니라 인가단체의 최적의 윤리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인가된 입양기관의 자금은 입양부모가 아닌 공공당국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ACC와 인가된 입양기관은 입양 대상 아동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입양신청 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많은 예비입양부모들이 3세 미만의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므로 이러한 수적 차이는 질적이고 양적인 영향이 있다. 이러한 수적 차이는 입양을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인가단체의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기간이 늘어나고, 국제입양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 예비입양부모들이 특별한 필요(연장아, 형제자매, 장애아)가 있는 아동을 그들의 필요에 대한 신중한 고려나 준비 없이 입양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인가된 입양기관의 인식을 증진하고 입양부모에 대한 엄격한 적격심사 이행 및 준비과정을 통해 제한되어야 한다.

2. 수령국 : 네덜란드

2.1 전후(then and now) : 네덜란드가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현재의 인가단체 상황에 대한 요약

네덜란드는 1998년 6월 26일에 1993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98년 10월 1일에 협약을 발효하였다.

그 당시, 승인체계를 이미 운영 중에 있었으며 1988년에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위탁 아동의 네덜란드 배치에 관한 법률”과 함께 이행 되었다. 네덜란드에는 외국 아동의 네덜란드 배치를 중재하는 8개의 인가단체가 존재한다. 헤이그협약의 비준과 함께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위탁 아동의 네덜란드 배치에 관한 법률”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아동의 네덜란드 배치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현재, 네덜란드의 정책은 모든 헤이그협약 국제입양이 인가단체의 완전한 중재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다. 2001년에, 비체약국과의 입양배치를 규제하는 섹션이 법률 내에 도입되었다.³⁹⁸⁾

2.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네덜란드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며 중앙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팀이 사법청소년정책부 내에 존재한다. 인가를 부여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협약 4장에 설명된 중앙당국의 기능과 권한은 인가단체에 위임되었다. 그러나 협약의 2가지 중요한 기능은 위임될 수 없다.

- 협약을 진행시키는 합의서의 발급(17조 c항). 중앙당국이 수행.
- 가정조사의 수행 : 네덜란드는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정조사는 아동양육 및 보호기관(Child Care and Protection Agency)과 같은 공공당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두 개의 인가된 입양기관이 활동 종료를 결정하였고 하나의 새로운 기관이 새롭게 승인받았다. 인가단체의 수는 현재 7개이며, 네덜란드 인구가 1,600만 명임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수이다.

인가단체는 오직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출신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였다.

398) 예비입양부모가 인가단체가 없는 국가로부터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출신국의 대리인이 확인되어야 하며 여타 특정한 정보가 얻어져야 한다. 네덜란드의 인가단체는 출신국의 대리인의 신뢰성 및 따라야 할 입양절차를 입증하고 네덜란드 중앙 정부에 권고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중앙 정부는 부모가 해당 국가로부터 아동을 입양 신청하려는지 여부에 대한 권고사안에 입각해 결정을 내린다. 또한 중앙 정부는 검증된 대리인을 통해서 다수의 입양 허가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 동일한 국가에서 둘 이상의 인가단체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가 지불하는 입양수수료로만 운영하는 독립기구이며 이러한 수수료는 인가단체가 스스로 정하고 있다. 입양수수료의 수준은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사용되는 입양의 실제비용에 달려 있다. 수수료의 수준은 인가단체와 그들이 활동하는 출신국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2.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2.3.1 중앙당국의 역할

사법부의 중앙당국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아동의 네덜란드 배치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법률”에 따라 국제입양 영역에서 국내법과 규칙을 실행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중앙당국은 헤이그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당국은 해외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개인이나 그 배우자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허가를 결정한다.

또한 해외아동 배치에 관한 입양중재활동을 수행하기 원하는 법적기구의 승인신청을 결정한다. 또한 새로운 인가단체가 승인받을 기관을 위한 평가 체계인 질적평가체계(Quality Framework)³⁹⁹⁾를 스스로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중앙당국은 외국의 중앙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기관들과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중앙당국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관련 중앙당국과 국가 내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외무부 그리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특정한 사설기관(인가단체는 아닌)인 입양서비스재단(Foundation Adoption Services)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예비입양부모에게 상담을 제공할 의무를 중앙당국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전 상담은 입양의 필수요건이다. 입양서비스재단은 가정조사 실시 이전에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입양서비스재단은 또한 입양사후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99) 아래의 2.5 및 2.8 절을 참조한다.

2.3.2 인가단체의 역할

국제입양을 위해 인가단체는 출신국에서 예비입양부모와 권한당국을⁴⁰⁰⁾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의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외국의 당국, 기관이나 개인과 연락을 유지할 것이다.

비체약국과의 입양 중재체계에서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에서의 지원과 절차 준수를 위해 제안한 해외 대리인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네덜란드의 인가단체는 헤이그협약을 위한 입양절차와 동일한 질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인가단체는 검토 가능한 서류를 바탕으로 의료적, 법적, 심리적 차원에서 아동의 입양가능성을 확인한다. 인가단체는 특정 아동에 대해 예비입양부모가 선정된 근거가 되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인가단체는 일부 비체약국과의 입양 건에서 결연 제안에 참여 할 수도 있다.

인가단체는 가족과 아동이 네덜란드로 입국하는 것을 감독(상기 법률 17조 a(1)항에 따라)할 것이다. 또한 출신국이 규정한 기간 동안 아동의 배치과정 및 입양가정에 입양되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가 출신국에 제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가단체는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절차에 관련된 문제를 공지하며 입양부모와의 모임을 조직할 수 있고 게시판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오픈할 수 있다.

2.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과 소통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협력관계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각 사례에 관하여 인가단체와 중앙당국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중앙당국은 일반적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모든 인가단체와의 회의를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특정 이슈(예. 특정 출신국의 상황)에 대한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예외적인 경우, 중앙당국의 대리인은 인가단체와 협력하는 당국, 기관과의 회의를 위해 인가단체의 직원과 함께 출신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인가단체의 감독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사단과 법무부 내의 독립적인 기관의 책임이다. 그러나 중앙당국의 대리인은 정기적으로 인가단체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400) 경우에 따라서 출신국의 소관 당국은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오직 네덜란드 중앙 정부와 소통하길 바랄 수 있다.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아동의 네덜란드 배치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법률”은 민원관리 특별위원회(Compliant Committee)가 인가단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인가단체와 인가 절차

입양절차 수행기관의 인가는 중앙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인가 절차를 통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당국은 “국제입양 중재를 위한 허가 부여와 연장에 관한 중앙당국의 운영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⁴⁰¹⁾ 프로토콜 내용 중 인가단체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 흥미로운 부분은, 4장에서 인가 신청 시 각 기관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기관의 의무를 이행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서술해야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헤이그협약 비준과 함께 네덜란드는 인가기간을 최대 5년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헤이그협약의 시작 전에 부여된 인가의 유효기간은 2년 후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998년 헤이그협약이 실행되고 난 이후, 2000년에 처음으로 인가 연장이 이루어졌다. 2004년에 “국제입양 중재를 위한 허가 부여와 연장에 관한 중앙당국의 운영프로토콜”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토콜은 인가 신청 및 연장 그리고 법적인 요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인가 유효기간 연장 절차는 2005년도에 이루어졌고 2010년에 다시 진행되었다.

2008년 네덜란드의 인가단체들은 국제입양에 참여하는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위한 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⁴⁰²⁾ 이러한 질적 기반은 기관들이 통일된 접근 방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기관 스스로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올바르게 추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가 체계 역할을 한다. 질적 기반에서 출신국 내 새로운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 계약이 체결된다.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의 인가단체가 하나의 출신국에서 활동하는 것이며, 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외는 아래의 판단을 근거로 평가된다.

- 해당 국가의 권한당국의 견해
- 현지의 입양 상황
- 해당 국가의 두 번째 인가단체의 타당성
- 해당 인가단체들 간 협력 의향

401) Protocol Werkwijze Bureau Centrale autoriteit bij de verlening van een vergunning om te bemiddelen inzake interlandelijke adoptie of verlenging van de geldigheidsduur van die vergunning, Doc.Rev.IV 2004년 5월 19일, 요청 시 네덜란드 중앙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402) Kwaliteitskader vergunninghouders interlandelijke adoptie. 품질 체계 문서는 요청 시 네덜란드 중앙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중앙당국은 출신국 내 인가단체가 유지하고 있는 되는 모든 중재인의 연락처를 보유해야 한다.

2.6 출신국과의 입양합의

협약 제12조에 따라, 외국의 인가단체는 출신국 권한당국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그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기관이 출신국에서 권한당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네덜란드 중앙당국의 책임이다. 그러나 출신국 권한당국이 우선 네덜란드 중앙당국의 동의를 확인하기 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상호동의를 위해 출신국의 권한당국과 연락하는 것은 인가단체의 의무이다.

출신국 내 당국이나 외국의 파트너 기관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인가단체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파트너 기관과 당국의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 아동의 배경은 어떻게 조사되는지, 아동포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은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출신국의 입양절차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으로 들어오고 기공에서 나가는 자금의 성격, 원천,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인가단체는 외국 파트너 기관 또는 당국의 재정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인가단체는 출신국 내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재정보고서 포함)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인가단체가 입양 중재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예. 개발 프로젝트)을 시작할 경우, 인가단체는 새로운 활동이 입양절차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2.7 수령국에서의 특정 과제

네덜란드의 최근 몇 년 간의 도전 과제는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신청 수 증가와 입양 대상 아동의 수 감소로 인한 불균형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대기 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서비스재단이 제공하는 입양 전 상담절차와 아동 양육 및 보호기관이 수행하는 가정조사 평가 대상이 되는 예비입양부모의 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입양부모의 수는 입양절차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기관, 당국 등)들에 의해 매년 결정되어 왔다. 그 숫자는 인가단체가 일 년 동안 중재할 것이라 예상되는 아동의 숫자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입양 전 상담단계에 참여한

예비입양부모의 수는 2007년에 1,200명에서 2009년에 900명으로 감소하였다. 입양 대상 아동의 수가 2007년 782명에서 2009년 767명으로 감소하였고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입양 전 상담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입양부모 수는 더 감소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입양서비스재단은 2009년에 입양을 신청한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정보 세션을 마련하였다. 이 세션의 목적은 예비입양부모에게 대기기간의 장기화 가능성을 알리고, 그들의 입양 기회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해주며, 선택 가능한 대안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별 정보 세션으로 대기 리스트와 신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2.8 출신국의 특정 과제

헤이그협약 당사국이라고 해서 늘 입양 아동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가단체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보는 아동 결연을 위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질적 기반(Quality Framework)에 따라, 인가단체는 출신국의 결연 제안을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수집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요청된 정보는 아동 배경에 관한 정보, 아동포기절차에 관한 정보, 친부모가 상담 받았던 방법에 관한 정보, 보충성 원칙 준수에 대한 정보,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보이다.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절차가 협약(23조)에 준하여 진행되었음을 보장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관련당국을 임명하는 의무가 항상 인정되거나 이해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인증서의 미비가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입양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입양부모와 아동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이 즉각적으로 입양부모의 국적을 얻지 못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무국적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부모는 입양 아동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령국에서 새로운 입양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며,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동의 지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3. 수령국 : 스웨덴

3.1 전후(then and now) : 스웨덴이 1993 헤이그협약에 처음 가입했을 때와 지금의 인가단체 상황에 관한 요약

1997년 스웨덴이 1993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였을 때 이미 약 20년 동안 대부분의 국제입양이

인가단체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다. 국제입양중재를 위해 정부중앙당국이 자발적인 비영리협회 승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은 1979년에 도입되었다. “국제입양중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고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입양을 원하는 개인과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당국, 기관, 시설, 개인 간의 연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 그리고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하며, 그 후로 국제입양이 이 같은 기관들을 통해 수행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스웨덴 정책이 정립되었다.

3.2 정책문제 :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활동의 제한, 인가단체의 수

협약의 이행과 함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인가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을 동일하게 협약에 따른 인가부여 기관으로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협약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인가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 협약 비준으로 인가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를 변경 할 필요도 없었다. 인가단체의 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현재 6개 기관이 900만 명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규제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

3.3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협약 비준 및 국제입양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행정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스웨덴은 중앙당국의 다양한 책임을 다른 당국, 인가단체에 위임하였다.

중앙당국의 임명 그리고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의 책무를 중앙당국, 다른 공공당국, 인가단체 간에 분배하는 것은 협약 비준에 관한 1997년의 법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미 운영되고 있던 시스템은 변경 없이 유지되었고, 이러한 위임을 통해 입양은 대부분의 경우 인가단체에 의해 처리되고 중앙당국은 절차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당국은 예비입양부모가 입양 목적으로 아동을 수령하기에 적격이며 적합한지 평가하고 신청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15조)할 책임을 담당했다(현재와 동일). 협약에 따라 중앙당국이 양 국가에게 입양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는 새로운 절차가 도입되었다. 국내 내부 협의과정을 통해 이러한 동의 업무를 인가단체가 아닌 지역사회복지당국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에 중앙당국이 재조직되었고(그때까지 국제입양 국가위원회(Swedish National Board of Intercountry Adoption, NIA), 스웨덴 국제입양당국(Swedish Intercountry Authority, MIA)이 창설되었다. 동시에, 1997년 국제입양중재법이 엄격해짐에 따라 인가 기준 또한 엄격해졌다. 특히, 스웨덴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특정 출신국 내 법, 행정, 기타 환경에 관한 조건에

관련된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특정 국가 내 인가단체가 지불한 비용이나 기타 성금을 특정 국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허가의 사전조건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규칙이 소개되었다. 이 해부터 인가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스웨덴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인가이며 두 번째 단계는 출신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허가이다. 이러한 법률상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가당국은 이를 통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른 출신국에서의 상이한 조건을 감안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감독기관으로서의 MIA의 역할이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되었다. 상기 언급된 입법조치를 통해 인가단체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인가단체는 주로 회비와 등록비를 포함한 예비입양부모가 지불한 입양수수료로 운영된다. 인가단체는 또한 정부로부터 소규모의 보조금을 받는다.

예비입양부모가 지불하는 입양수수료는 인가단체가 결정한다. 입양수수료의 범위는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지출되는 입양의 실제비용에 달려있다. 스웨덴에서 인가단체의 입양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인가단체 간 비용의 차이는 다양하다. 입양수수료의 다른 부분은 당국과 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출신국에서 입양과 관련된 실제비용에 기반하고 있다.

재정투명성은 표준 부기로 실현할 수 있다. MIA는 인가단체가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매년 분석한다. 또한 인가단체는 매년 각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보고서에는 전년도에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입양과 관련된 총 실제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 협력과 소통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협력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MIA는 일 년에 두 번 모든 인가단체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여기에서 입양에 대한 모든 문제가 논의된다. MIA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인가단체를 방문한다. MIA의 대리인은 때로 인가단체의 직원과 함께 출신국의 당국, 관련 기관과의 회의를 위해 출장을 가기도 한다. 일부 인가단체와 MIA는 거의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는다.

신청자는 MIA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MIA는 접수된 건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MIA는 허가된 기관의 업무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입양부모에게 문의를 하기도 한다.

MIA는 인가단체와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출신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 회의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회의 외에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3.5 인가단체와 승인 절차

스웨덴에서 국제입양에 관한 업무의 승인은 MIA가 부여한다. 승인은 5년 동안 유효하다. 입양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들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MIA에 제출한다. 신청 양식은 MIA가 제공한다. 스웨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가는 입양중재업무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기관에게만 주어진다. 인가는 해당 기관이 비영리 기반으로 만족스럽고 통찰력 있게 입양을 중재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할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출신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허가, 다른 국가의 특정영역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허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특정한 입양연락책과 함께 일하기 위한 허가 또한 MIA에서 부여한다. 이러한 승인은 2년 동안 유지된다. 인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하고 MIA에 허가를 신청한다. 허가가 부여되면 입양 사례의 대부분은 MIA의 개입 없이 인가단체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인가단체는 비영리를 기반으로 만족스럽고 통찰력 있게 입양을 중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출신국에서 국제입양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인가단체가 국제입양 중재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다른 업무는 반드시 입양 업무의 기밀성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인가단체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해당 출신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1993 헤이그협약이 천명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신뢰할만한 규정이나 입양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어야 한다. 출신국은 반드시 국제입양 업무를 위한 기능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위험한 경쟁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며 해당 출신국에서 활동하는 스웨덴의 인가된 입양기관 간의 경쟁 또한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의 인가된 입양기관은 출신국에서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전반적인 비용 상황 및 기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인가단체가 다른 국가와 입양 업무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것이 적합한지 평가되어야 한다. 인가단체가 충분히 구체적인 비용 내역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출신국이 개방적이며 인가단체에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스웨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가와 특정 출신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인가단체는 지속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인가/허가의 갱신 조건은 최초 인가/허가 조건과 동일하다.

3.6 출신국과의 입양 협정(합의)

인가단체가 새로운 국가에서 입양중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 내 입양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MIA에 허가를 신청할 때, 인가단체가 어떻게 아동의 배경을 조사했는지, 보충성의 원칙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었는지,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얻었는지, 그리고 결연 절차는 어떠한지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이나 협력자에 대하여 MIA에 공지해야 하며 입양과 관련된 비용도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만약 인가단체가 다른 국가에서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입양중재 외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가 입양절차의 청렴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 프로젝트가 그들이 입양을 위해 확보 할 아동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입양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인가단체는 원래 중재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국가의 권한당국이 동의한 경우에만 다른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MIA는 허가받은 인가단체에 대한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MIA는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인가단체의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허가된 인가단체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인가단체는 현지 사회복지위원회(local Social Welfare Committee)의 입양 동의를 얻은 신청자의 국제입양절차를 중재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허가된 인가단체는 수행한 업무를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기관은 반드시 차별 없이 모든 커플 입양신청자나 독신자 입양신청자를 대우해야 한다.

허가된 인가단체는 각 국가에서 수행한 기관 업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재정 보고서 포함). MIA는 인가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출신국을 방문하며 다양한 외국 당국들과 회의를 가진다. MIA는 또한 고아원을 방문하며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과 좌담회를 개최하며 인가단체의 대리인들과의 회의에 참석한다. ISS/IRC, 유니세프가 제공하는 정보는 다른 국가 중앙당국과의 정보 교환만큼 MIA에게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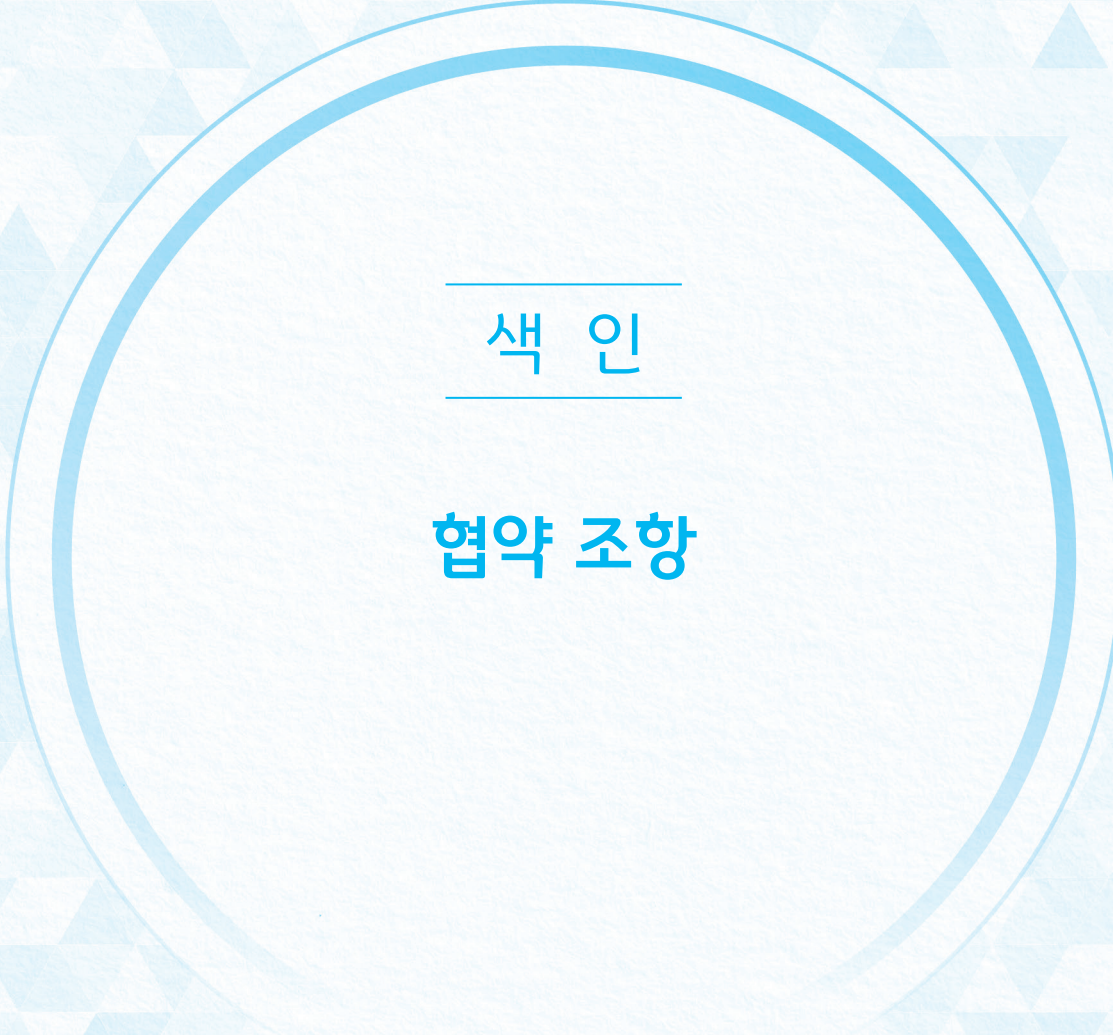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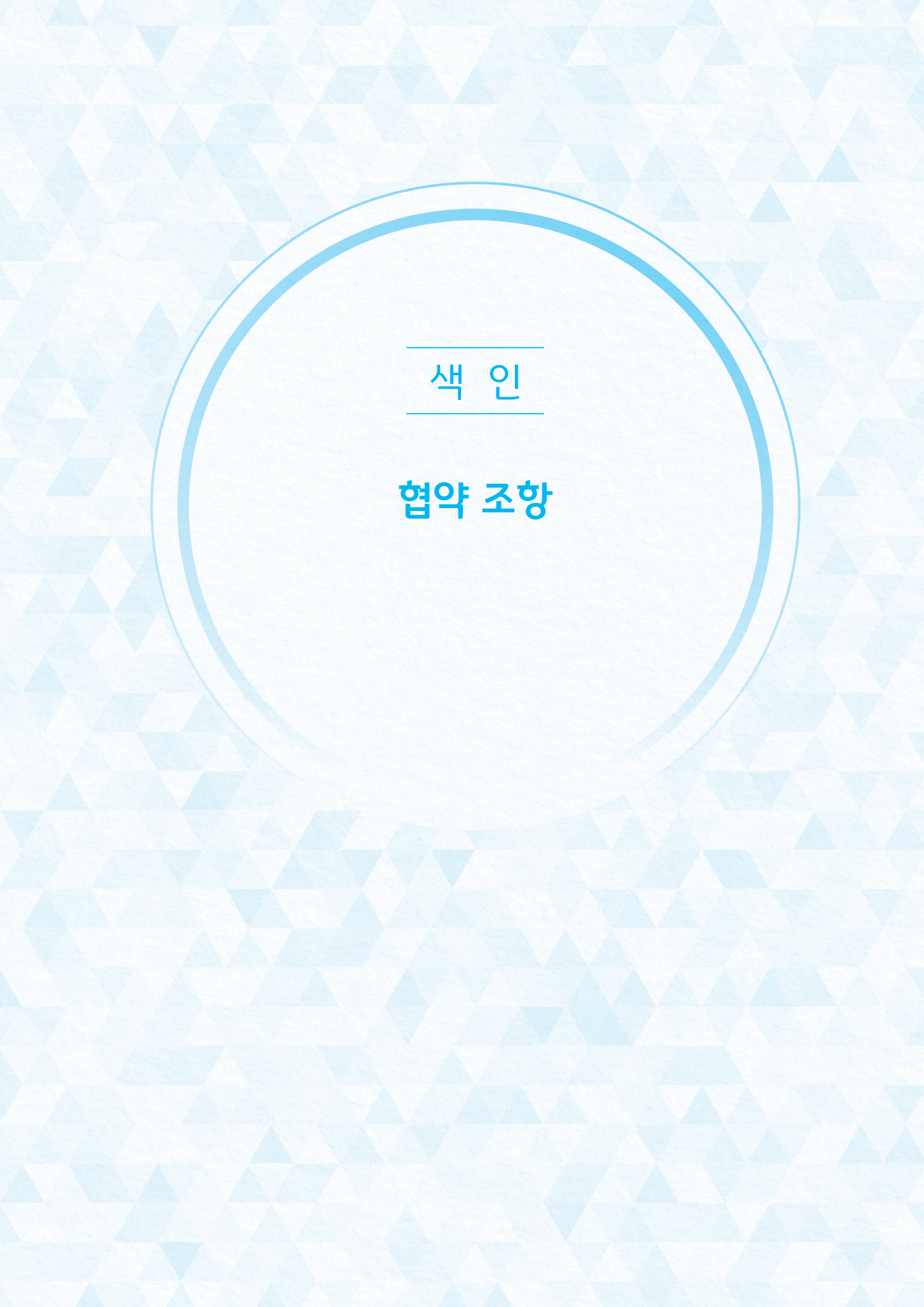
3.7 수령국에서의 특별한 과제

수령국으로서 스웨덴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는 인가단체가 협력하는 국가의 국제입양 가능 아동 수에 비하여 신청이 많다는 것이다. 인가단체는 장기간 대기할 수도 있음을 최대한 신청자들에게 알림으로 신청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8 출신국에서의 특별한 과제

출신국에서의 특별한 과제는 아동에 관한 배경 정보의 질과 비용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인가단체는 MIA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MIA는 이러한 보고서와 특정국가 방문 그리고 국제입양 중재 과정에 참여하는 기타 중앙당국 및 기관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정보는 허가 가능성 및 해당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색 인

협약 조항

주의 : 다음 표의 숫자는 지침의 '항'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 'f'가 표시된 경우는 각주를 의미하며 앞에 'A'가 있는 경우는 부속서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1993년 5월 29일 아동 보호 및 국제 입양 관련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제1조	53, 550, f31, A1-2	제16조	183, 192, 204, 550, 620, 621,
제1조 b)	547, f345, A2-12		625, 630, 635, 639, 640, 643,
제4조	53, 488, A2-6		A2-6
제4조 b)	415, A1-2	제17조	183, 192, 204, 213, 550, 620,
제4조 c) (3)	66, 71		621, 625, 630, 631, 635, 643,
제4조 d) (4)	66, 71, A1-5		A1-6
제5조	53, A1-6	제17조 c)	211, 213, 312, 529, 543,
제5조 a)	f323		A3-5, A3-10
제7조	112, 125, 183, 550, 613,	제18조	183, 192, 204, 550, 620, 621,
	624, f195, A1-2, A2-6		625, 630, 631, 635, 643
제7조 (1)	184, 548	제19조	183, 192, 204, 550, 620, 621,
제7조 (2)	185, 549		625, 630, 635, 643, f340
제7조 (2) b)	185, 186	제20조	183, 192, 204, 550, 620, 621,
제8조	35, 66, 76, 112, 183, 187,		625, 630, 635, 643
	316, 624, f246, A1-5	제21조	183, 192, 204, 550, 620, 621,
제9조	82, 112, 183, 191, 196, 203,		625, 630, 635, 643
	624, 630, f78, A1-2, A2-6	제22조	37, 619, 620, 628, A1-4
제9조 a)	203	제22조 (1)	182, 202, 621, 623, 624, 639,
제9조 b)	203, A1-6		640, 649
제9조 c)	203, A1-6	제22조 (2)	111, 192, 226, 615, 616, 624,
제9조 d)	203		625, 627, 630, 638, 639, 642,
제9조 e)	203		643, 645, 647, 651, 653
제10조	36, 47, 48, 53, 54, 59, 81, 82,	제22조 (2) a)	628, 629, 635, 638, f380
	105, 141, 176, 195, 315, 331,	제22조 (2) b)	628, 629, 635, 636, 638, f381
	647, f24, A1-4	제22조 (3)	111, 645
제11조	35, 36, 47, 48, 66, 81, 105,	제22조 (4)	624, 648, 649, 650, 651, 652,
	141, 237, 263, 293, 404, A1-4		653, 654, f392
제11조 a)	62, 63, 263, 316, 629, 632, f25	제22조 (5)	624, 639, 640, 641, f385
제11조 b)	53, 55, 56, 225, 229, 629, 636,	제23조	211, 536, f273, A2-2, A2-3,
	f26, f143, f147		A2-4, A2-6, A2-10, A3-9
제11조 c)	76, 92, 263, 284, 629, f27,	제29조	f300
	f171, A1-3	제30조	f78, A1-6, A1-7
제12조	36, 47, 48, 87, 146, 147, 148,	제31조	A1-5, A1-7
	153, 154, 156, 157, 158, 176,	제32조	66, 70, 75, 76, 77, 263, 316,
	180, 281, 655, A2-4, A2-6,		359, 374, 633, f115, A1-5
	A2-7, A2-9, A2-11, A3-8	제32조 (1)	69, 71, 78, 633
제13조	48, 111, 193, 646, 647, A1-3	제32조 (2)	64, 65, 76, 78, 374, 633
제14조	183, 192, 204, 550, 621, 630,	제32조 (3)	64, 72, 76, 634, f28
	641, f378	제33조	183, 186, 646, f348
제15조	183, 192, 204, 550, 620, 621,	제35조	A1-6
	625, 630, 635, 639, 640, 643,	제36조	116
	A1-6, A2-7, A3-10	제48조 d)	642, f376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manent Bureau
Churchillplein 6b
2517JW The Hague
The Netherlands

Telephone: +31(70) 363 3303
Facsimile: +31(70) 360 4867
Email: secretariat@hcch.net
www.hcch.net

